

# 방한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연구

신용석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방한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연구

VISA Program Improvement for the Expansion of  
Korea's Inbound Market

신용석





## 연구책임

---

신용석 관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방한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연구



## 연구개요



# 1. 서론

##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① 최근 방한관광 시장의 외부적 환경변화 대응
  - 사드 갈등으로 방한 중국 시장 위축
    - 2017년 사드 갈등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통제, 관광객 급감
  - 동남아 방한시장 전략적 확대
    - 신남방정책과 방한시장 다변화를 위한 동남아시아 전략적 확대
- ② 주요 경쟁국가들의 관광객 유치에 위한 비자개선 경쟁
  - 중국과의 갈등으로 주변국의 脫 중국시장 가속
    - 일본, 대만 모두 중국과의 외교 갈등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 감축을 위해 노력
  - 각 국의 비자개선 현황에 대한 점검 필요
    - 일본, 대만, 태국의 비자개선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시사점 도출
- ③ 방한 중국시장과 동남아 시장에 대한 지속적 비자개선 추진
  - 중국 시장의 완전한 회복 필요
    - 2017~2019 완만한 성장세로 전 고점 회복 못하고 있음
  - 동남아 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개선 추진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VIP3국) 과 잠재시장으로서의 인도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개선 추진에 대한 방안 필요

### 2) 연구목적

- 방한관광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비자제도 개선과 연결된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비자제도 개선현황과 이에 대한 제약요인 검토
- 주요 경쟁국가(대만, 일본, 태국)의 사례조사와 이해관계자 조사
- 상기 관련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국가별 비자개선방안 제시

##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 ① 공간적 범위

- 연구대상 국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 비자제도 사례조사 국가: 일본, 대만, 태국

#### ② 시간적 범위

- 2019년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면 이전 자료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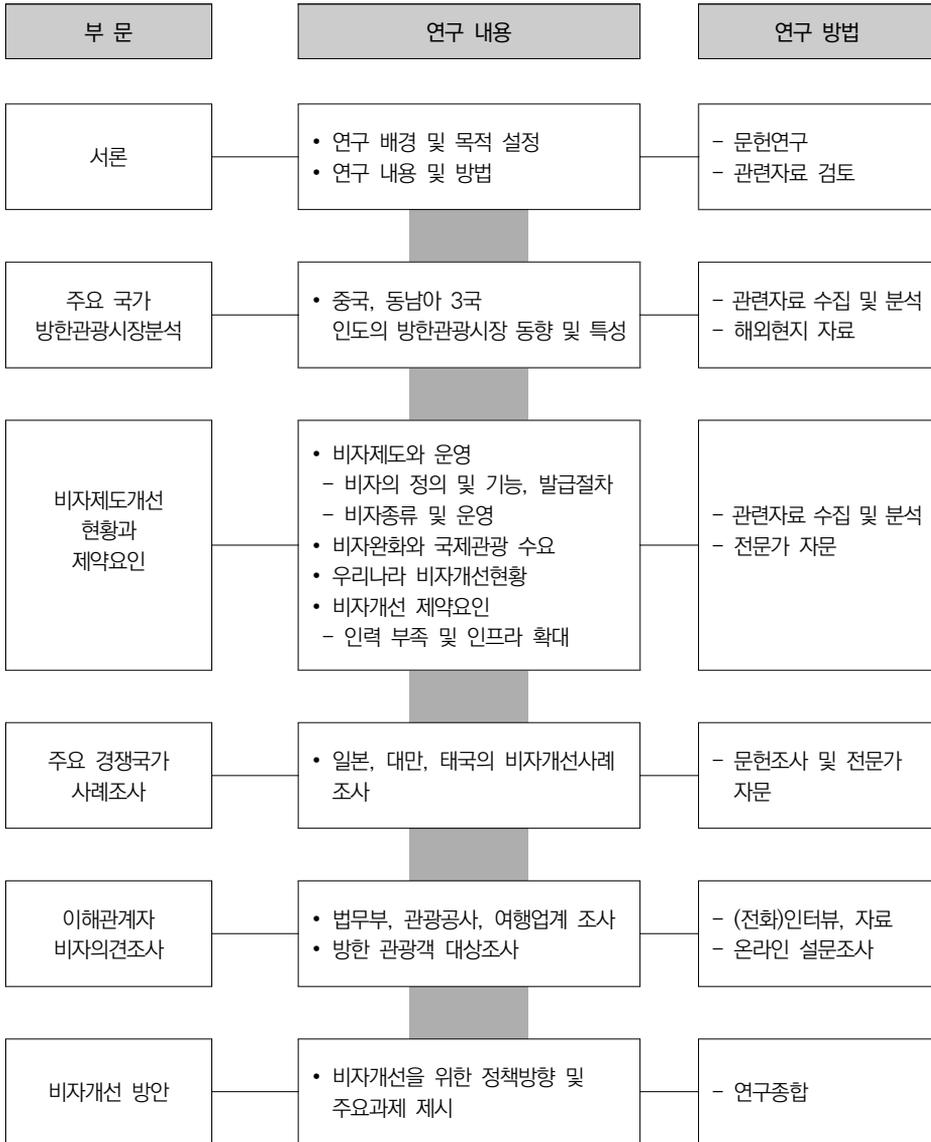
#### ③ 내용적 범위

〈표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구분	연구내용
연구대상 국가 5개국 (중국, 동남아 3국, 인도) 방한관광시장분석	- 해당 국가 관광시장 현황 - 방한관광시장 현황 특성 - 시사점
비자제도 개선현황과 제약요인	- 비자제도 현황 - 비자완화와 국제관광 수요 - 우리나라 비자개선 현황과 제약요인 - 시사점
주요 경쟁국가 비자개선 사례조사	- 일본, 대만, 태국의 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개선 사례
이해관계자 비자의견 조사	- 법무부, 관광공사, 여행업계 의견조사 - 연구대상 5개국 한국방문 여행객 대상 설문조사
방한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	- 연구결과 종합분석 - 비자개선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 2) 연구방법과 연구흐름도

[그림 1] 연구 방법 및 흐름도



## 2. 주요국가 방한관광시장 동향

### 가. 중국

- 한한령의 영향으로 방한시장 침체
- 2~30대 여성 개별여행객 주도시장 강화

### 나. 베트남

- 경제성장 덕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 아웃바운드 초기단계로 단체여행객과 개별여행객이 혼재

### 다. 인도네시아

- 메르스 이후 다시 완만한 성장세
- 개별여행객 우세이나 단체여행 비중도 2-30% 차지

### 라. 필리핀

- 필리핀 크루즈 승무원의 방한증가 효과
- 영어 사용, 가족 중심의 높은 개별여행 형태

### 마. 인도

- 양적 규모는 작지만 1인당 여행지출경비는 방한시장 상위권
- 비즈니스 목적의 개별여행 비중 높음

### 바. 시사점

- 1인당 경제소득의 증가가 방한관광시장과 여행 자유도를 증가시킴
- 중국 發 정치변수의 동북아 관광시장 영향 증가
- 방한시장의 특성에 맞는 비자제도 개선필요

### 3. 비자제도 개선현황과 제약요인

#### 가. 비자의 기능과 변화추세

- 국가 간 이동 시 비자는 필수서류이나 필요에 따라 면제조치
- 행정비용 절감과 안전 등을 위하여 점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
- 그러나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이 주된 신청 방법이며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온라인 발급을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발급 위주이며 발급편의 증가를 위해 비자신청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음
- 최근 동남아 국가들의 방한비자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비자대기 시간이 증가하여 비자발급에 불편이 커져 이에 대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

#### 나. 비자완화는 관광시장 확대의 정책관여 수단

- 비자완화는 경제소득 증가, 질병과 같은 외부요인보다는 영향력이 작지만 방문국(Destination country) 에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정책수단의 도구적 가치 때문에 우리나라도 관광비자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그 대상을 중국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
- 관광비자 완화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불법체류자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은 아니며 송출국가의 경제상황이 해당국가의 불법체류자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침

## 4. 주요 경쟁국가 비자개선 사례

〈표 2〉 한국과 주요 경쟁국가 비자개선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li> <li>-중국 시장 의존도 약화</li> <li>•중국)</li> <li>-사드 충격 완화 위해 중국 개별관광객 시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li> <li>-중국 시장 의존도 약화</li> <li>•중국)</li> <li>-센카쿠 분쟁 이후 중국 개별관광객 시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li> <li>-양안관계 악화로 신남향정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국 경기침체로 중국시장 접프를 통한 관광산업 부흥 노림</li> </ul>
주요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li> <li>-개별 복수비자 완화</li> <li>-단체관광 전자비자 도입</li> <li>-비자신청센터설치 (베트남, 인도네시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li> <li>-개별 복수비자 완화</li> <li>-단체관광비자 간소화</li> <li>-비자신청센터 (태국, 인도네시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트남, 인도네시아) 온라인 조건부 비자 면제</li> <li>-태국, 필리핀) 비자 면제 시범실시</li> <li>-단체관광 온라인 비자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없음 (아세안 국가 비자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li> <li>-개별 복수비자 완화</li> <li>-비자신청센터 지역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li> <li>-개별복수비자 완화</li> <li>-비자신청 수수료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자면제 추진했으나 외교부 반대와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li> </ul>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동남아 3국 관광객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동남아 관광객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 관광객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없음</li> </ul>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 불법체류자 증가(태국, 베트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 불법체류자 증가(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 불법체류자 증가(베트남, 태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없음</li> </ul>

- 중국과의 외교 갈등이 한국, 일본, 대만의 중국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동남아 관광시장 확대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비자완화 조치는 송출국가와 방문국과의 경제적 격차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태국의 중국비자완화 추진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시기상조(한-중 간 경제소득 격차가 여전히 큼)
- 비자개선을 위해서는 관광부처 뿐 아니라 비자 주무부처와의 협력 및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

## 5. 이해관계자 비자의견 조사

### 가. 법무부

- 법무부는 비자담당 주무부처로서 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권한과 역할이 큼
- 비자제도개선을 통해 방한 여행객들의 편의를 제고해야 하지만, 동시에 불법 체류자 관리의 임무도 가지고 있어 비자완화에 신중한 입장임
- 법무부는 현재 우리나라 비자정책의 개방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 완화에는 보수적임
- 동남아 비자담당 인력부족, 전자비자 시스템 확대 등과 함께 코로나 이후 비자 정책의 전반적 변화를 예상하고 있음

### 나. 관광공사 및 여행업계

- 중국에서는 개별비자 관련 준비서류의 간소화, 특히 원본 이외 사본의 인정에 대한 요청이 많으며 중국 2, 3선 도시에 대한 복수비자 확대 건의
-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비자담당 인력부족으로 비자발급의 늦어지는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민원사항

### 다. 방한관광객

- 전반적으로 방한비자 발급과 관련되어 특별한 불만은 없었지만 국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비율을 보임
  -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일본의 전자여권에 대한 조건적 비자면제 조치 때문에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비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단 본 연구에서 행한 비자의견조사의 설문 응답자 그룹이 일반적인 방한 관광객보다 소득, 학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향후 방한관광객의 비자만족도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6. 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개선방안

-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비자제도 개선방안 도출

〈표 3〉 방한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적용	해당국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비자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환경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방한중국시장 성장, 2,3선 도시성장</li> <li>- 脫 중국 동남아 유치경쟁 치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3선 도시들에 대한 개별복수비자 완화</li> </ul> </li> <li>• 동남아3국(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담당인력 강화로 발급기간 단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환경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기반 비자발급시스템 강화 추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아3국 및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단체관광 비자활용도 제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발생으로 인한 시장회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종식 후 비자수수료 면제 Promotion 추진</li> </ul>
국가별 상황고려 비자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별 주요 현안 및 우선순위에 따른 비자제도 개선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신청자료 간소화 (사본인정과 핀테크 기술활용)</li> <li>- 비자면제는 중장기과제로 추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아3국 및 인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담당인력, 비자신청센터, 복수비자 대상 확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여권등록자에 한한 비자면제 시범실시 고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관광 비자발급대상 확대 시범실시</li> </ul> </li> </ul>
비자개선 협력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 주무부처와의 협력 시스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문체부 비자개선을 위한 상시협의회 마련</li> <li>- 비자관련 기초통계 공유 및 현안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개선 모니터링 시스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외래관광객실태조사&gt; 비자만족도 조사문항 추가</li> </ul>

---

# 목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9
3. 연구 흐름도	10
<b>제2장 주요국가 방한관광시장 동향</b> .....	<b>11</b>
제1절 중국	13
1. 중국 아웃바운드 여행시장 최근 특징	13
2. 중국 방한관광시장 최근 특징	16
제2절 동남아시아 3개국	19
1. 베트남	19
2. 인도네시아	24
3. 필리핀	28
제3절 인도	32
1. 인도 아웃바운드 여행시장 최근 특징	32
2. 인도 방한 관광시장 최근 특징	34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37
1. 요약	37
2. 시사점	38

<b>제3장 비자제도 개선현황과 제약요인 .....</b>	<b>43</b>
제1절 비자제도 개요	45
1. 비자의 정의 및 기능	45
2. 비자의 내용	47
3. 무비자 제도	48
제2절 비자종류와 운영	50
1. 비자의 종류	50
2. 관광목적 방문 관련 비자 종류	51
3. 비자의 신청 및 발급	54
제3절 국제관광 수요와 비자완화	58
1. 국제관광 수요요인과 비자	58
2. 비자개선이 방한관광객 증가에 미치는 영향	59
제4절 우리나라 관광비자 개선현황	61
1. 관광비자개선에 대한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61
2. 관광비자개선의 추진배경	61
3. 관광비자개선 주요경과	62
제5절 관광비자 개선 제약요인	68
1. 관광비자 완화와 불법체류자	68
2. 비자발급 지원 시스템	72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75
1. 요약	75
2. 시사점	77
<b>제4장 주요 경쟁국가 비자개선 사례 .....</b>	<b>79</b>
제1절 일본	81
1. 동남아시아 관광객 대상 비자개선	81
2. 중국관광객 대상 비자개선	83
3. 평가	84
제2절 대만	87
1. 비자개선 추진배경: (관광)신남향정책	87
2. 비자개선 내용	88
3. 평가	89

제3절 태국	91
1. 비자개선 추진배경	91
2. 비자개선 추진 경과	92
3. 태국의 중국비자면제 추진계획 평가	93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94
1. 요약	94
2. 시사점	95
<b>제5장 이해관계자 비자의견 조사 .....</b>	<b>97</b>
제1절 법무부 의견조사	99
1. 법무부의 권한과 역할	99
2. 조사 결과	100
3. 외교부와 문체부의 역할	102
제2절 관광공사 및 여행업계 의견조사	104
1. 중국	104
2. 동남아 3개국 및 인도	107
제3절 방한 관광객 의견조사	109
1. 조사 개요	109
2. 조사 내용	110
3. 조사 응답자 현황	111
4. 조사 결과 분석	112
5. 조사의 한계	127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28
1. 요약	128
2. 시사점	131
<b>제6장 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개선방안 .....</b>	<b>133</b>
제1절 비자개선 기본방향	135
1.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결과 종합	135
2. 기본방향 설정	139

제2절 비자제도 개선방안	141
1. 중국	141
2. 동남아 3국 및 인도	144
3. 기타 개선사안	147
<b>제7장 결론 및 제언</b> .....	<b>151</b>
<b>참고문헌 /</b>	<b>155</b>
<b>ABSTRACT /</b>	<b>157</b>
<b>부록 /</b>	<b>159</b>
【부록1】 설문지(Web-based survey) /	161
【부록2】 우리나라 사증(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 리스트 /	167
【부록3】 주요국가 방한관광비자 신청현황 및 필요서류 /	173

---

# 표 목차

〈표 1-1〉 한국방문 상위 20개국 현황(2019년 기준)	7
〈표 1-2〉 연구의 내용적 범위	8
〈표 2-1〉 중국 방한여행 형태(2017~2019)	18
〈표 2-2〉 베트남 2014년 이후 방한객 추이	23
〈표 2-3〉 베트남 방한여행 형태(2017~2019)	23
〈표 2-4〉 인도네시아 아웃바운드 여행객 추이(전체)	24
〈표 2-5〉 한·일 방문 인도네시아 아웃바운드 여행객 추이	26
〈표 2-6〉 인도네시아 방한여행 형태(2017~2019)	27
〈표 2-7〉 필리핀 아웃바운드 여행객 추이(전체)	29
〈표 2-8〉 한·일 방문 필리핀 아웃바운드 여행객 추이	30
〈표 2-9〉 필리핀 방한여행 형태(2017~2019)	31
〈표 2-10〉 인도 아웃바운드 여행객 추이(전체)	33
〈표 2-11〉 인도 해외여행객의 지역별 비중	34
〈표 2-12〉 인도 방한여행객 1인 지출경비(2017~2019)	35
〈표 2-13〉 방한 인도여행객의 주요 방한 목적(2017~2019)	36
〈표 2-14〉 인도 방한여행 형태(2017~2019)	36
〈표 2-15〉 한국과 주요 국가 1인당 국민소득 및 여행 자유도 비교	40
〈표 3-1〉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비자(사증)관련 조항	46
〈표 3-2〉 우리나라 무비자 제도의 유형	49
〈표 3-3〉 입국목적(체류자격)에 따른 우리나라 비자 종류	50
〈표 3-4〉 관광 목적 방문 관련 비자	51
〈표 3-5〉 우리나라 비자 면제협정 체결국가 현황	52
〈표 3-6〉 우리나라 일반 무비자 입국허가 대상 국가	52
〈표 3-7〉 우리나라 비자신청 및 발급 경로	54
〈표 3-8〉 우리나라 전자비자 발급현황	55
〈표 3-9〉 재외공관 비자신청의 발달 단계별 특징	57
〈표 3-10〉 방한관광 수요의 영향요인 및 사례	58

〈표 3-11〉 제주 무비자 외국인 현황(2010~2018)	60
〈표 3-12〉 방한 중국 관광객 대상 비자개선 경과	63
〈표 3-13〉 방한 동남아 관광객 대상 비자개선 경과	67
〈표 3-14〉 국내 불법체류자 주요 국가별 현황(2016~2019.6)	70
〈표 3-15〉 국내 불법 체류자 주요 비자 종류별 현황(2014~2019)	71
〈표 3-16〉 단기방문 불법체류 비율과 비자면제 및 타 비자자격 불법체류 비율 비교(2019)	72
〈표 3-17〉 동남아 3개국 비자전담 인력현황 한-일 비교	73
〈표 4-1〉 일본의 동남아 국가 대상 비자개선조치	82
〈표 4-2〉 일본의 중국 대상 비자개선조치	83
〈표 4-3〉 주요국가 방일 관광객 추이(2011~2019)	84
〈표 4-4〉 대만의 동남아 주요국가 비자개선조치	88
〈표 4-5〉 주요국가 대만 관광객 추이(2011~2019)	89
〈표 4-6〉 태국 주요 방문국가 추이(2015~2018)	91
〈표 4-7〉 한국, 일본, 대만, 태국의 비자개선 주요현황	94
〈표 5-1〉 중국 방한관광비자 관련 의견(관광공사 중국 지사 및 여행업계)	105
〈표 5-2〉 동남아 3국 및 인도 방한관광비자 관련 의견(관광공사 지사 및 여행업계)	107
〈표 5-3〉 설문 조사 내용	110
〈표 5-4〉 응답자 현황	111
〈표 6-1〉 기본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결과 및 시사점 정리	135
〈표 6-2〉 방한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149

---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10
[그림 2-1] 방한 중국관광 시장 추이	16
[그림 2-2] 중국 빠링허우(80년대생)의 성별 방한관광객 시계열추이	17
[그림 2-3] 중국 지우링허우(90년대생)의 성별 방한관광객 시계열추이	18
[그림 2-4]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GNI per capita) 추이(1990~2019)	20
[그림 2-5] 베트남 아웃바운드 여행횟수 증가 추이	20
[그림 2-6] 한국, 일본, 대만 방문 베트남 아웃바운드 증가추세	21
[그림 2-7] 방한 베트남 관광객 수 추이(2005~2019)	22
[그림 2-8] 인도네시아 1인당 국민소득(GNI per capita) 추이(1990~2019)	25
[그림 2-9] 방한 인도네시아 입국자 추이(2005~2019)	27
[그림 2-10] 필리핀 1인당 국민소득(GNI per capita) 추이(1990~2019)	28
[그림 2-11] 방한 필리핀 여행객 수 추이(2005~2019)	31
[그림 2-12] 인도 1인당 국민소득(GNI per capita) 추이(1990~2019)	33
[그림 2-13] 방한 인도 여행객 수 추이(2005~2019)	35
[그림 2-14] 주요 국가 1인당 국민소득 추이 비교(2005~2019)	39
[그림 2-15] 주요 국가 방한여행객 수 추이 비교(2005~2019)	39
[그림 3-1] 대한민국 비자 견본(스티커 방식: 2020년 이전 사용)	47
[그림 3-2] 대한민국 비자 발급확인서 견본(2020년 이후 사용)	48
[그림 3-3] 제4차 국가관광 전략회의 비자개선 관련의제	62
[그림 3-4] 우리나라 외국인 불법체류자 추이(1998~2019)	69
[그림 4-1] 일본 불법체류자 추이(2011~2019)	85
[그림 4-2] 태국, 중국, 한국의 1인당 소득 추이 비교(2005~2019)	93
[그림 5-1] 발급받은 비자 종류(복수응답)_중국	113
[그림 5-2] 발급받은 비자 종류(복수응답)_베트남	113
[그림 5-3] 발급받은 비자 종류(복수응답)_인도네시아	114
[그림 5-4] 발급받은 비자 종류(복수응답)_필리핀	114
[그림 5-5] 발급받은 비자 종류(복수응답)_인도	115

[그림 5-6] 가장 최근에 이용한 비자 발급 경로	116
[그림 5-7] 가장 최근 비자를 발급 받는 데 걸린 기간	116
[그림 5-8] 일본 대비 비자 발급 소요기간 평가	117
[그림 5-9] 대만 대비 비자 발급 소요기간 평가	118
[그림 5-10] 일본 대비 비자 발급 비용 평가	119
[그림 5-11] 대만 대비 비자 발급 비용 평가	120
[그림 5-12] 일본 대비 비자 발급과정 전반 평가	121
[그림 5-13] 대만 대비 비자 발급과정 전반 평가	122
[그림 5-14] 방한 비자 발급 과정 중 불편했던 점	123
[그림 5-15] 비자 신청 시 준비하기 어려웠던 서류	124
[그림 5-16] 여행 준비 중 비자 발급 불편 정도	125
[그림 5-17] 무비자 정책 시행 시 한국 재방문 의향	126
[그림 6-1] 알리페이 즈마 신용등급별 분류	142

방한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연구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 1. 연구 배경

### 가. 최근 방한관광 시장의 외부적 환경변화 대응

방한관광시장은 전통적인 방한수위 시장이었던 일본과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중국시장의 성장으로 2016년 역대 최고인 방한관광객 약 1,720만 명을 달성하였으나 이듬 해 중국과의 사드배치로 인한 갈등으로 중국관광객이 급감하여 1,33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중국 개별 방문객 증가와 동남아 방한시장 증가로 2019년 1,750만 명을 회복하였지만, 다시 일본과의 수출규제로 인한 갈등 등으로 전통적인 중국, 일본 시장이 정치외교에 따른 영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우리가 전략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동남아 방한 시장은 일본, 대만과 같은 경쟁 국가들과의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최근 방한관광 시장을 둘러싼 외부환경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러한 일환으로 비자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 나. 중국 방한 시장 회복과 확대를 위한 지속적 비자개선 추진

중국 방한관광시장은 중국의 아웃바운드 여행시장 성장으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일본을 제치고 방한 시장 1위로 올라섰지만, 사드 배치로 인한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2017년 400만 명대로 급감(2016년 800만 명 대비 48% 감소)하였다. 이후 2017~2019에 걸쳐 완만한 회복을 거쳐 2019년에는 500만 명 대를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최고 성장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되어 완전한 회복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드 배치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적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중국 관광시장은 그 성장 속도나 규모 면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 방한관광시장 회복과 중국 내 추가적인 전략지역 확대를 위한 비자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다. 전략적 방한 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개선 필요**

정부는 중국, 일본으로의 쏠림을 완화시키고 신남방국가와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상호 번영을 위하여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문체부에서도 동남아 관광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동남아 지역은 아직 중국, 일본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작지만 차후 성장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차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남아 관광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비자개선에 대한 관심을 둘 필요성이 있다.

#### **라. 우리나라 주요 경쟁 국가들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개선 경쟁**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그리고 중국 시장의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동남아, 인구 규모로 잠재성이 주목받고 있는 인도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중국과 갈등 이후, 新 남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만,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은 태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기 3개국은 비자제도 개선에 적극적이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비자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국가들의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 비자개선 방향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전술한 연구배경에 따라 향후 방한관광시장 확대를 위하여 우리나라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주된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둔다.

- 첫째, 방한관광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비자제도 개선과 연결된 시사점을 도출한다.
- 둘째, 우리나라 비자제도 개선현황과 이에 대한 제약요인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셋째, 주요 경쟁국가(대만, 일본, 태국)의 사례조사와 이해관계자 조사를 통하여 비자와 관련된 개선방안 시사점을 도출한다.
- 넷째, 상기 관련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국가별 비자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 1. 연구 범위

#### 가.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크게 연구대상 국가지역과 비자개선 사례조사 국가 지역으로 나눈다.

첫째, 연구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방한관광 시장 확대를 위하여 집중적인 비자개선이 필요한 국가들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상위 20개 국가들 중에서 비자가 필요한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 우즈베키스탄 총 7개국이다. (<표 1-1> 참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배경에서 서술한 것처럼 중국 시장과 동남아 관광시장의 비자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총 7개 국가 중에서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를 연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둘째, 이러한 비자제도 개선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기 5개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경쟁국들로서 일본, 대만, 태국을 사례조사 국가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일본은 전통적인 우리나라 주요 경쟁 국가이며 비자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외교 갈등 이후 시장다변화를 위하여 신 남향국가 정책으로 비자개선을 통해 동남아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의 경우는 관광산업 비중이 높아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 인도를 대상으로 가장 적극적인 비자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서 선정하였다.

〈표 1-1〉 한국방문 상위 20개국 현황(2019년 기준)

순위	국가명	방문객(명)	비자필요 여부	연구대상 국가
1	중 국	6,023,021	O	V
2	일 본	3,271,706	X	
3	대 만	1,260,493	X	
4	미 국	1,044,038	X	
5	홍 콩	694,934	X	
6	태 국	571,610	X	
7	베트남	553,731	O	V
8	필리핀	503,867	O	V
9	말레이시아	408,590	X	
10	러시아(연방)	343,057	X	
11	인도네시아	278,575	O	V
12	싱가포르	246,142	X	
13	캐나다	205,408	X	
14	오스트레일리아	173,218	X	
15	영 국	143,676	X	
16	인 도	143,367	O	V
17	독 일	120,730	X	
18	몽 골	113,599	O	
19	프랑스	110,794	X	
20	우즈베키스탄	88,276	O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tour.go.kr)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 나.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2019년을 기준점으로 정하여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구독에 한계가 있는 경우 그 이전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 다.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국가인 중국, 동남아 3국, 인도의 관광시장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해당 연구대상 국가들의 방한관광 비자 개선에

목적이 있으므로 관광시장 전반에 대해 다루기보다 비자와 관련된 특성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노력하였다.

둘째, 비자와 국제관광수요의 관계에 대한 검토와 우리나라 비자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 비자제도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 5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존 우리나라의 비자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 리뷰하고 개선 제약요인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무부, 관광공사,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다.

넷째, 비자의 최종 수요자인 관광객들의 인식 및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5개 국가에서 방한 관광경험이 있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방한관광 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다섯째, 우리나라 주요 경쟁국가인 일본, 대만, 태국의 비자제도 개선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여섯째, 이상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방한여행시장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표 1-2〉 연구의 내용적 범위

구분	연구내용
연구대상 국가 5개국 (중국, 동남아 3국, 인도) 방한관광시장분석	- 해당 국가 관광시장 현황 - 방한관광시장 현황 특성 - 시사점
비자제도 개선현황과 제약요인	- 비자제도 현황 - 비자완화와 국제관광 수요 - 우리나라 비자개선 현황과 제약요인 - 시사점
주요 경쟁국가 비자개선 사례조사	- 일본, 대만, 태국의 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개선 사례
이해관계자 비자의견 조사	- 법무부, 관광공사, 여행업계 의견조사 - 연구대상 5개국 한국방문 여행객 대상 설문조사
방한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	- 연구결과 종합분석 - 비자개선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관련문헌 및 2차 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의견 수렴, 방한관광객 비자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 5개 국가들의 관광시장 및 비자 관련 문헌과 2차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연구대상 국가들의 관광시장과 비자 제도에 관한 내용 파악을 실시하였다. 관광시장과 관련된 문헌들은 해당 국가 시장들에 대한 기존 연구 보고서 내용들과 함께 국제관광 통계, 경제소득 추이 등을 검토하여 비자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자와 직접 관련된 2차 자료는 주로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문헌들은 재외공관 해당 국가 사이트들의 문건과 UNWTO 나 WTTC 같은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들을 주로 참고하였다.

둘째,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현행 비자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법무부 비자 관련 전·현직 담당자들의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한국관광공사 지사, 업계들의 비자 관련 의견도 역시 수렴하여 현행 관광비자와 관련된 상황을 다각도로 접근하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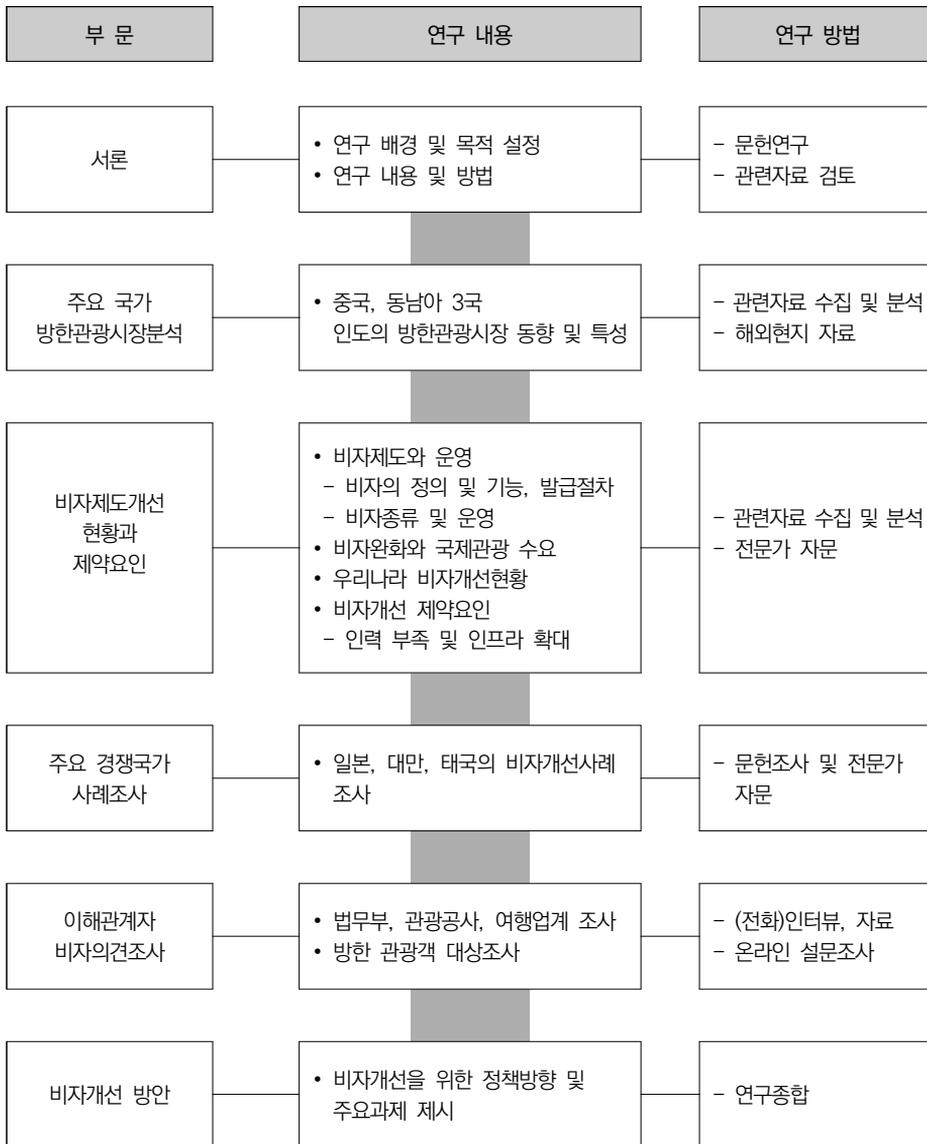
셋째, 일본, 대만, 태국 등의 경쟁국가의 비자제도 개선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비자제도 개선정책과 비교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넷째, 관광비자의 최종수요자인 관광객들의 비자에 관한 의견을 직접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대상국가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를 대상으로 비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우리나라를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경험이 있는 5개 국가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비자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과 경쟁 국가인 대만, 일본과 비교하여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3. 연구 흐름도

이상의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정리하여 연구 흐름도로 표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방한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연구

제2장

## 주요국가 방한관광시장 동향



# 제1절 중국

## 1. 중국 아웃바운드 여행시장 최근 특징

### 가. 중국의 구매력(Buying Power)을 이용한 관광의 정치적 도구화

중국은 1990년대에는 해외로의 여행을 상당히 통제하였지만 중국의 저가 상품에 따른 수출로 인하여 무역 분쟁 등의 소지가 생기자 어느 정도 중국 관광객들의 해외 여행을 용인하는 태도로 2000년 들어 바뀌게 되었다. 최경은·박진호(2016)은 중국의 아웃바운드 여행정책이 1990년대에는 통제적 성격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는 관리적 성격으로 바뀌고, 2011년 이후부터는 시장의 질서 있는 발전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과 중국인들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인한바가 크다.

중국 정부의 중국 아웃바운드 정책이 이렇게 완화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중국은 해외여행 규모에서 세계 1위 해외여행 송출국으로 연간 약 1.68억 명(2019년 중국 여유연구원 통계 기준)의 중국인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중국관광객의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여행경비 지출에 있어서도 2012년부터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해외관광 소비국으로 등극하였으며 중국인들이 큰손을 차지하고 있어 연간 지출액이 2,500억 달러를 상회한다(2017년 기준, 총 지출액 2,577억 USD).<sup>2)</sup>

이러한 중국 아웃바운드 정책의 또 다른 특징으로 최근 부각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 이러한 해외관광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관광의 정치적 도구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은 아웃바운드 여행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타국과 정치 외교적 갈등이 있을 때 관광을 상대 국가에 대한 외교적 압박 도구로 이용하게 된 것

1) 중국여유연구원(2019), 2019 중국 출경 여유년도 보고

2) UNWTO(2019),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이다. 일본 센카쿠 열도 분쟁, 대만 양안관계 갈등, 한국 사드배치 갈등처럼 해당 국가와 정치외교 갈등이 있을 때 중국은 자국의 단체관광객을 통제하여 상대 국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나. 중국 OTA 부상과 온라인 해외여행 시장의 성장

인터넷과 스마트폰 확산 등으로 전 세계에서 온라인 경제가 급속하게 커지고 있으며 이는 관광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여행시장은 2023년까지 연 평균 13%의 속도로 성장하여 2023년에는 1조 달러를 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3)</sup> 이러한 추세는 중국도 예외는 아닌데, 특히 중국은 광활한 국가 영토와 지역 격차, 그리고 모바일의 빠른 확산으로 상위 OTA 들의 성장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으며 규모를 키우기 위해 업체간 M&A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여행플랫폼 업체 씨트립은 2015년에 2위(취날), 4위(이통) 온라인 업체를 인수해서 중국 국내시장에서의 상위 업체로서의 위치를 굳혔다.<sup>4)</sup> 여기에 그치지 않고 씨트립은 이어서 2016년에는 국제여행검색엔진 스카이스캐너(skyscanner)를 인수하고 2019년에는 회사명을 씨트립에서 아예 트립닷컴(trip.com)으로 개칭하여 China의 “C”를 제외시켜 더 이상 중국에만 그치지 않는 글로벌 OTA 도약을 추진하는 중이다. 이제 씨트립과 취날, 이통의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으며 모바일 검색과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중국인들의 쇼핑행태와 맞물려 중국 해외여행 시장이 온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다. 중국 내륙도시 성장과 따른 중국 관광시장 분화

기존에 중국의 아웃바운드 여행시장은 1선 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톈진, 선전)가 주도하는 시장였지만, 최근에 중국의 내륙 2선급 도시들이 성장하면서 관광시장의 분화(Market Segmentation)가 일어나고 있다.<sup>5)</sup>

3) 최경은(2019), 외국계 OTA와 관광숙박업체 거래구조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 씨트립은 1999년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되었고 이후 중국 온라인여행 1위업체로 성장 후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2003년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됨.

5) 중국의 경제적 규모와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도시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선 도시는 인구 기준 1,000만명 이상, 2선 도시는 500~1,000만명, 3선 도시는 300~500만명 수준.

기존의 중국 개방의 집중적인 수혜를 받던 동부 해안의 상하이, 광저우와 수도 베이징을 넘어서 최근 내륙 2선도시도 시진핑의 서부 개발 정책에 따라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도시들에서도 아웃바운드 여행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의 중국 시장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2선 도시의 선두주자인 우한, 난징, 청두, 다롄, 선양, 항저우 등이 대표적인 도시들이고 이들 지역은 해외여행 초기시장의 특성처럼 가성비 여행을 중시하고 단체 패키지, 전세기 이용을 통한 인접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sup>6)</sup>

## 라. 중국인 무비자 여행 가능국가는 여전히 소수

이렇게 중국의 해외여행시장은 그 규모와 구매력에서 빠르게 커지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입국 시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무비자 여행가능 국가를 고려하여 매년 각국 여권의 여행 접근성을 측정하는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에 따르면 중국은 109개 국가 중 70위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2020년 기준)<sup>7)</sup>

실제로 중국과 경제격차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하위인 중남미,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국 여행객들에게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에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무비자를 실시할 경우 이를 악용한 중국 방문객들의 불법 체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 경제 격차가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은 당분간 중국에게 비자취득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sup>8)</sup>

6) 한국관광공사(2019), 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분석: 중국

7) 참고로 2020년 Henley Passport Index에서 여권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1위 국가는 일본(191 개국 무비자 여행가능), 2위 국가는 싱가포르(190 개국 가능), 3위는 한국과 독일(189개국 가능)임

8)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인도네시아가 화교 경제의 영향과 중국과의 교류 증가를 고려하여 2015년에 중국인 대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중국인 불법 체류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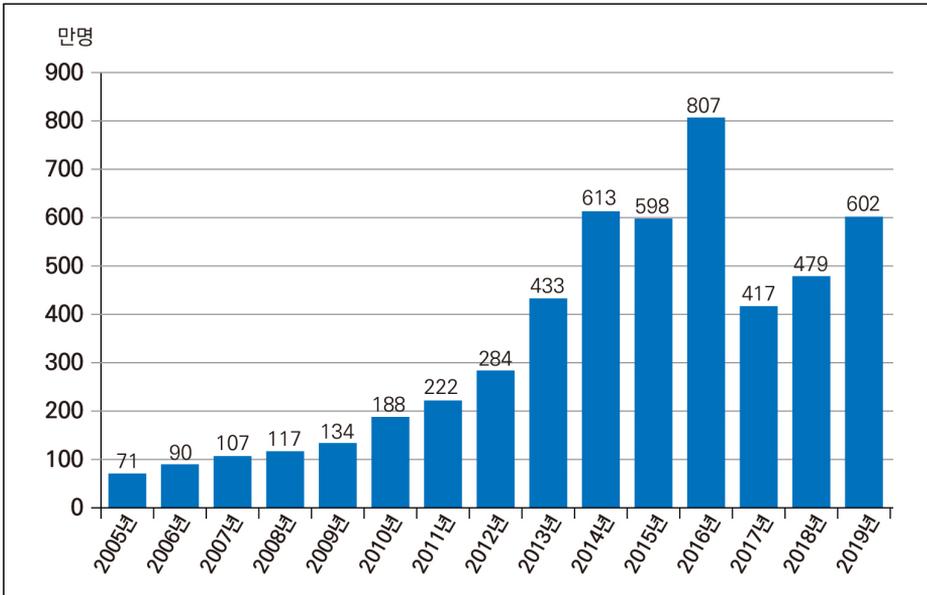
## 2. 중국 방한관광시장 최근 특징

### 가. 한한령의 영향으로 방한시장 침체

중국여행객들의 방한관광시장은 2005년 이후부터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특히 2010년 이후 앞서 서술한 것처럼 중국의 아웃바운드 여행통제가 느슨해지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수치로도 2011년 약 222만 명에서 2016년 약 807만 명까지 증가하여 약 3.5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7년에 한국에 미국의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중국과 한국이 외교 갈등을 겪게 되면서 중국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단체관광 상품 판매에 대한 통제를 취하였고 이로 인해 2016년 전년 대비 48.3% 감소한 약 417만 명만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후 2018년에는 479만 명, 2019년에는 600만 명으로 일정 부분 증가하였지만 사드 이전으로는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이 논의되면서 중국 정부의 한한령 해제가 기대되었지만 1월에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발발하면서 중국관광 방한시장은 코로나의 충격에 전년 대비 큰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그림 2-1] 방한 중국관광 시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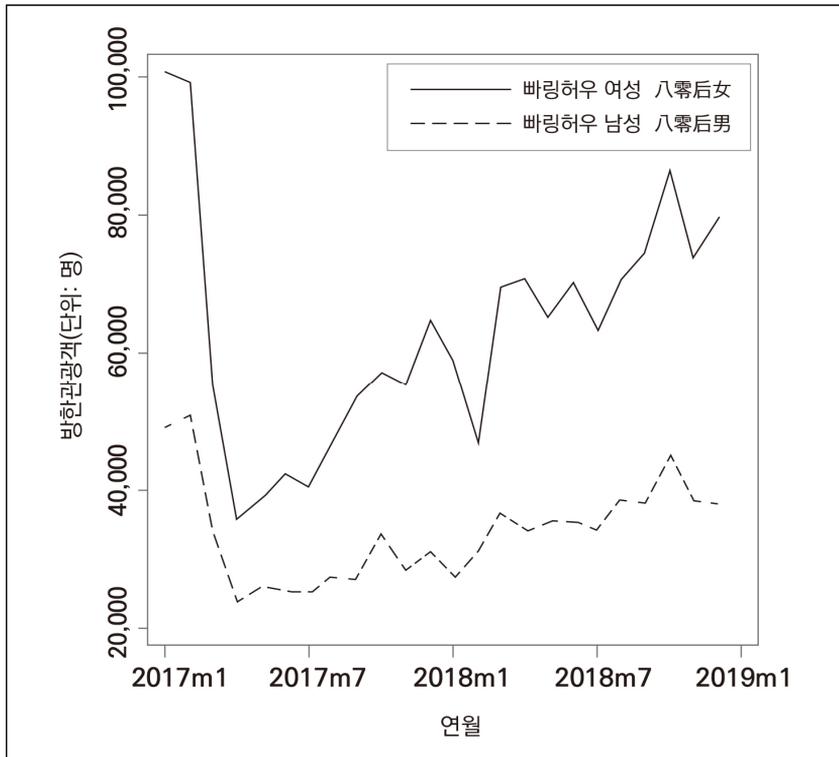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www.tour.go.kr/>

## 나. 2~30대 여성 개별여행객 주도시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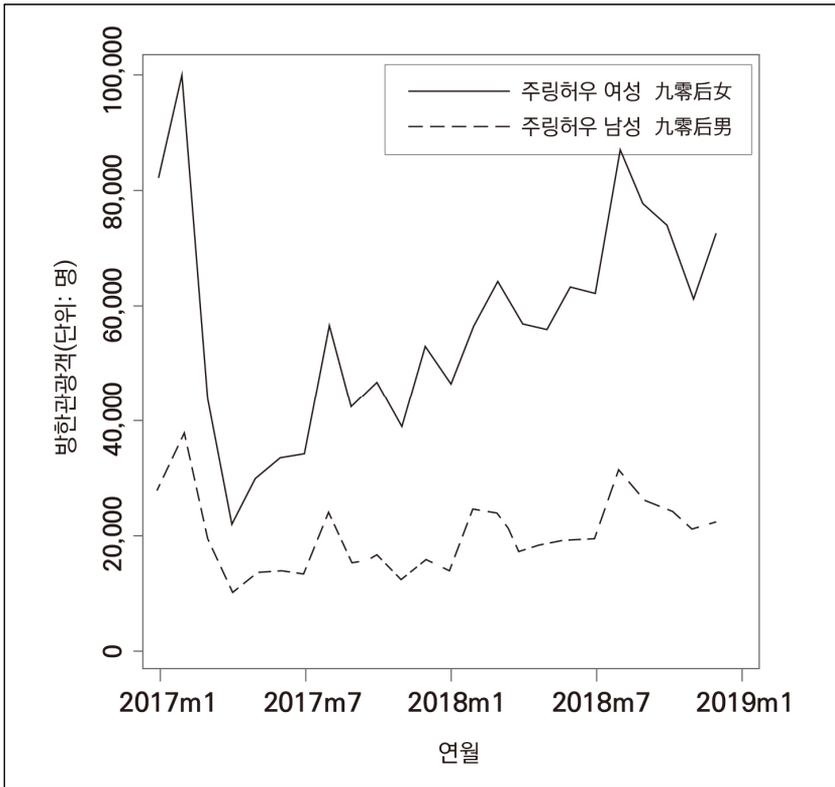
김현주·최경은(2016)은 2012년 이후 한국을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20~30대 개별 여성 관광객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들이 재방문 FIT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사드 갈등으로 중국인 단체관광상품 판매가 금지되면서 더욱 강해졌다. 김형중(2019)은 사드 이후 중국의 단체관광상품 판매금지 이후 한국을 방문한 중국관광객 시계열 자료를 출생코HORT (birth cohort): 우링허우(五零后/50년대생), 류링허우(六零后/60년대생), 치링허우(七零后/70년대생), 빠링허우(八零后/80년대생), 지우링허우(九零后/90년대생), 링링허우(零零后/2000년대생)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드 이후의 중국인 방한관광객 시장은 고소득 미혼 중국인 여성의 빠링허우(80년대생), 지우링허우(90년대생)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그림 2-2], [그림 2-3] 참고).

[그림 2-2] 중국 빠링허우(80년대생)의 성별 방한관광객 시계열추이



출처: 김형중(2019)

[그림 2-3] 중국 지우링허우(90년대생)의 성별 방한관광객 시계열추이



출처: 김형중(2019)

또한 방한여행 형태에서도 개별여행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2-1> 중국 방한여행 형태(2017~2019)

(단위: %)

구분	2019년 방한국가 전체	2019년	2018년	2017년
개별 여행	77.1	82.5	92.4	91.7
단체 여행	15.1	15.2	6.3	6.9
에어텔 여행	7.8	2.3	1.3	1.4

출처: 한국관광공사(2020)

## 제2절 동남아시아 3개국

### 1. 베트남

#### 가. 베트남 아웃바운드시장 최근 특징

##### 1) 경제발전과 함께 하는 베트남 아웃바운드시장

외국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내전 이후 공산주의 국가로서 오랜 기간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하던 베트남은 1986년 ‘도이 머이(Doi Moi)’ 정책으로 베트남 경제를 개방하고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도이 머이’ 개혁개방정책으로 외국자본의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베트남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가 이어지고 중국에 이은 새로운 생산기지로 각광받으면서 베트남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은 1990년대에는 연 평균 7%를 넘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고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외환위기(East Asian Foreign Currency Crisis)가 발생하였을 때는 베트남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었지만 5%의 성장률을 지켰고, 이후에도 6~7%의 연 성장을 계속하여 베트남은 약 2,610억 달러의 GDP를 기록하였다(2019년 기준).<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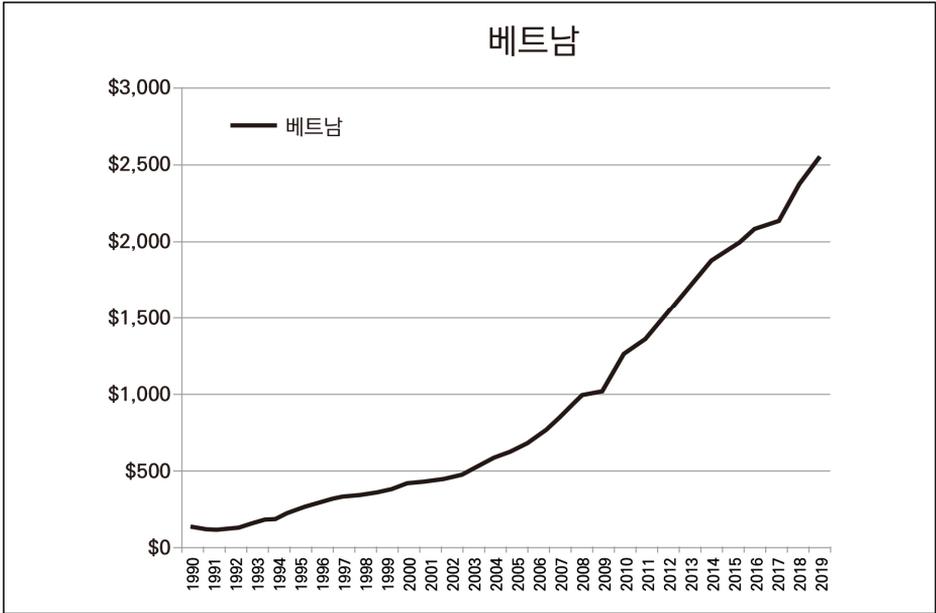
베트남의 GDP 성장과 함께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GNI per capita)도 빠르게 성장하여 2019년에는 2,540 달러로 약 30년 동안 20배가 넘게 증가하였다.<sup>10)</sup>

이러한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베트남 국민들의 관광 수요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그 관광 수요는 베트남 국내 여행이 대부분이며 베트남 1인의 해외여행 횟수는 연간 0.09회로 낮지만 서서히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베트남 관광객들의 아웃바운드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유지운·윤주, 2019).

9) 출처: World Bank Data. (Current US dollar) - <https://data.worldbank.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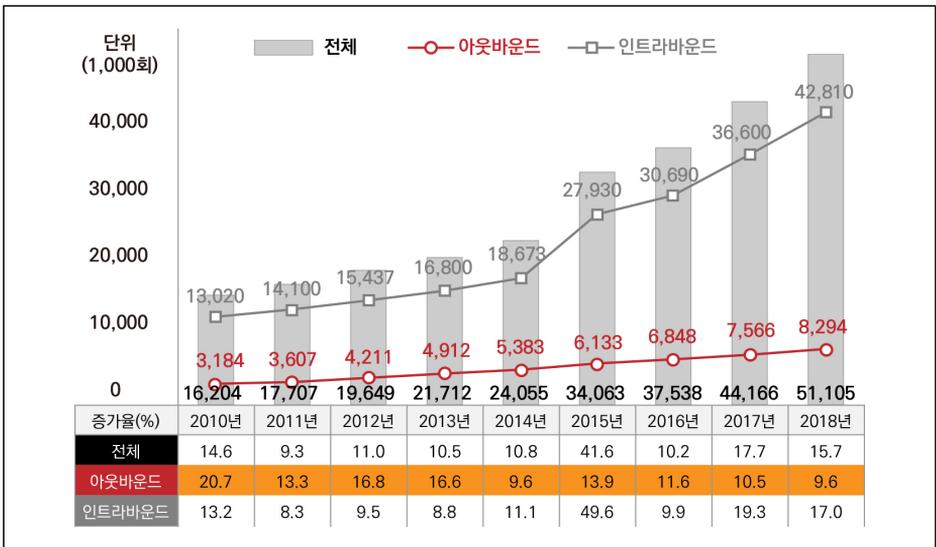
10) 출처: World Bank Data. (Current US dollar) - <https://data.worldbank.org/>

[그림 2-4]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GNI per capita) 추이(1990~2019)



자료: World Bank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자 작성

[그림 2-5] 베트남 아웃바운드 여행횟수 증가 추이<sup>11)</sup>



출처: 유지윤·윤주(2019)

11) 베트남은 아웃바운드에 대한 공식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 본 그래프는 민간 리서치社 Euromonitor의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그래프에서 인트라바운드는 베트남 국내여행(domestic travel)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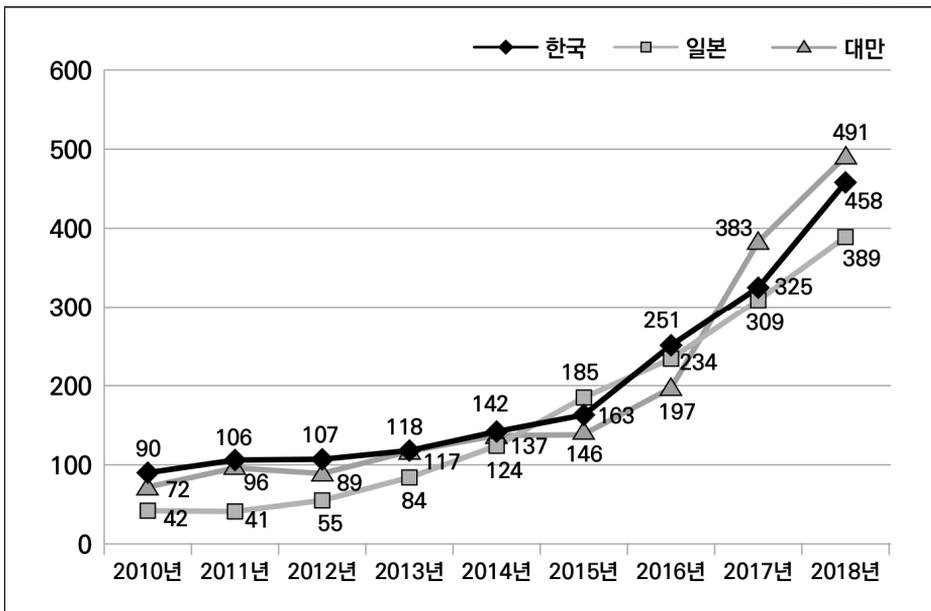
2) 동남아 인접지역에서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

베트남의 해외여행 지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 국가인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동남아 인접 국가는 아세안 협정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 대만, 한국과 같은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4년 이후 일본, 대만, 한국의 동북아시아 3개국에서 베트남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면서 유사한 추세의 경쟁을 보이고 있다(유지윤·윤주, 2019). 이들 3개국은 또한 중국과 외교적 갈등을 겪으면서 중국의 단체관광객 방문이 급감하자 이를 동남아 지역의 시장다변화로 타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sup>12)</sup>

[그림 2-6] 한국, 일본, 대만 방문 베트남 아웃바운드 증가추세

(단위: 천명)



출처: 유지윤·윤주(2019)

12) 일본과 대만의 중국과의 갈등과 시장 다변화에 대한 내용은 5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룬다.

### 3) 무비자 여행 가능 국가는 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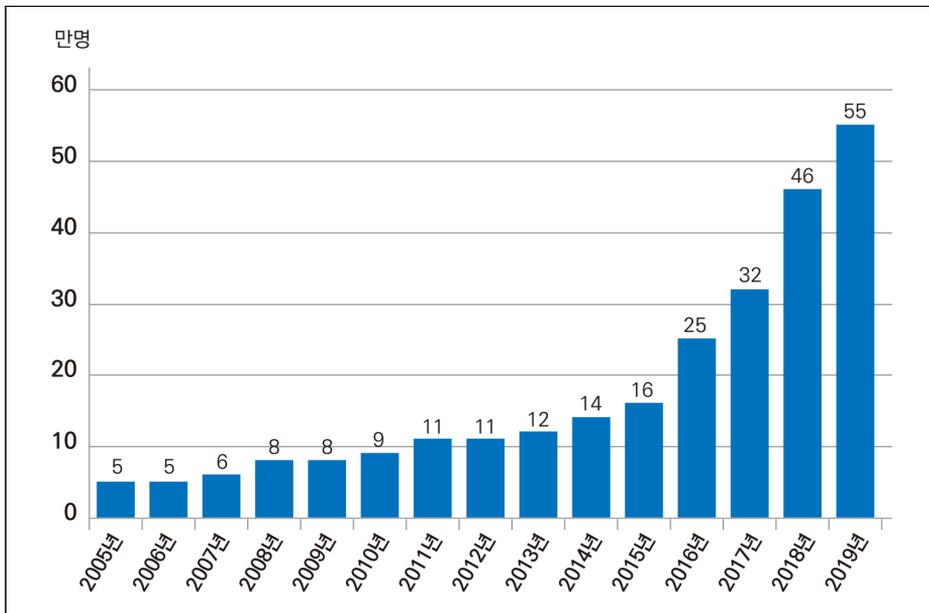
베트남이 개방이후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도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 세계 경제 순위로 볼 때 베트남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중하위권에 속한다. 또한 베트남 국민들이 해외취업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베트남 보다 경제발전도가 높은 국가들에서는 무비자 실시를 할 경우 불법취업의 우려가 커지게 되어 자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여행객들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Henley Passport Index (2020년 기준)에 따르면 베트남의 여행 자유도는 89위(54개국 무비자 여행 가능)로 하위 그룹에 속한다.

## 나. 베트남 방한관광시장 최근 특징

### 1)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

베트남 방한관광 시장은 2005년 약 50,000명에서 2019년 약 550,000명으로 25년 동안 약 11배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림 2-7] 방한 베트남 관광객 수 추이(2005~2019)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www.tour.go.kr/>)

〈표 2-2〉 베트남 2014년 이후 방한객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관광객 수	141,504	162,765	251,402	324,740	457,818	553,731
성장률	20.9	15.0	54.5	29.3	41.0	21.0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tour.go.kr)

## 2) 베트남 방한여행 형태

베트남 방한 시장은 아직 뚜렷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2-3〉 베트남 방한여행 형태(2017~2019)

(단위: %)

구분	2019년 방한국가 전체	2019년	2018년	2017년
개별 여행	77.1	61.3	44.3	59.9
단체 여행	15.1	37.6	52.6	39.5
에어텔 여행	7.8	1.1	3.1	0.6

출처: 한국관광공사(2020)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개별여행과 단체여행의 비중이 특정하게 더 두드러진 형태는 아니다. 2019년의 경우는 개별여행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이러한 경향이 계속 연속성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인도네시아

### 가. 인도네시아 아웃바운드시장 최근 특징

#### 1) 세계 4위의 인구규모에 따른 성장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000만 명에 육박하는 동남아시아의 인구 대국이다. 이러한 인구 규모와 더불어 풍부한 천연자원, 해외 자본의 유입 등에 힘입어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10개국 중 약 37%의 GDP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매우 크다.<sup>13)</sup> 베트남처럼 공산주의 국가에서 개방정책으로 변환하면서 시작된 드라마틱한 성장은 없지만 규모에 근거한 꾸준한 성장이 돋보이며 2017년에는 국가 GDP가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또한 2014년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에 성공하여 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당선하였고 2019년 재선에 다시 성공하여 정치 체제의 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가 안정되면서 주춤하던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고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도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9년 4,050달러를 돌파하였다.<sup>14)</sup>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다시 증가하면서 주춤하던 인도네시아의 아웃바운드 여행객도 940 만 명을 돌파하였고 이러한 추세면 조만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표 2-4〉 인도네시아 아웃바운드 여행객 추이(전체)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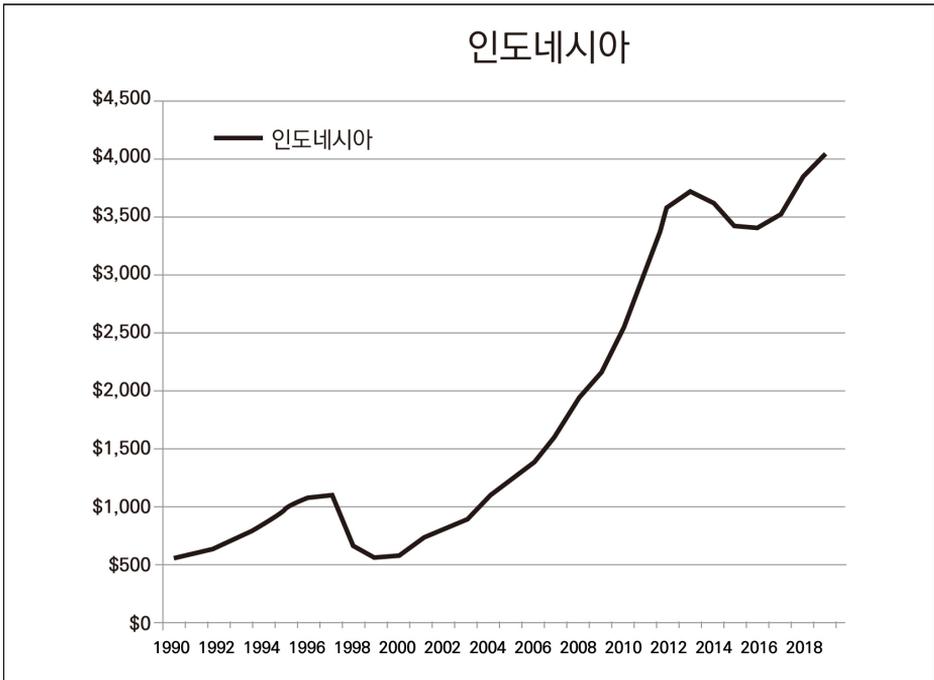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관광객 수	6,750	7,454	8,025	8,074	8,176	8,340	8,856	9,468
성장률	8.3	10.4	7.7	0.6	1.3	2.0	6.2	6.9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 UNWTO(2020)\_a

13)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G20 회원 국가이다.

14) 출처: World Bank Data. (Current US dollar) - <https://data.worldbank.org/>

[그림 2-8] 인도네시아 1인당 국민소득(GNI per capita) 추이(1990~2019)



자료: World Bank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자 작성

## 2) 비자 면제에 따른 일본 방문 증가

인도네시아는 18,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 특성 때문에 근접 국가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전체 아웃바운드 여행에서 60%를 차지한다. 그리고 특이하게 사우디아라비아가 방문 국가 3위를 차지하는데 이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인 특성을 반영한 종교순례의 영향으로 판단된다(한국관광공사, 2019).

그리고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최근 인도네시아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2015년 이후로 일본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2014년 12월에 인도네시아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소지한 경우 비자면제 조치를 시행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sup>15)</sup> 이러한 일본의 강제는 동일한 기간 내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아웃바운드 여행객의 추이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15) 비자면제 이외에 당시 아베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엔저현상도 일본 인바운드 여행의 경쟁력을 높게 만들었다.

일본의 비자 면제 조치가 시행된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을 찾는 인도네시아 방문객의 숫자가 역전된 것을 알 수 있다.<sup>16)</sup>

〈표 2-5〉 한·일 방문 인도네시아 아웃바운드 여행객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원수	성장률	인원수	성장률	인원수	성장률	인원수	성장률	인원수	성장률
한국	208,329		193,590	-7.1	295,461	52.6	230,837	-21.9	249,067	7.9
일본	158,739		205,083	29.2	271,014	32.1	352,330	30.0	396,852	12.6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 UNWTO(2020)\_b, 연구자 수정 보완

### 3) 무비자 여행 가능 국가: 71개국

인도네시아는 베트남보다는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G20에 속하지만 여전히 1만 달러 이하의 소득 국가이다. Henley Passport Index(2020년 기준)에 따르면 베트남의 여행 자유도는 73위(71개국 무비자 여행 가능)로서 역시 하위 그룹에 속한다.

## 나. 인도네시아 방한관광시장 최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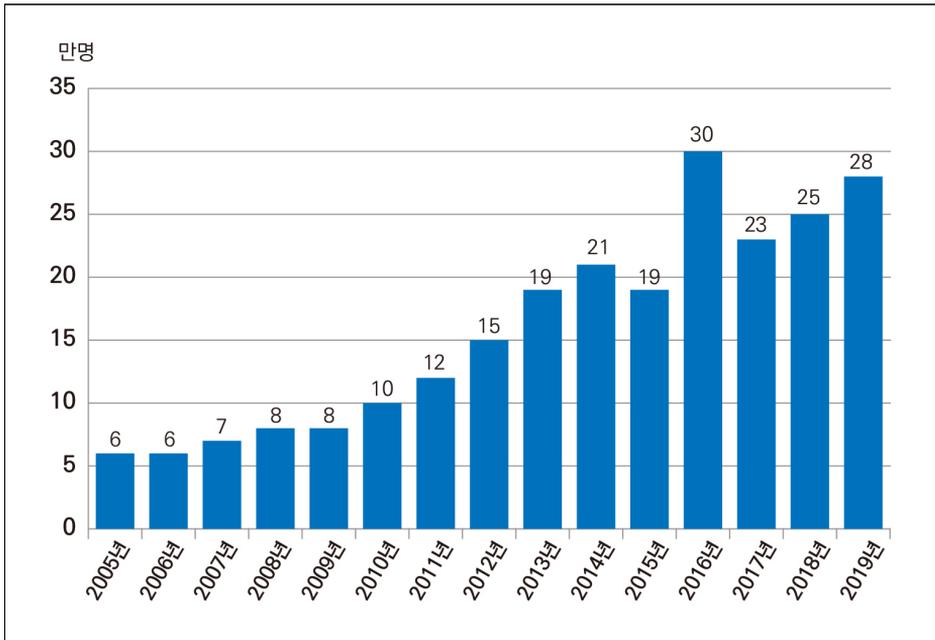
### 1) 메르스로 주춤 후 다시 완만한 성장

인도네시아 방한 시장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2015년 메르스 발병으로 전년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다가 2016년부터 다시 성장을 기록 중이다.

베트남 방한시장에 비하여 메르스가 발생한 2015년에 인도네시아 방한 시장이 역성장한 것은 메르스가 발병한 지역이 중동 이슬람지역으로서 같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메르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16) 2017년에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여행객 숫자의 급감은 중국 사드배치로 인한 한한령으로 방한 크루즈가 단절되자 중국 방한 크루즈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국적 승무원의 입국감소 영향(한국관광공사, 2019).

[그림 2-9] 방한 인도네시아 입국자 추이(2005~2019)



자료: 관광자식정보시스템 (<https://www.tour.go.kr/>)

## 2) 인도네시아 방한여행

인도네시아 방한관광 시장은 개별여행의 비율이 단체 여행보다 높지만, 아직까지는 단체여행의 비중도 20~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2-6〉 인도네시아 방한여행 형태(2017~2019)

(단위: %)

구분	2019년 방한국가 전체	2019년	2018년	2017년
개별 여행	77.1	61.3	60.6	71.5
단체 여행	15.1	37.0	37.1	27.1
에어텔 여행	7.8	1.7	2.2	1.4

출처: 한국관광공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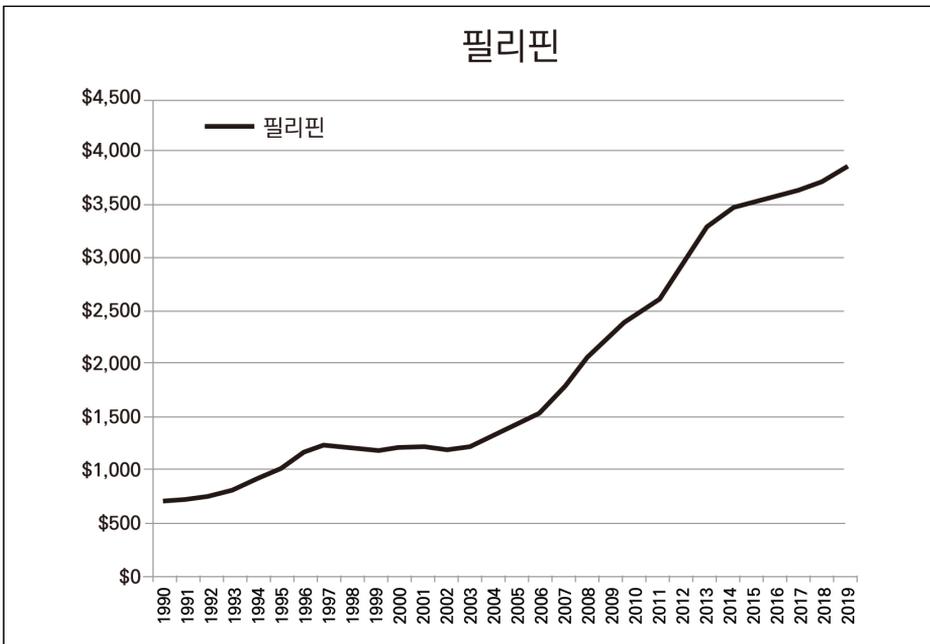
### 3. 필리핀

#### 가. 필리핀 아웃바운드시장 최근 특징

##### 1) 경제구조에 영향 받는 필리핀 아웃바운드 시장

필리핀은 1945년 2차대전 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해외원조 및 미국 자본의 유입 덕분에 급속한 경제회복을 이룩하여 1950~1960년대에는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 최고의 경제 강국이었다. 그러나 1965~1986년, 장기 20년 동안 마르코스 집권 시기에 부패로 경제가 쇠락하였고 이후 정치적 혼란과 내전을 거치면서 ‘아시아의 병자(Sick man of Asia)’로 몰락하였다.<sup>17)</sup> 2015년부터 필리핀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 중인데 이는 수출확대, 민간소비 활성화,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힘입은 것으로 2019년에 필리핀의 국가 GDP는 약 3,76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850 달러를 달성하였다.<sup>18)</sup>

[그림 2-10] 필리핀 1인당 국민소득(GNI per capita) 추이(1990~2019)



17) 외교부(2019), 필리핀 개황

18) 출처: World Bank Data. (Current US dollar) - <https://data.worldbank.org/>

그러나 계층 간, 지역 간 높은 소득 격차와 이에 비롯한 높은 해외 취업 근로자 송금액에 대한 높은 의존도<sup>19)</sup>,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높은 수입비중과 관광산업이나 콜센터 같은 외부 요인에 취약한 서비스 산업에 의존하는 점도 역시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필리핀 아웃바운드 여행객 추이는 성장세에 있기는 하지만,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표 2-7〉 필리핀 아웃바운드 여행객 추이(전체)

(단위: 천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관광객 수	4,511	4,656	4,851	3,488	5,115	5,703	7,391	
성장률		3.2	4.2	-28.1	46.6	11.5	29.6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 2) 화교권 국가 집중과 일본의 성장

필리핀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가 전체 아웃바운드 여행지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필리핀 거주 화교들의 친지 방문 목적으로 수요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한국관광공사, 2019).<sup>20)</sup>

또한 인도네시아 아웃바운드 목적지에서 나타난 일본의 성장이 필리핀 아웃바운드 최근 추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비자완화와 엔화 약세로 인해 필리핀인들의 일본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표 2-7〉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015년 이후로 한국을 찾는 필리핀 여행객은 정체되어 있는 데 반하여 일본을 찾는 필리핀 여행객은 계속해서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sup>21)</sup>

19) 필리핀 해외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액은 필리핀 국가 GDP의 약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이며 매년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외교부, 2019).

20) 홍콩 및 싱가포르 등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점도 영향을 미친다.

21) 2017년 필리핀 여행객의 방한방문객 급감은 중국 한한령으로 인한 중국 크루즈선 중지 때문에 필리핀 국적의 승무원 비율 감소

〈표 2-8〉 한·일 방문 필리핀 아웃바운드 여행객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원수	성장률	인원수	성장률	인원수	성장률	인원수	성장률	인원수	성장률
한국	434,951		403,622	-7.2	556,745	37.9	448,702	-19.4	460,168	2.6
일본	184,204		268,361	45.7	347,861	29.6	424,121	21.9	503,976	18.8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 UNWTO(2020)\_b, 연구자 수정 보완

### 3) 무비자 여행 가능 국가는 71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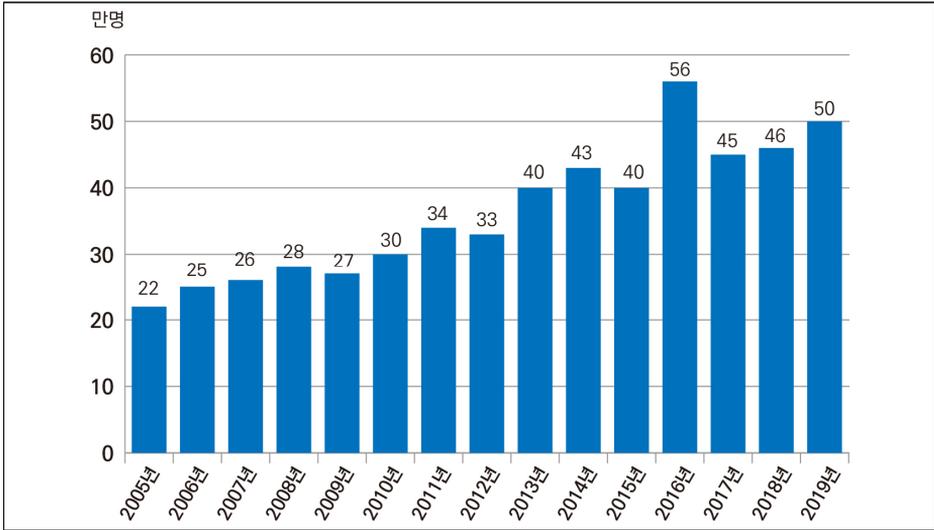
필리핀도 다른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중하위권의 소득 국가그룹에 속한다. Henley Passport Index(2020년 기준)에 따르면 필리핀의 여행 자유도는 76위(67개국 무비자 여행 가능)로서 역시 하위 그룹에 속한다.

## 나. 필리핀 방한관광시장 최근 특징

### 1) 필리핀 크루즈 승무원의 방한증가에 의한 통계적 성장

필리핀 방한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는 했지만 그 성장 추세가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다. 2013년 이후로 갑자기 증가추세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순수 관광객의 영향력보다는 필리핀 크루즈 승무원의 영향력이 더 크다(유지윤·윤주, 2019: 한국관광공사, 2019). 방한 필리핀 관광시장의 최근 성장이 순수 관광객보다는 필리핀 크루즈 승무원의 영향력이 크다는 추정은 2017년에 필리핀 방한 여행객이 급감한 점에서 확인되는데, 이 시점이 중국의 한한령으로 중국 발 방한 크루즈가 중단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한 필리핀 시장의 통계에서는 이러한 필리핀 크루즈 승무원의 영향을 감안하여 살펴봐야 한다.

[그림 2-11] 방한 필리핀 여행객 수 추이(2005~2019)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www.tour.go.kr/>)

## 2) 높은 개별여행 비율

필리핀 방한관광 시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비하여 개별여행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필리핀의 경제상황과 성숙하지 않은 아웃바운드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현상으로서 성숙 시장으로 평가하는 대만보다 높은 수치이다.<sup>22)</sup> 이러한 특성은 필리핀의 경우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외 개별여행에 대한 언어적 제약이 없어서 불안감이 덜하고, 또한 필리핀의 경우 가족 중심의 소규모 FIT 로 움직이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sup>23)</sup>

<표 2-9> 필리핀 방한여행 형태(2017~2019)

(단위: %)

구분	2019년 방한국가 전체	2019년	2018년	2017년
개별 여행	77.1	87.9	80.4	82.5
단체 여행	15.1	10.9	17.4	16.7
에어텔 여행	7.8	1	2.2	0.8

출처: 한국관광공사(2020)

22) 참고로 아시아 국가 들 중 성숙시장으로 평가하는 국가들의 방한여행 형태에서 개별여행의 비중은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92.2%), 홍콩(84.7%), 대만(56.9%): 한국관광공사(2020)

23) 한국관광공사 前 필리핀 지사장 인터뷰

## 제3절 인도

---

### 1. 인도 아웃바운드 여행시장 최근 특징

#### 가. 규모의 성장에 해외여행도 서서히 증가

인도는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13억 8천만 명의 세계 대국이며 향후에는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일찌감치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였지만 종교 및 인종 갈등, 뿌리 깊은 카스트 제도와 네루 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경제적 성장은 늦었다. 1991년 인도는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대신 경제 개혁을 단행하면서 서서히 산업적 기틀을 갖추어 갔고, 2000년 이후 세계 IT 경제에서 인도의 IT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sup>24)</sup> 특히 현 모디 총리가 2014년 취임하면서 인도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작하였고 2019년 총선에서 다시 승리하여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디 총리 취임 후 인도는 연 평균 약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 국가 GDP는 약 2.97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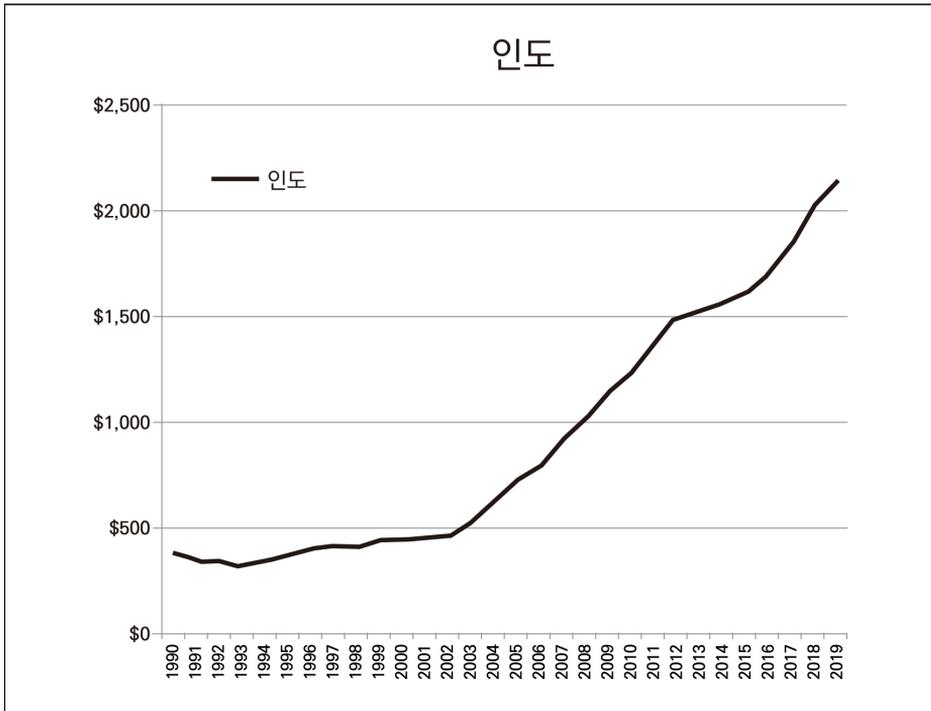
그러나 아직까지 빈곤층의 비율이 높아 1인당 국민소득은 2,000 달러를 약간 넘었을 뿐이고 전 국민 중 여권 보유자가 약 5% 내외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구 규모 효과로서 향후 기대되는 시장이다.<sup>25)</sup>

---

24) 두산백과, 인도의 경제성장(네이버 doopedia)

25) 인도의 여권 보유자는 2007년 2,300만 명에서 2018년 7,960 만 명으로 증가하였다(European Travel Commission, 2020).

[그림 2-12] 인도 1인당 국민소득(GNI per capita) 추이(1990~2019)



〈표 2-10〉 인도 아웃바운드 여행객 추이(전체)

(단위: 천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관광객 수	13,994	14,925	16,626	18,330	20,376	21,872	23,943	26,296
성장률	7.7	6.7	11.4	10.2	11.2	7.3	9.5	9.8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 UNWTO(2020)\_a

## 나. 순수관광목적의 비중은 아직 낮음

유럽여행위원회(ETC: European Travel Commission)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 아웃바운드 여행의 목적에서 순수 관광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으며 취업과 해외 친지 방문(VFR)의 목적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여행목적에 따라서 인도인들의 주된 여행목적지도 중동이 가장 높으며 미국, 싱가포르 등이 뒤를 잇는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비즈니스 목적의 상용여행객이 많은 편이다(ETC, 2020; 한국관광공사, 2019).

〈표 2-11〉 인도 해외여행객의 지역별 비중

구분	2013	2018	2023(예상)
중동	35%	36%	39%
아프리카	4%	5%	5%
아시아	37%	34%	31%
유럽	16%	17%	16%
미주	9%	9%	9%

출처: ETC(2020)

#### 다. 무비자 여행 가능 국가: 58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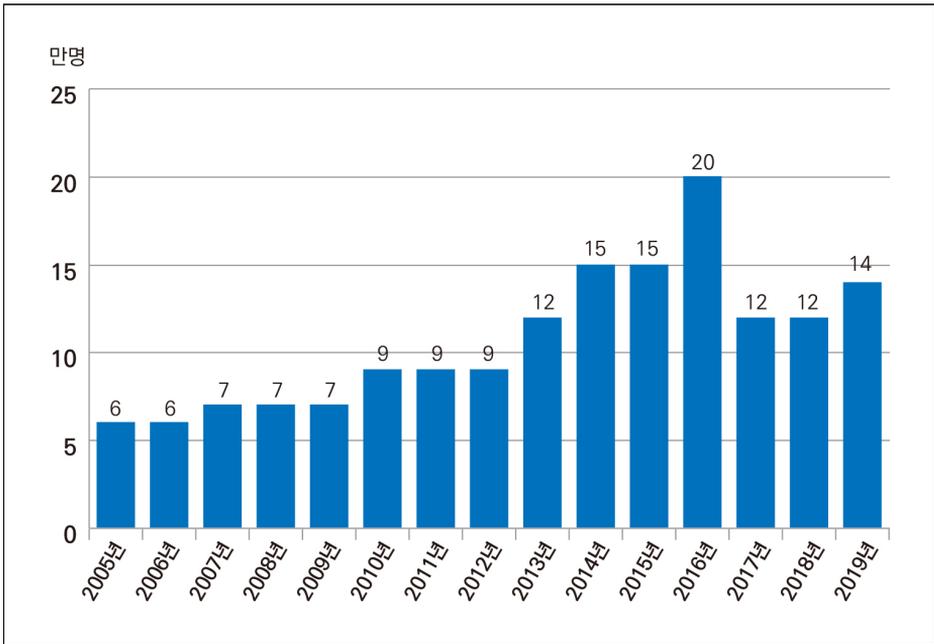
인도는 연구대상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정도로 가장 낮다. 해외취업 수요가 크고 국민소득이 낮은 것처럼 Henley Passport Index(2020년 기준)에서 평가한 인도의 여행 자유도 역시 85위(58개국 무비자 여행 가능)로 가장 낮다.

## 2. 인도 방한 관광시장 최근 특징

#### 가. 양적인 규모는 미흡하지만 1인 지출경비는 상위권

방한 인도관광객의 숫자는 아직까지 200,000명을 넘지 않아 규모 면에서는 전체 방한 시장의 1% 미만으로서 규모 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2-13] 방한 인도 여행객 수 추이(2005~2019)



자료: 관광자식정보시스템 (<https://www.tour.go.kr/>)

2013년 이후 급증하였다가 2017년 이후 수치의 급감은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중국 한한령에 의한 승무원 감소 추세에 의한 것이다(한국관광공사, 2019).

양적인 규모는 미미하지만 인도 방한관광시장은 비즈니스 여행객이 많아서 여행객의 1인 지출경비가 상위권에 속하여 고부가가치 시장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12> 인도 방한여행객 1인 지출경비(2017~2019)

(단위: US dollar)

구분	2019년 방한국가 전체	2019년	2018년	2017년
금액	1239.2	1633.2	1548.2	1,686.2

출처: 한국관광공사(2020)

## 나. 비즈니스 목적의 개별여행객 비중 높음

방한 인도여행객의 주요 방한 목적은 사업/전문 활동의 비중이 80%에 육박하여 순수 관광목적의 여행보다는 사업 목적의 출장, 즉 비즈니스 여행객들이 많다.

〈표 2-13〉 방한 인도여행객의 주요 방한 목적(2017~2019)

구분	2019년 방한 국가 전체	2019년	2018년	2017년
사업/전문 활동	17.7	82.2	81.3	80.3
여가/위락/휴식	67.8	9.3	11.7	5.9
친구/친지방문	11.2	4.8	-	3.7

출처: 한국관광공사(2020)

이러한 이유로 인도의 아웃바운드 시장은 초기이지만 우리나라를 찾는 인도 여행객들은 사업목적의 비즈니스 여행객이 많기 때문에 방한여행 형태도 개별여행 비중이 매우 크다.

〈표 2-14〉 인도 방한여행 형태(2017~2019)

(단위: %)

구분	2019년 방한국가 전체	2019년	2018년	2017년
개별 여행	77.1	96.5	96.6	97.7
단체 여행	15.1	2.3	1.8	1.3
에어텔 여행	7.8	1.2	1.3	1.0

출처: 한국관광공사(2020)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방한 국가인 중국, 동남아 3국, 인도의 시장 특성을 살펴보고 비자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당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요약

조사 대상국가인 중국, 동남아3국, 인도는 각각 방한시장에 있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각 국가의 경제적 상황,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의 발전단계, 여행 행태에 영향을 받았다.

#### 가. 중국

일본을 제치고 방한관광시장의 1위로 올라섰지만 사드배치로 우리나라와 외교 갈등을 겪게 되면서 2017년 이후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었다. 중국의 단체관광객 통제로 인하여 개별여행 시장으로 변하던 관광행태가 가속이 붙어 현재는 개별여행객, 특히 2~30대 여성 중심의 개별여행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한령 해제를 기대하였으나 코로나19의 발발로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방한여행 행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나. 동남아3국

이른바 VIP 로 불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남아 3국은 우리나라가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남방정책 추진과 맞물려 전략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동남아 방한관광시장의 주요 타겟시장이다. 3개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의 성장이 가장 빠르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과 함께 베트남의 경제적 성장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베트남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 성장이 빠르지는 않은 편이며 크루즈 승무원들의 영향이 크다. 3개국가 모두 아웃바운드 시장의 발달 초기에 속하는데, 필리핀의 경우 영어권 국가이며 해외취업, 가족여행을 선호하는 특성으로 개별여행의 비중이 높은 편이 특징이다.

#### 다. 인도

인도는 지리상으로는 서남아시아에 속하여 있지만, 인구 대국으로서 경제규모와 잠재력으로 신흥방국가에 속한 나라다. 조사 대상 5개국가 중에 1인당 경제소득이 가장 작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여행시장도 이제 막 시작한 국가에 해당되며 순수 관광보다는 비즈니스 출장, 해외취업 등이 주요한 여행 동기이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나라 인도방한 여행형태의 특성에도 나타나는 데 해외여행 초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여행의 비율이 압도적인데 이는 방문목적이 사업 및 비즈니스를 위한 비즈니스 여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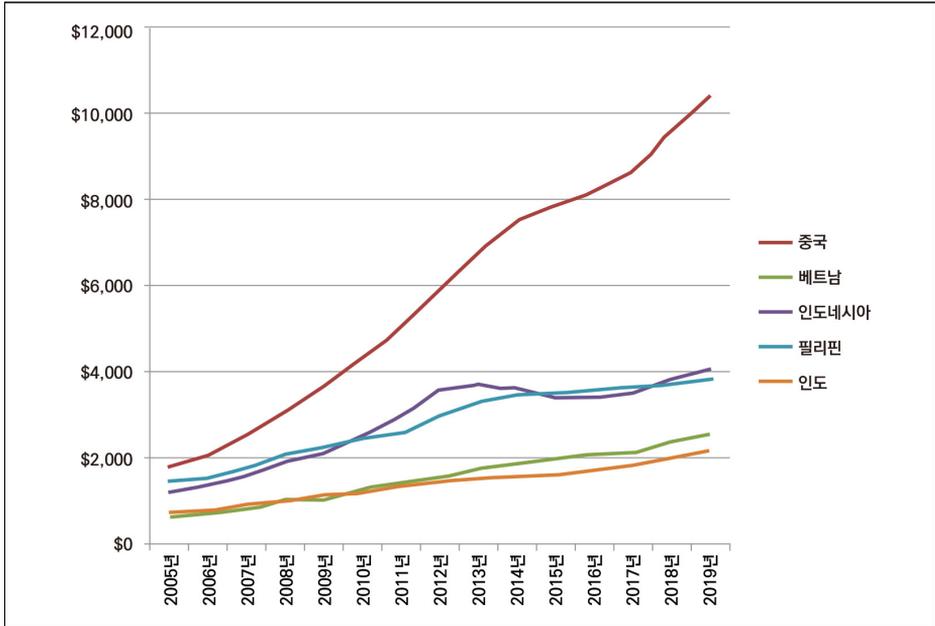
## 2. 시사점

### 가. 경제소득증가의 관광시장 성장 견인

연구 대상 국가인 중국, 동남아 3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모두 최근 아웃바운드 여행의 성장은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에 근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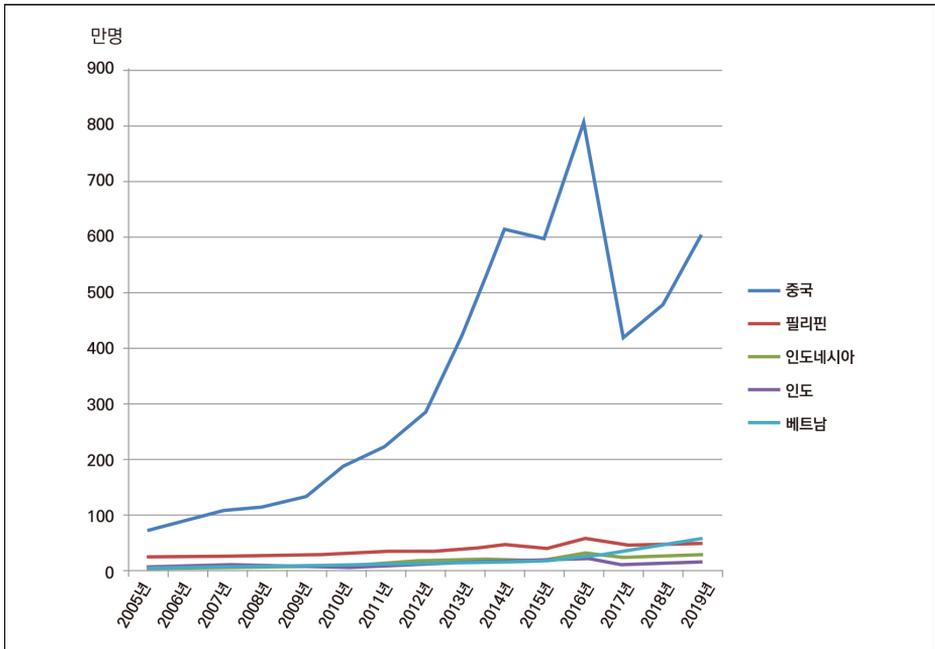
국가경제의 성장은 해당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고, 소득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해외여행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방한여행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중국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림 2-14] 주요 국가 1인당 국민소득 추이 비교(2005~2019)



자료: world bank (Current US dollar)

[그림 2-15] 주요 국가 방한여행객 수 추이 비교(2005~2019)



## 나. 중국 發 정치변수의 동북아 관광시장 영향 증가

[그림 2-15]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17년 이후 중국의 사드 변수는 방한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체 방문객 수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방한 중국시장을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 급격히 전환시키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관광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한한령 조치는 방한 중국시장의 양적, 질적 변화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동남아 시장 진출을 통한 시장 다변화에 노력하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되었고 향후 주요 경쟁국가 사례조사에서 기술하겠지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이 동남아 관광시장에 노력하게 되는 영향도 미치게 되었다.

## 다. 1인당 경제소득 증가가 여행자유도를 증가시킴

중국, 동남아 3국, 인도 5개 국가들의 여행 자유도, 즉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 시킨 <Henley Passport Index> 는 모두 하위권에 속한다. 여행객이 해당 국가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으려면 해당 국가 전체의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송출 국가 국민의 1인당 국민 소득이다. 중국과 인도의 국가별 GDP 순위는 2위와 5위에 해당하는 경제대국이지만, 그것은 인구에 기대한 전체 경제력의 총합이지 국민 개개인이 평균적으로 부유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래 <표 2-14>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특정 국가 국민의 해외여행 자유도는 1인당 경제소득(GNI per capita)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

<표 2-15> 한국과 주요 국가 1인당 국민소득 및 여행 자유도 비교

구분	1인당 국민소득(US dollar)	여행 자유도 순위(무비자 여행 가능국가)
한국	33,720	3위(189개국)
중국	10,410	70위(74개국)
베트남	2,540	89위(54개국)
인도네시아	4,050	73위(71개국)
필리핀	3,850	76위(67개국)
인도	2,130	85위(58개국)

출처: World Bank Data(2019) & Henley Passport Index(2020)

## 라. 방한시장의 특성에 맞는 비자제도 개선필요

연구 대상 국가 5개국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차이는 현재 많게는 약 30,000 달러에서 적게는 23,000 달러 정도의 차이가 난다. 즉 가장 차이가 적은 중국과의 경우도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소득격차가 3배 넘게 차이가 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취업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대상 5개 국가들에 대해서 비자면제를 실시하는 것은 불법 체류자 급증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각 국가별 관광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국가별로 비자개선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한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연구

제3장

## 비자제도 개선현황과 제약요인



# 제1절 비자제도 개요

## 1. 비자의 정의 및 기능

비자(VISA)는 외국인의 입국 자격이 있음을 밝히는 증서로서 비자 소지자의 신분을 증명하여 입국을 추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VISA”라는 단어의 어원이 라틴어 “VISE”가 어원으로서 보증하다, 보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26)</sup>

즉 비자는 ‘입국 허가서’가 아니라 ‘입국 추천서’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도 해당 국가에서 정한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입국심사에서 탈락하여 입국을 거절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서도 외국인의 비자소지가 입국을 보장하지 않으며,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불허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 입국심사).<sup>27)</sup>

이러한 비자 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주로 군사상의 이유에서 스파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달된 것인데, 전후에도 국내의 보안 뿐 아니라 노동문제나 이민제한 등의 이유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sup>28)</sup> 그러므로 비자의 기능은 과거에는 보안 문제가 가장 컸지만 현대에는 노동(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취업)과 이민 등 2차적인 목적인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해외 여행객에게 있어 여권과 비자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법에서도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인 여권과 비자(사증)를

26) 네이버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27) 출입국관리법 제12조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 입국목적에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28) 네이버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가지고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sup>29)</sup>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가 간 출입을 할 때 비자는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국제 간 인적 교류가 잦아지다보니 서로 간의 편의와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무비자 입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자가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서 비자가 기본적인 것이고 무비자 입국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자가 없이 입국하려면 출입국 관리법에서 지정하는 무사증 입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가능하다.(<표 3-1>)

〈표 3-1〉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비자(사증)관련 조항

- 
-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인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④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 제8조(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출처: 〈출입국관리법〉 발췌

29) 우리나라에서는 사증(査證)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비자라는 명칭이 통용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사증과 비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됨을 밝힌다.

## 2. 비자의 내용

비자에 담겨지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소지자의 인적사항, 체류자격, 체류기간, 유효기간, 발급일자 등으로 우리나라 비자의 사례를 보면 아래 [그림 3-1]와 같다.

[그림 3-1] 대한민국 비자 견본(스티커 방식: 2020년 이전 사용)



출처: 비자포털([www.visa.go.kr](http://www.visa.go.kr))

- ① 사증번호: 비자발급 일련번호
- ②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의 종류
- ③ 체류기간: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계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 ④ 종류: 비자의 종류, 단수비자(S로 표시함) /복수비자(M으로 표시함)
- ⑤ 발급일: 비자 발급일
- ⑥ 만료일: 비자 만료일
- ⑦ 발급지: 비자발급지에 대한 정보 기재

그런데, 우리나라 법무부는 2020년 2월 24일 비자 발급 시 부착하던 스티커 방식을 폐지하고 비자포털([visa.go.kr](http://visa.go.kr))에 접속하여 비자발급 확인서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법무부는 비자발급 업무처리의 효율성(비자 변·위조 방지), 예산 절감 및 신청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2월부터 미국, 일본, 유럽 등 24개 국가에서 시범실시를 하였다. 이후 2020년 7월 1일부터 전 세계 우리나라 재외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대신 비자발급확인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림 3-2] 대한민국 비자 발급확인서 견본(2020년 이후 사용)

대한민국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VISA GRANT NOTICE**  
**사증 발급 확인서**

Visa No. (사증번호) : AB0000000

1. DETAILS OF APPLICANT 신청자 정보					
	Full Name 성명	KIM SAMPLE			
	Date of Birth 생년월일	2019. 01. 01.	Gender 성별	male	
	Nationality 국적	REPUBLIC OF KOREA			
	Passport No. 여권번호	MI5001234			
	Passport Expiration Date 여권만료일	2022. 01. 01.			
2. VISA DETAILS 사증 사항					
Status of Stay 체류자격	C-3-9	Period of Stay 체류기간	30 Days	Number of Entries 사증 종류	Multiple
Date of Issue 발급일	2019. 01. 01	Validity Period of Visa 사증 유효기간	2020. 01. 01	Issuing Authority 발급 기관	Korean Embassy in Vietnam
비고 Remarks					

This document confirms that the above applicant's Korean visa application has been approved and that the visa is currently vali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Issuance of Vis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사증발급)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된 신청인에 대하여 사증 발급이 허가되었으며 해당 사증이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Minister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 3. 무비자 제도

전술한 것처럼 다른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는 여권과 함께 필수 구비사항이다. 그러나 국가 간 교류 증가와 관광 증진과 같은 국익 제고 등을 위하여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 무비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무비자 제도는 크게 양국 간 상호 비자면제 협정에 따른 것과 필요에 의한 일방적 지정에 따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무비자 제도를 4가지 형태로 명시하고 있으며 유민이·이정우(2019)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3-2〉 우리나라 무비자 제도의 유형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근거	대상 및 시기	입법취지	목적
제1호	등록외국인의 재입국시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행정편의 제공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제2호	사증면제협정 국가국민 입국 시	상호 인적교류	인적교류 확대 및 상호이익 증대
제3호	국제친선, 관광 등 국가이익을 위하여 지정된 자	국가이익을 위한 입국허가 확대	입국문화 개방 및 국가이익 증대
제4호	난민인정자의 재입국시	난민인정자에게 행정편의 제공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출처: 유민아·이정우(2019), p.13

〈표 3-2〉에서 관광과 관련된 일반적인 경우는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된다.

우선 제2호에 해당하는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자 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단기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때는 비자가 필요 없다. 그리고, 제3호에 해당되는 대상은 법무부 장관의 훈령(지침)으로 지정되며 ① 제3국 여행통과승객 ② 환승관광 외국인 ③ 제주 지역 무사증 입국허가 등이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비자종류와 운영상황에서 기술하겠다.

## 제2절 비자종류와 운영

### 1. 비자의 종류

비자는 사용 가능한 횟수에 따라서 단수(Single)비자와 복수(Multiple)비자로 나눌 수 있다. 단수 비자는 1회만 사용이 가능하며 복수 비자는 2회만 사용 가능한 더블(Double)비자와 유효 기간(보통 1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 내에는 횟수 제한이 없는 비자로 다시 또 나눌 수 있다. 사용 횟수에 따른 구분은 간단하지만 입국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하는 체류 자격별로 나누면 총 36개다.

〈표 3-3〉 입국목적(체류자격)에 따른 우리나라 비자 종류

1. 외교(A-1)	13. 취재(D-5)	25. 특정활동(E-7)
2. 공무(A-2)	14. 종교(D-6)	26. 비전문취업(E-9)
3. 협정(A-3)	15. 주재(D-7)	27. 선원취업(E-10)
<b>4. 비자면제(B-1)</b>	16. 기업투자(D-8)	28. 방문동거(F-1)
<b>5. 관광통과(B-2)</b>	17. 무역경영(D-9)	29. 거주(F-2)
6. 일시취재(C-1)	18. 구직(D-10)	30. 동반(F-3)
<b>7. 단기방문(C-3)</b>	19. 교수(E-1)	31.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8. 단기취업(C-4)	20. 회화지도(E-2)	32. 영주(F-5)
9. 문화예술(D-1)	21. 연구(E-3)	33. 결혼이민(F-6)
10. 유학(D-2)	22. 기술지도(E-4)	34. 기타(G-1)
11. 기술연수(D-3)	23. 전문직업(E-5)	35. 관광취업(H-1) <sup>30)</sup>
12. 일반연수(D-4)	24. 예술흥행(E-6)	36. 방문취업(H-2)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9.08),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발췌, 연구자 정리<sup>31)</sup>

30) 관광취업 비자는 '워킹홀리데이'를 가리키며 국가 간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상호간 쿼터를 정한다. 현재 중국, 동남아 3국, 인도와는 관광취업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31) 단기상용(C-2) 코드는 현재 운용되지 않음

## 2. 관광목적 방문 관련 비자 종류

앞서 <표 3-3>에 분류된 36가지 비자 종류 중 단기방문과 관련된 비자는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 방문(C-3)인데 여기에서 인바운드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자를 다시 세부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4> 관광 목적 방문 관련 비자

체류자격 (분류코드)	신청대상 또는 활동 범위
비자면제 (B-1)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일반무비자 (B-2-1)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제주무비자(B-2-2)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단체관광 등(C-3-2)	체류기간 경과 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의료관광 (C-3-3)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와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동반가족 및 간병인 단기방문자
일반관광(C-3-9)	C-3-2(단체관광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9.08),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발책, 연구자 정리<sup>32)</sup>

각 비자 체류자격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비자면제(B-1)

우리나라와 상호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 우리나라를 관광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는 비자가 필요 없다.<sup>33)</sup> 우리나라는 2020년 일반여권 기준으로 현재 69개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이 협정 대상국가의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비자가 면제된다.

32) 단기상용(C-2) 코드는 현재 운용되지 않음

33)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② 항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표 3-5〉 우리나라 비자 면제협정 체결국가 현황<sup>34)</sup>

구분	외교여권	관용여권	일반여권	선원수첩
국가 수	110	108	69	21
비고	* 발효 대기 포함 (에티오피아 2019.08.26. 서명)	* 발효 대기 포함 (에티오피아 2019.08.26. 서명)	* 일시정지 포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라이베리아)	

출처: 외교부(2020.2.12.)

## 나. 일반 무비자(B-2-1)

우리나라와 상호 비자면제 협정은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일방적으로 비자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무비자 입국허가 대상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46개의 국가가 지정되어 있다(일반여권 기준, 2019).<sup>35)</sup>

〈표 3-6〉 우리나라 일반 무비자 입국허가 대상 국가

여권종류	외교여권	국가
일반	아시아(10)	브루나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일본, 홍콩, 마카오, 타이완, 쿠웨이트
	북아메리카(2)	미국, 캐나다
	남아메리카(5)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가이아나, 에콰도르
	유럽(11)	모나코, 몬테네그로, 바티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알바니아, 안도라,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세아니아(13)	괌, 피지, 나우루, 팔라우, 키리바시, 마셜제도, 솔로몬군도, 미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통가, 투발루, 호주
	아프리카(5)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스와질란드, 모리셔스, 세이셸, 보츠와나
관용·외교	아시아(2)	인도네시아, 레바논

출처: 유민이·이정우(2019), p. 23

34) 비자면제 협정국가의 상세 리스트는 부록을 참고

35)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② 항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다. 제주 무비자(B-2-2)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였다.<sup>36)</sup> 이 조치에 근거하여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자가 필요 없다.<sup>37)</sup>

#### 다. 단체 관광 등(C-3-2)

체류기간 경과 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에 해당되는 비자로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체 관광비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비자의 핵심은 비자 소지 여행객에 대해서 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사가 과거 기록(해당 여행사 이용 불법 체류자 발생률 등)이 좋으면 개별 비자보다 발급이 용이하다.

#### 라. 의료 관광(C-3-3)

국내에 의료 관광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환자와 환자를 간병하기 위한 동반입국자 대상으로 단기(90일 이하) 방문자에 해당한다.

#### 바. 일반 관광(C-3-9)

C-3-2(단체관광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으로 보통 말하는 ‘개별 관광비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36) 동법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37) 제주도 무비자 입국은 난민신청 목적이나 불법체류 위험이 큰 입국제외 명단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한 Negative 방식임. 현재 입국제외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가나, 카메룬, 소말리아, 감비아, 네팔, 세네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키르키즈(제주도 무비자 입국조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2020. 2 전 국가 모두 잠정 중단)

### 3. 비자의 신청 및 발급

비자 신청 및 발급은 크게 온라인(전자비자)과 오프라인(재외공관)으로 나눌 수 있다.

〈표 3-7〉 우리나라 비자신청 및 발급 경로

구분	1) 전자비자 신청	2)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
신청경로	비자포털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거주국(지역)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신청자	외국인 본인 또는 초청자에 의한 대리 신청	외국인 본인 또는 비자신청 대행업체(지정 여행사)에 의한 대리 신청
신청가능 체류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비자와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하는 동반(F-3) 비자</li> <li>② 특정활동(E-7) 비자와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하는 동반(F-3) 비자 - 신청요건: 고용추천서(일명 GOLD CARD)를 받은 첨단과학기술인력</li> <li>③ <b>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비자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C-3-2)</b></li> <li>④ 전자비자 대리 신청자로 지정된 우수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 초청하는 외국인 환자와 간병인에게 발급하는 <b>의료관광(C-3-3)</b> 또는 치료요양(G-1-10) 비자</li> <li>⑤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은 자에 대한 일반상용(C-3-4) 비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외교(A-1), 공무(A-2) 자격 해당자에 대한 단수 또는 복수비자</li> <li>② 일시취재(C-1), <b>단기방문(C-3)</b>, 단기취업(C-4) 자격 해당자에 대한 <b>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b></li> <li>③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 중 체류자격 일시취재(C-1) 및 <b>단기방문(C-3)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복수비자</b></li> <li>④ 문화예술(D-1) 자격 해당자 중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비자 등 재외공관장에게 발급권한이 위임된 비자</li> </ul>
준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발급신청서(전자신청서)</li> <li>- 여권사본 파일</li> <li>- 사진 파일(충천연색, 3.5cm x 4.5cm)</li> <li>- 수수료(전자결제 가능한 신용카드)</li> <li>-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파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발급신청서(제17호 서식, 또는 비자포털 신청 메뉴 &gt;&gt; 전자서식 작성)</li> <li>- 여권</li> <li>- 사진 (충천연색, 3.5cm x 4.5cm)</li> <li>- 수수료</li> <li>-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발급되는 전자비자의 대부분은 중국관광객 단체비자</li> <li>- 코로나19유행으로 2020.04.06.부터 전자사증 발급은 중단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서류는 재외공관장의 판단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음</li> </ul>

출처: 비자포털(visa.go.kr) 내용 발췌, 연구자 정리

점점 온라인 전자비자(E-VISA)를 확대시키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재외공관을 통한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비자가 우세하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온라인 비자(전자비자)

전자비자는 오프라인에서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과 재외공관의 행정 부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온라인 비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외우수인재와 외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하여 전자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부 체류관리과 산하에 전자비자센터를 개소하였다(2015.4).<sup>38)</sup> 이후 2016년 3월부터 중국 재외공관장이 지정한 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객과 개인 전문 인력에 대한 전자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대부분이 중국 관광객 단체비자이며 개인 대상의 전자비자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2019년 6월부터 동남아 3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단체관광 전자비자가 시작되어 향후 발급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3-8〉 우리나라 전자비자 발급현황

(단위: 명)

구분	2016	2017
단체관광비자	1,914,564	268,632
개인비자	7,708	3,536 <sup>39)</sup>

자료: 법무부

### 나. 오프라인 비자(재외공관 신청)<sup>40)</sup>

재외공관을 통한 비자신청은 비자발급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방한관광객들도 아직까지 재외공관을 통하여 비자를 신청하고 받고 있다. 재외공관의 비자신청 방식과 발급방식에 따라 발전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분류하면 1-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보통 관광비자는 일반적으로 각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재외공관 운영 시스템과 IT의 발전정도에 따라 각 단계가 동시에 시행되기도 한다.

38) 전자비자센터는 전자비자의 처리 외에 국내 체류외국인의 온라인 민원 업무도 담당한다.

39) 중국 한한령으로 단체관광객 감소로 인하여 단체관광 전자비자 발급 감소

40)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 자문

① (1단계) 신청인이 재외공관(영사관,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면담 등 심사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는 방식이다. 이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지금은 특별한 경우(가족사망 등 긴급 시)가 아니면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 신청단계에서 본인 신분확인 및 면담이 가능하여 가장 정확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관광 비자처럼 일률적이고 대량 신청이 있는 경우 시행하기가 부적절하다.

② (2단계)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관에서 지정한 대행업체(보통 현지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교부하는 방식이다. 비자 신청인 증가에 따른 공관 내 민원실의 혼잡도를 해소하고 신청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 방식을 선호한다. 비자업무를 접수/교부와 심사로 이원화하여 행정효율 제고 및 비자 신청인의 공관 방문 필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만 공관에 따라 비자 신청이 증가하게 되면 대행사 관리가 공관의 또 다른 업무 부담으로 되기도 하며 일부 대행사에서 신청인과 영사를 기망하여 비자를 부정발급 받는 사례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③ (3단계) 대행사들의 난립이 공관과 영사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자 대행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 비자신청센터이다. 비자 업무 중 안내, 접수, 교부 업무를 지정센터 한 곳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인데, 인도계 글로벌 회사인 VFS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비자신청이 급증하게 되자 현재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비자신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sup>41)</sup>

④ (4단계) 비자신청센터도 기본적으로 off-line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종이 신청서와 여권 등 첨부 서류가 수반되고 담당영사가 서류를 기본으로 심사하다보니 대량 신청 시 행정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등장한 것이 온라인 비자 발급시스템인 전자비자이다. 가장 진화한 방식의 비자발급 시스템인데 코로나로 촉발된 비대면 신청에도 부합되지만 정밀 심사를 필요로 할 경우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초기

---

41) - 중국 광저우·칭다오·상하이·우한·청두(하나투어 위탁운영)  
- 베트남 하노이·호치민(하나투어 위탁운영)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모두투어 위탁운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무부의 전자비자센터를 통해서 전자비자의 신청과 발급이 가능한데 중국인 단체관광 비자 발급이 활성화 되어 있고 대학교수, 우수기업 초청자 등은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다.

〈표 3-9〉 재외공관 비자신청의 발달 단계별 특징

구분	1단계 (직접 신청)	2단계 (대행사 체제)	3단계 (전문비자 신청센터)	4단계 (전자비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의 재외공관 직접 방문을 통한 발급</li> <li>•가장 초기적 형태</li> <li>•비자 수요가 증가하면 처리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행사를 통한 비자 신청으로 신청과 심사를 분리</li> <li>•공관 지정대행사를 통한 신청</li> <li>•대행사가 증가하면 대행사 관리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비자신청센터를 통하여 비자신청</li> <li>•부실 대행사 우려를 없애고 대행사 관리 필요 없음</li> <li>•우리나라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자발급의 가장 진화 단계로 시간과 비용 감축 가능</li> <li>•정밀 심사 필요한 개인 적용 한계</li> <li>•우리나라는 중국 및 동남아 3국 단체관광객에 주로 적용</li> </ul>

이러한 단계적 구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순차적으로 실행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행이 되기도 하며,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도 한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우리나라의 주요 방한관광시장 국가들은 비자신청센터가 설립되는 3단계로 진입하였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1~2단계에 머물러 있다.

## 제3절 국제관광 수요와 비자완화

### 1. 국제관광 수요요인과 비자

국제관광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하다. 정치 외교 갈등, 경기 위축, 테러 및 질병, 치안 등 다양한 거시적 요인과 방문 국가의 매력도, 여행 편의성 등 관광과 직접 관련된 미시적 요인도 관광수요에 역시 영향을 미친다. 이강욱(2017)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방한관광 수요의 영향요인을 정리하고 비자완화를 제도적 요인의 하나로 분류하였는데 소득, 환율, 상대 물가 등의 경제적 요인과 질병, 테러 등의 재난 요인이 관광수요에 주요 영향을 미치며 비자완화와 같은 (관광)제도적 요인은 부가적 영향 요소를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표 3-10〉 방한관광 수요의 영향요인 및 사례

요인	국가
정치적 요인	• 국제관계(국가 수교), 한·일 간 외교관계(독도 영토, 역사교과서), 한중외교 관계(사드배치), 국내정치 상황, 남북관계 (북한의 핵실험 관계)
경제적 요인	• 경기 상황, 정부의 재정 긴축 및 확대, 외환위기, 오일쇼크, 소득 수준, 환율의 등락, 여행 비용 수준, 유가 수준의 등락
사회문화적 요인	• 인구구조 및 직업구조 변화, 여행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문화 교류의 증대(한류, 스포츠 및 문화행사 교류(월드컵, 올림픽, 국제회의, 한국방문의 해))
(관광)제도적 요인	• 여행자유화(비자완화), 항공협정체결, 외환의 통제 및 조세제도, 법제도 변화(중국 여유법 시행), 여권 및 비자발급 용이성, 휴가 제도
기술적 요인	• 교통수단(고속철도, 항공기 발달), 정보통신 및 인터넷 기술(관광지에 대한 정보획득)
안전적 요인	• 질병 및 위생(사스, 구제역, 메르스 등), 자연 재해(태풍, 쓰나미, 동일본대지진), 전쟁, 테러(911 테러), 쿠데타 발생, 남북관계 악화

출처: 이강욱(2017), 연구자 수정

비자는 국제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정치외교나 경제소득, 안전요인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부차적이지만, 정상 시기(ordinary state)에는 그 영향력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나 단체들에 의한 것인데 이들의 근거는 국제여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비자는 가장 먼저 만나는 장애물(hurdle)이라는 것이다. 즉, 국제관광객이 비자가 요구되는 국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 및 서류 준비, 발급비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국제관광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관광분야에서는 비자완화를 통해 관광산업성장과 국제교류 증가를 지지하여 왔으며 UNWTO(세계관광기구), WTTC(세계여행업협회) 등은 비자 간소화(VISA Facilitation)가 국제교류 증진과 관광산업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sup>42)</sup> 또한 유럽여행위원회(ETC: European Tourism Commission)에서도 유럽의 관광경쟁력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중국과 같은 국가를 대상으로 좀 더 개방적인 비자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sup>43)</sup>

## 2. 비자개선이 방한관광객 증가에 미치는 영향

비자개선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UNWTO와 WTTC에서는 비자개선을 ‘Visa Facilit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Facilitation은 ‘촉진’의 의미로 VISA 발급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빠르게 촉진시킨다는 뜻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자 간소화’ 또는 ‘비자 완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비자개선을 비자간소화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크게 비자면제(무비자)와 비자발급개선(발급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 전자비자 도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비자개선이 방한관광객 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비자면제의 효과와 비자 발급 개선의 효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42) UNWTO(2013), 「Visa Facilitation: Stimulating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 Tourism」 WTTC(2019), 「Visa Facilitation - Enabling Travel & Job Creation Through Secure & Seamless Cross-border Travel」

43) ETC(2015), 「Improving the Visa Regimes of European Nations to Grow Tourism」  
- ETC는 유럽 관광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유럽 32개 국가의 관광청, 관광위원회들이 모여서 구성된 비영리 관광조직임

그 이유는 전술한 것처럼 우선적으로 관광수요 증가에는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비자개선보다는 환율이나 여행국가의 물가, 정치외교 관계, 재난 질병 등이 우선적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비자개선 조치가 행해지는 시기에 다른 요인이 증첩될 경우 각각의 요인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 역시 어렵다. 이러한 이유들로 비자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드물게 실증 분석의 경우 이강욱·김현주(2014)가 방한 중국인 대상 비자완화 조치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 있는데 중국인 대상 우리나라 비자완화 조치에 의한 순 증가효과를 각 사안별(제주 무비자, 개별관광 비자간소화, 청소년 대상 무비자 등)로 회귀 분석하여 평균 약 8.3%의 순 증대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제주 무비자 정책처럼 광범위한 집단에게 비자 자체가 철폐되는 경우는 영향력이 크지만 비자 철폐가 아닌 비자 완화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았다.

〈표 3-11〉 제주 무비자 외국인 현황(2010~2018)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입국자 현황(명)	73,711	153,862	232,932	429,232	646,181	629,725	918,683	357,590	519,946

출처: 공공 데이터포털(DATA.GO.KR)<sup>44)</sup>

결론적으로 비자개선 조치의 효과가 부차적이며 사안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비자개선이 방한관광객을 증가시키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비자개선은 그것이 방문국가에서 시장에 관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 질병이나 경제소득 증가 요인처럼 영향력이 크지만 외부적 요인들은 방문 국가에서 정책적 관여(policy interventions)가 불가능한 사항들이다. 그러나 방문국의 비자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비자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가능한 사안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송출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전쟁이나 질병 같은 요인들에 우리나라가 간섭할 수는 없지만, 관광 시장 친화적인 비자정책을 통해 해외 국가들의 방한을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방한 관광비자 개선을 위한 정책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4) 原 자료: 법무부

## 제4절 우리나라 관광비자 개선현황

---

### 1. 관광비자개선에 대한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앞서 우리나라 비자의 종류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체류자격에 따라 크게 35가지의 비자 종류가 있다. 그리고 35개 중에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자는 비자면제(B-1), 일반 무비자(B-2-1), 제주무비자(B-2-2), 단체관광 등(C-3-2), 의료관광(C-3-3), 일반관광(C-3-9)의 6개이다.

이 6개 중에서 우리가 흔히 비자개선에서 언급하는 단체관광비자와 개별관광비자라고 지칭하는 것이 단체관광(C-3-2), 일반관광(C-3-9)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 “관광비자 개선”이라고 설명할 때 별도의 부가적 설명이 없으면 관광비자 개선은 이 두 가지 비자발급과 주로 관련된 전반적 개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한다.

### 2. 관광비자개선의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방한관광객의 비자발급 편의를 개선하는 것이 관광경쟁력 강화 및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비자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배경으로 관광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자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협력하여 관광비자 개선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다.

또한 비자개선이 포함된 ‘출입국 편의개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루지고 있다(그림 3-3).

[그림 3-3] 제4차 국가관광 전략회의 비자개선 관련의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4차 국가관광 전략회의 보도자료

이러한 정책적 배경 하에 정부는 과거에는 주요 시장인 중국 방문객의 비자개선에 집중하였고 최근에는 시장 다변화 전략에 따라 동남아 국가들의 비자발급 편의에도 노력하고 있다.

### 3. 관광비자개선 주요경과

#### 가. 방한 중국인 관광비자 개선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우리나라도 1998년 중국의 해외여행국가 지정(ADS) 후, 2000년대 중반부터 관광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한 중국인 관광비자 개선에 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는데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05년에 인천공항 경유 유럽방문 중국인 여행객에게 국내 무비자 30일 체류 실시
  - 유럽 방문국 비자 및 항공권 소지 대상자에게 관광통과(B-2) 체류자격과 국내 체류 30일 기간 부여
- 2006년도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지역의 무비자 정책을 실시함
  -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함께 실시하였지만, 제주 직항 노선이 중국 이외에는 없어 실질적인 효과는 제주 중국인 무비자의 효과
- 중국인복수비자 발급확대 적용 및 비자발급 소요기간 단축(2008.04), 의료관광비자 신설(2009.5), 중국인 개별관광객 비자발급 서류 간소화 조치(2009.7) 등 꾸준히 비자 관련 중국관광객 편의개선을 위하여 노력함
- 2010년대에 들어서는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와 발급절차 간소화 추진(2010.7), 2015년부터는 온라인 비자(전자비자)를 발급하고 비자신청센터를 중국에 설치함
- 최근에도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국인관광객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는 10년 복수비자를 도입하였음(2016)
-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중국인 대상 복수비자 신청 가능지역 도시를 확대(2019.6)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1선 도시) + 쑤저우, 샤먼, 톈진, 난징, 항저우, 닝보, 우한, 창사, 칭다오(2선 도시)까지 추가 확대

〈표 3-12〉 방한 중국 관광객 대상 비자개선 경과

시기	개선 내용
2005.6	인천공항 경유 유럽여행 중국인, 국내 무비자 30일 체류 허용
2006.7	제주지역에 한해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2008.3	중국 공안부가 제주도를 자국민의 출국허용 지역으로 인정, 실질적인 제주도 무비자 제도 시행
2008.4	-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입국절차 개선 -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확대(항공사 직원 등) 및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소요기간 단축 (7일 → 3일)
2009.5	의료 관광객을 위한 전용 비자 제도 신설
2009.7	중국인 개별관광객 비자발급 서류 간소화(7종→2종)

시기	개선 내용
2010.7	-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 비자 선택범위 확대 및 발급절차 간소화 - 단체비자 발급이 가능한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2012.7	여수엑스포 기간 중 중국인관광객 대상 도착비자제도 시행
2014.4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 확대 시행
2015.4~9	- 단체관광객 대상 전자비자 발급 (시범시행) - 개별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확대 - 중국 내 비자신청센터 설치
2015.10.	2015.7~2016,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한시적 면제기간 연장
2016.	-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 전문직, 지식인 등 대상 10년 유효 복수비자 신설 - 단체관광객 대상 전자비자 전면시행
2019.	중국 부유층 개별관광 방문 증가를 위해 복수비자(5년) 대상 지역을 1선급 4개 도시에서 2선급 13개 도시로 확대
2020(계획)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 대상 재정능력 입증서류 간소화 및 복수비자 발급 <sup>45)</sup>

자료: 법무부·문체부 보도자료 (2005~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8)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중국 관광객 대상의 비자개선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나. 방한 동남아 국가(인도 포함) 관광비자 개선<sup>46)</sup>

방한 동남아 관광시장은 상대적으로 방한 중국 관광시장에 비하여 중요성이 낮아서 비자 개선도 중국에 비해서는 덜한 편이었다. 일례로 2006년 동남아 국가들도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조치가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동남아 대상의 비자조치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비자 개선은 2008년도에 동남아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 조치가 실질적인 개선 조치의 효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이후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조치된 비자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45) 2019년 12월, 제4차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발표되었으나 코로나19 발발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46) 법무부의 비자 정책에서는 인도는 동남아 지역과 함께 취해지기 때문에 함께 정리함. 신남방국가에도 인도가 포함되어 있음

- 동남아 10개국을 복수비자 발급 국가에 추가(2008.4)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요르단을 복수비자 발급 국가에 추가하고 이들 국가의 관광객 중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방문자, 대한민국 취항 정기 항공사·선사 임직원, 국제적 신용카드 소지자 등에게 복수비자 발급 조치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 동남아 11 개 국가를 대상으로 관광비자 신청서류와 발급절차 간소화, 더블 비자 제도 도입, 복수 비자 확대(2011.3)
  - 관광비자 신청 시 재정능력 입증 서류를 공관별로 1~2종만 제출
  - 환승관광 지원을 위해 6개월 내 2회 사용이 가능한 더블 비자 도입
  - 부유층에 한정했던 복수비자 대상을 중·상류층과 전문직 종사자, 한국 대학 유학 졸업자 등으로 확대(3년 복수비자 발급)
- 동남아 11 개 국가를 대상으로 3년 복수비자 대상 확대 및 5년 유효기간 복수비자 도입(2013.9)
  - 우리나라를 1회 방문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 2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 발급할 수 있게 기준 완화
  - 동남아 국가 국민은 종전에는 5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과거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았던 경력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5년의 복수비자를 발급
- 문재인 정부에서 신 남방국가와의 교류 증진과 방한 중국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시장 다변화 추진으로 동남아의 신남방국가<sup>47)</sup> 비자개선 조치를 취함(2018.11)
  -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가능성이 적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업인과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유효기간 10년 복수비자 발급
  - 베트남 대도시(하노이, 호치민, 다낭) 거주민에게 유효기간 5년 복수비자 발급

47) 신 남방국가: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11개국으로 기존 동남 11개국과 다르지 않음

- 인도에 단체관광비자 발급(2019.3)
  - '5명 이상의 인도국민으로 구성된 기업 인센티브 관광단 또는 수학여행단'에 대하여 주 인도 한국 대사관에서 지정한 '전담여행사'의 신청에 따라 단체비자 발급 가능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비자신청센터 신설(2019.5)
  - 비자수요가 급증하여 비자발급 소요기간이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호치민, 하노이)과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 비자신청과 교부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신설
- 동남아 핵심시장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3개국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허용(2019.6)
  - 정부는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2019.4)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3개국을 대상으로 한 전자비자 허용을 밝히고 2019년 6월에 단체관광객 대상의 전자비자 신청이 가능해짐<sup>48)</sup>
- 동남아 복수비자 대상 확대 및 비자전담인력 증원 추진(2020 계획)<sup>49)</sup>
  - 정부는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2019.12)에서 기존 복수비자 요건을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베트남 대도시 거주자 등에서 개인자산 20 만불 이상 고소득자, 현지 주요기업 과장급 이상 등으로 확대 추진계획 발표
  - 동남아 3개국 비자전담인력(영사)를 확대하여 비자 발급기간 축소로 방한관광객 목적지 대체 현상해소 추진

48) 중국 단체비자와 달리 동남아시아는 국내 전담여행사를 지정하지는 않지만 담당 국내 여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신청단계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원활한 단체 전자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국내 여행사가 미리 법무부에 사전에 등록 필요

49) 코로나19로 계획 실현이 지연되고 있음

〈표 3-13〉 방한 동남아 관광객 대상 비자개선 경과

시기	개선 내용
2008.4	동남아 10개국을 복수비자 발급 국가에 추가 - 일부 계층에게만 복수비자 발급 조치(유효기간 1년)
2011.3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 동남아 11 개 국가를 대상으로 관광비자 신청서류와 발급 절차 간소화, 더블 비자 제도 도입, 복수 비자 확대(유효기간 3년)
2013.9	동남아 11개 국가 대상으로 3년 복수비자 대상 확대 및 5년 유효기간 복수비자 도입
2018.11	- 전문직 대상 유효기간 10년 복수비자 발급 - 베트남 대도시 거주민에게 유효기간 5년 복수비자 발급
2019.3	인도에 단체관광비자 발급 - 주 인도 한국 대사관에서 지정한 '전담여행사'의 신청에 따라 단체비자 발급 가능
2019.5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비자신청센터 신설
2019.6	동남아 핵심시장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3개국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허용
2020 (계획)	동남아 복수비자 대상 확대 및 비자전담인력 증원 추진(2020 계획)

자료: 법무부·문체부 보도자료 (2008~2019)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남아 관광객 대상의 비자 개선은 2010년 이후에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복수 비자의 대상과 유효 기간 확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 제5절 관광비자 개선 제약요인

### 1. 관광비자 완화와 불법체류자

#### 가. 불법 체류자의 개념과 추이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개념이 아니라 외국인 관리정책에서 사용하는 행정 편의상의 정책적 개념이다. 국제기구에서는 ‘불법(illegal)’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형사범을 연상시키고 인권침해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자(Undocumented immigrant)’라는 용어를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편의상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이창원·최서리, 2018).<sup>50)</sup>

이러한 불법 체류자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한 사회에 발생시키는 비용은 불법 체류자의 단속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 비용, 해당 국가 국민들과의 사회적 갈등이나 외국인 범죄 등을 꼽는다(하봉주 외 6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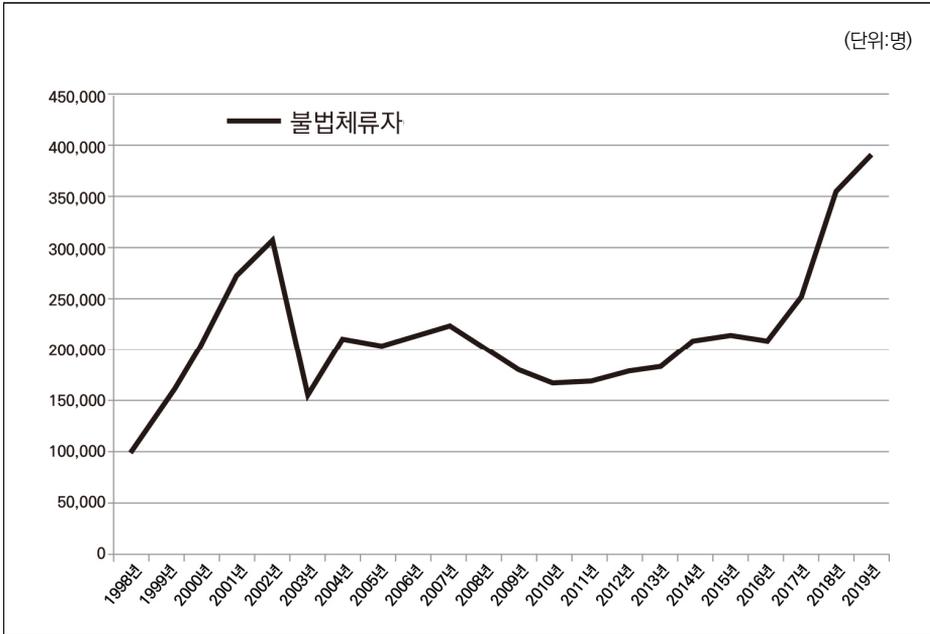
따라서 외국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는 관광비자를 완화시킬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귀국하지 않고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그대로 남아 관광 외의 목적(취업)에 남게 될 것을 걱정하여 비자발급에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관광비자 완화가 국내 불법 체류자의 증가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인지에 대해서 국내 불법 체류자 통계 추이를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 규모는 방한 중국관광이 시작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에서 일시

50)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유형은 체류기간 초과자, 체류자격 외 활동자, 밀입국자의 세 유형이 있지만 체류자격 외 활동자와 밀입국자는 단속되기 전에는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무부 통계에서 다루는 불법 체류자는 체류기간 초과자를 의미하면 본 연구보고서에도 동일하다.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하면서 2002~2003년에는 불법체류자가 감소하였다. 이후 정부에서 연수비자 등 취업이 가능한 다양한 비자 제도 도입 및 불법인원 체류단속을 강화하면서 그 증가 추세가 완만해졌다. 그러나 최근 2016년 이후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그림 3-4).

[그림 3-4] 우리나라 외국인 불법체류자 추이(1998~2019)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그렇다면 2016년부터 갑자기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원인이 관광비자 완화 때문인지 알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자들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나. 최근 불법 체류자 현황

〈표 3-14〉는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불법체류자들의 국적별 현황이다. 2018년 수치를 보면 비자 면제국인 태국의 불법 체류자 수치가 우리나라 전체 불법 체류자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태국인 중에서는 무려 70%가 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4〉 국내 불법체류자 주요 국가별 현황(2016~2019.6)

(단위: 명,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19. 6월
합계	총 체류자	2,049,441	2,180,498	2,367,607	2,416,503
	불법체류자	208,971	251,041	355,126	366,566
	불법체류율	10.2	11.5	15.0	15.2
태국	총 체류자	100,860	153,259	197,764	200,743
	불법체류자	56,099	68,449	138,591	140,363
	불법체류율	55.6	44.7	70.1	69.9
중국	총 체류자	1,016,607	1,018,074	1,070,566	1,079,885
	불법체류자	55,831	62,827	71,070	70,054
	불법체류율	5.5	6.2	6.6	6.5
베트남	총 체류자	149,384	169,738	196,633	221,901
	불법체류자	27,862	31,691	42,056	51,456
	불법체류율	18.7	18.7	21.4	23.2
몽골	총 체류자	35,206	45,744	46,286	47,483
	불법체류자	10,146	12,719	15,919	17,514
	불법체류율	28.8	27.8	34.4	36.9
필리핀	총 체류자	56,980	54,480	60,139	56,784
	불법체류자	11,295	11,954	13,020	13,053
	불법체류율	19.8	21.9	21.6	23.0
카자흐스탄	총 체류자	11,895	22,322	30,717	32,798
	불법체류자	2,914	7,214	11,413	10,393
	불법체류율	24.5	32.3	37.2	31.7
러시아	총 체류자	32,372	44,851	54,064	61,343
	불법체류자	3,849	8,533	10,906	11,222
	불법체류율	11.9	19.0	20.2	18.3
인도네시아	총 체류자	47,606	45,328	47,366	43,193
	불법체류자	7,181	7,626	8,110	8,192
	불법체류율	15.1	16.8	17.1	19.0

자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보도자료(2019.09.29), 연구자 수정<sup>51)</sup>

51) 법무부에서는 국적별 불법체류자 현황은 공식통계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제출한 송기헌 의원의 자료를 사용함

즉, 2016년 이후 국내 불법체류자가 증가한 것은 중국이나 동남아 3국을 대상으로 한 관광비자 완화의 요인보다는 기존 비자면제 대상국가인 태국인들의 불법체류가 증가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sup>52)</sup>

관광비자 완화가 국내 불법 체류자 증가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은 국내 불법 체류자들의 비자 종류 현황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3-15〉 국내 불법 체류자 주요 비자 종류별 현황(2014-2019)<sup>53)</sup>

(단위: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214,168(100)	208,971(100)	251,041(100)	355,126(100)	390,281(100)
<b>비자면제 (B1)</b>	<b>56,307(26.29)</b>	<b>63,319(30.30)</b>	<b>85,196(33.9)</b>	<b>162,083(45.64)</b>	<b>176,244(45.15)</b>
관광통과 (B2)	19,658(9.18)	19,038(9.11)	20,662(8.23)	30,028(8.46)	30,272(7.75)
<b>단기방문 (C3)</b>	<b>47,373(22.12)</b>	<b>46,041(22.03)</b>	<b>56,631(22.5)</b>	<b>67,157(18.91)</b>	<b>81,723(20.93)</b>
일반연수 <sup>54)</sup> (D4)	4,425(2.07)	4,687(2.24)	7,209(2.87)	12,613(3.55)	19,234(4.92)
선원취업 (E10)	5,240(2.45)	5,480(2.62)	5,993(2.39)	6,174(1.74)	6,206(1.59)
非 전문 취업 <sup>55)</sup> (E9)	49,272(23.01)	45,567(21.81)	46,618(18.57)	47,373(13.34)	46,122(11.81)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4-2019)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표 3-15〉에서 보듯이 태국과 같이 사증면제(B1)에 해당하는 비자 종류가 국내 불법 체류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2016년 30% 비중에서 2019년에는 45%의 비중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52) 태국은 1981년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여 90일 동안 비자 없이 국내체류가 가능하다. 최근 3개년 간 태국의 불법 체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2016년 이후 태국 정치상황 불안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및 국내 유흥업(주점, 마사지업)의 수요 증가 및 국내 태국인들의 자체적인 불법 취업 알선 네트워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3) 전체 불법체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1% 미만의 비자종류 현황은 생략하였음

54) 한국어 어학연수처럼 정식 학위 취득 목적의 유학자격이 아닌 연수를 가리킴

55)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4.08 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건설업, 농축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어업 등에 종사. 우리나라와 MOU를 맺은 1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또한 <표 3-16>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관광비자에 해당하는 단기방문(C3)로 입국해서 불법 체류를 하는 비율은 30% 정도의 수준으로 일반연수(D4)와 비슷하다. 그러나 비자면제로 입국하는 이들의 불법 체류율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표 3-16> 단기방문 불법체류 비율과 비자면제 및 타 비자자격 불법체류 비율 비교(2019)

(단위: 명, %)

구분	비자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일반연수(D4)	비전문취업(E9)
해당 비자 입국자수(A)	248,753	204,541	256,696	63,691	276,755
해당 비자 불법 체류자수(B)	176,244	30,272	81,723	19,234	46,122
해당 비자 불법 체류율(B/A)	70.85	14.79	31.83	30.19	16.66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9)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결론적으로 최근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관광비자 완화가 아니라 비자면제국가(태국)의 불법 체류 증가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비자발급 지원 시스템

### 가. 비자 담당 인력 부족

방한 비자 발급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sup>56)</sup>에게 위임할 수 있다.<sup>57)</sup> 따라서 비자발급은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비자 담당 영사의 소관이다. 비자를 심사하는 것은 반드시 법무부에서 파견된 영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수가 많아 비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비자를 담당할 주재관을 두게 된다.<sup>58)</sup>

56) 제2조(정의) 7. “재외공관의 장”이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大使), 공사(公使), 총영사(總領事), 영사(領事)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7) 제8조(사증)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8) 우리나라는 현재 115개국에 대사관(115개), 영사관(46개), 총 166개의 재외공관을 두고 있는데 이 중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비자를 심사할 영사가 부족하여 경쟁국보다 비자처리기간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동남아 전략시장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의 경우 경쟁국 일본보다 비자담당 영사가 1/2~1/3 수준으로서 1인당 처리 건수가 너무 많아 하루에 처리쿼터를 둘 상황으로 알려진다.

〈표 3-17〉 동남아 3개국 비자전담 인력현황 한-일 비교

구분	한국 대사관			일본		
	영사	1인당 건수	발급기간	영사	1인당 건수	발급기간
베트남	2.5명	139,593	8~15일	4명	70,313	5~8일
필리핀	2명	85,993	30일	6명	54,162	5일
인도네시아	2명	77,421	7일	8명	30,346	5일

출처: 제4차 국가관광 확대회의 자료 (2019.12)

법무부와 외교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자담당 인력충원을 요청하였지만 행정부와 기재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력 충원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현재 관광목적의 비자발급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담당 인력 문제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방한관광 시장이 정상화되면 이 사안은 다시 문제가 될 것이다.

#### 다. 비자신청센터 확충<sup>59)</sup>

앞서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단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관의 비자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자신청센터가 필요하다. 중국은 현재 다섯 곳이 설치가 되었고 베트남은 두 곳이 설치되었지만, 인도네시아는 수도인 자카르타 한 곳에 불과하다. 수많은

12개국 17개 재외공관에 비자발급을 위해서 법무부로부터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다. 해당 국가는 중국, 미국(LA 총영사관), 러시아, 일본, 베트남(호치민 총영사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이다.

59)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 자문

은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주요 도시에 분소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 3국 중에 비자발급 기간이 가장 늦게 걸리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는 현재 단기방문사증의 경우 지정여행사 대리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자신청 센터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sup>60)</sup> 따라서 필리핀에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처럼 비자신청센터를 설치하여 비자발급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

#### 다. 전자비자제도의 활용 미흡

우리나라의 전자비자제도는 해외우수인재와 외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활용도가 낮다. 특히 전자비자 발급의 대부분이 중국 단체관광객 비자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자비자를 도입한 목적을 완벽히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전자비자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오프라인, 즉 재외공관에서 비자발급 부담이 경감될 수가 없다. 즉, 온라인 전자비자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재외공관에서의 비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동남아 3국의 단체관광 전자비자제도와 전문인력의 전자비자 제도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

60) 필리핀은 2018년 7월 1일부터 모든 단기방문사증의 신청은 지정여행사(9개)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단,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공무출장자, 긴급히 한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인도적 필요가 있는 경우는 대사관에 직접 신청 가능)

##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비자제도의 운영현황과 관광비자 제도개선 경과와 제약요인, 그리고 관광비자개선과 국제관광 수요의 관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1. 요약

#### 가. 비자의 기능과 변화 추세

비자는 여권과 더불어 외국을 방문하는 데 필수적인 구비 서류이며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예외적인 적용이다. 국제교류 증진과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세계 각국에 무비자 제도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양국 간 비자면제 협정에 의한 것과 협정은 아니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협정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무비자 제도가 있다.

현재 비자발급은 크게 온라인을 통한 전자비자와 재외공관을 통한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며 오프라인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은 1) 직접 개별신청, 2) 여행사를 통한 대행신청, 3) 전문비자신청센터를 통한 발급으로 구분한다. 이론적 단계 구분으로는 최종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비자발급이 최종발달 단계이지만 현실에서는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온라인 전자비자 제도를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중국과 동남아 3국처럼 일부 국가의 단체관광비자와 전문기술인력 유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여행사를 통한 대행신청은 비자 수요가 많은 국가에서 실시하며, 비자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는 비자 신청센터를 두고 운영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행정비용 절감과 안전(코로나 19 등으로 비대면 접촉, 대사관 안전) 문제 등으로 온라인 비자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재외공관을 통한 오프라인에서의 비자 발급이 우세하다. 마찬가지로 개별관광 비자의 경우 해외공관 비자 영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나. 비자완화: 관광시장 확대의 정책관여 수단**

국제관광 수요증가에 비자완화는 송출국의 경제소득 증가나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처럼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증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단계적인 비자개선보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처럼 비자면제의 경우는 방문객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관광시장 확대를 위해 비자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영향력 유무보다 비자 개선이 정책적 관여(Policy Intervention)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더 가치가 있다. 경제, 질병, 테러 같은 거시적 환경 요인은 방문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요소가 없지만 비자완화와 같은 정책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방한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다. 관광비자 개선의 지속적 추진**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중국 시장의 확대에 부응하여 중국 관광비자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제주 무비자 실시, 청소년 수학여행 입국 절차 개선, 개별 복수비자 발급 지역 및 대상 확대 등 비자 발급 절차에 관한 것이 계속하여 개선되어 왔다.

또한 광저우를 비롯하여 중국 다섯 도시에 비자신청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를 이용하여 단체관광 전자비자도 도입을 하여 비자발급 프로세스의 편의 증진에도 노력하였다. 현재 방한중국 비자는 과거와 비교하면 많은 부문에서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방한 동남아 비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시장이 아니다보니 비자 개선에 있어 중국 시장만큼 관심이 크지는 않았다. 최근 들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경제의 발전과 신남방정책, 중국 사드로 인한 시장 다변화 등의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서 동남아 관광비자의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복수 비자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 연장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2. 시사점

### 가. 우리나라 비자 개방도는 높은 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69개 국가와 비자 면제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이외의 46개 국가들에게도 일방적 지정을 통하여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비자를 통한 입국 제약성은 크지 않다.

유민이·이정우(2019)는 각 나라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들의 순위를 비교하는 〈Welcoming Countries Rank〉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입국 개방성을 비교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개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sup>61)</sup> 즉,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나라의 비자 개방성은 높다.

다만, 우리나라의 주요 방한관광시장 중 상위 국가에 속하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에 비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관광업계에서의 비자가 주는 제약성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 나. 관광비자 완화와 불법체류자 증가의 관계

관광비자 완화를 우려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관광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자로 국내에 남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출입국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 증가 추세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 추세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2016년 이후 국내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61) “Welcoming Countries Rank”는 “Henley Passport Index”와 반대의 개념이다. 즉, WCR은 한 국가가 무비자로 받아들이는 나라의 수를 측정하여 그 나라의 비자에 관한 개방성을 순위화 한 것이고, HPI는 그 국가가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의 수를 측정한 것이다. 유민이·이정우(2019)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OECD 국가들은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여행 자유도(HPI)는 높지만, 반대로 저개발 국가들에 대하여 대부분 비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비자 개방성(WCR)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여행 자유도와 비자 개방성이 모두 높게 측정되었다.

관광비자 완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비자 면제국가인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가 증가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표 3-15〉 참고). 그러나 태국의 경우 최근 비자 면제를 실시하여 갑자기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아니었고 태국 경기침체에 따라 우리나라에 불법취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따라서 관광비자 완화가 국내 불법 체류자 증가와 정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우리나라 불법체류자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송출 국가의 경제상황 악화와 국내 불법 취업 수요 증가가 더 큰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다. 해외공관 비자 전담인력 보강 필요**

현재 비자발급에 있어 불편이 더 큰 지역은 중국보다 동남아이며, 동남아 지역에서 비자개선의 가장 큰 문제는 비자 전담인력의 부족이다. 비자신청센터 설치에 따른 편의는 증가할 수 있으나 비자를 심사해야 할 영사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자발급의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비자 전담인력의 충원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상황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전자 비자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오프라인 재외공관의 비자 담당 행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방한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연구

제4장

## 주요 경쟁국가 비자개선 사례



# 제1절 일본

## 1. 동남아시아 관광객 대상 비자개선

### 가. 비자개선 추진배경

일본은 2012년도 중국과 분쟁관계에 있던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국유화 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중국은 일본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제 제재를 단행하였는데, 중국 내 일본 제품 불매 및 반일 시위와 함께 일본행 중국인 단체관광객도 제한을 하였다.<sup>62)</sup> 일본은 이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비중을 줄이기 위하여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실시하고 관광시장도 다변화를 위하여 동남아 시장 발굴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

### 나. 비자개선 내용

아베정부의 이러한 동남아시아 비자완화는 관광시장 다변화 외의 목적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의 일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정책의 일환으로서 아세안 포용정책과도 그 목적이 연결되어 있다(오현재, 2015). 즉 비자완화를 통하여 일본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동남아시아에 홍보함으로써 일본의 외교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동남아 시장 발굴을 위해서 2013년도 동남아시아 방일 100만명 플랜을 시작하고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비자 요건을 완화하였다. 태국,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비자 면제를 실시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와 캄보디아까지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신용석·김덕기·오유라, 2017). <표 4-1>은 일본의 동남아 국가 비자개선 조치를 정리한 것이다.

62) 조선일보. 2017.03.04. 中 보복에 車판매 반토막 났던 日, 냉정한 대응 1년후 완전 회복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4/2017030400118.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4/2017030400118.html)

〈표 4-1〉 일본의 동남아 국가 대상 비자개선조치

시기	국가명	조치내용
2013년 7월	태국	전자여권 소지자 비자면제(15일)
2013년 7월	말레이시아	전자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90일)
2013년 7월	인도네시아	복수 비자의 체재기간 연장(30일·3년)
2013년 7월	베트남, 필리핀	복수비자 도입(15일·3년)
2013년 11월	캄보디아, 라오스	복수비자 도입(15일·3년)
2014년 1월	미얀마	복수비자 도입(15일·3년)
2014년 9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복수비자발급요건 대폭완화(30일·3년)
2014년 11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지정여행회사 단체여행참가자 신청절차 간소화(15일)
2014년 12월	인도네시아	전자여권 사전등록으로 비자면제(15일·3년)
2016년 2월	베트남	복수비자발급요건 완화(90일·10년)
2018년 8월	필리핀	상용목적, 문화인·지식인복수비자 완화(90일·10년)
2019년 8월	라오스	상용목적, 문화인·지식인 복수비자 완화(90일, 5년)

자료: 일본 외무성

## 2 중국관광객 대상 비자개선

### 가. 비자개선 추진배경

중국과의 영토분쟁으로 일본은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는 다변화 전략을 추구하기는 했지만, 결코 중국 시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아베정부는 여전히 중국시장을 주요 시장(1부시장)으로 두고 중국인 관광객 대상 비자완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중국인 관광객의 비자완화는 근본적으로 동남아 관광객 비자완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아베정부가 2013년에 발표한 관광입국론에 근거한 것으로 2011년 동 일본 대지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일본 관광산업의 부흥과 일본 관광대국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

### 나. 비자개선 내용

2015년 이후 일본 정부는 중국의 개별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개별 비자완화와 함께 고소득층과 전문직 등에 대한 복수비자 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였다.

〈표 4-2〉 일본의 중국 대상 비자개선조치

시기	조치내용
2015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목적, 문화/지식인 복수비자 완화(90일·5년)</li> <li>• 오키나와/도호쿠 3현 복수비자 완화(30일·3년)</li> <li>• 고소득층용 복수비자 도입(90일·5년)</li> </ul>
2016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목적, 문화/지식인 복수비자 완화(90일·10년)</li> <li>• 일부대학생·졸업생 등의 개인관광 단수비자 절차간소화(30일)</li> </ul>
2017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복수비자 도입(방문지요건이 없는 새로운 복수비자 도입)</li> <li>• 상당한 고소득자 대상 복수비자 완화(첫 도항목적은 관광에 한정하지 않음. 항공권, 숙박 등의 개별준비가 가능하도록 함)</li> <li>• 도호쿠 6현 복수비자(아오모리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추가. 3년 이내 방일이력요건 폐지)</li> <li>• 중국국외 거주자에 대한 복수비자 도입(상당한 고소득자(90일·5년), 충분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30일·3년))</li> <li>• 신용카드(골드) 소지자의 단수비자 신청절차 간소화</li> </ul>
2019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대학생, 졸업생 등의 개인관광 단수비자 신청절차 간소화의 대상학교 확대(30일) (75개교→1243개교)</li> <li>• 충분한 경제력을 지닌 자 대상 복수비자의 발급대상자 확대(30일, 3년) (최근 3년, 2회 이상 방일한 경우에 대해, 경제력증명서 제출 면제)</li> </ul>

자료: 일본 외무성

### 3. 평가

#### 가. 성과: 방일관광객 증가

일본의 비자개선조치로 일본을 찾는 관광객은 증가하였다. 동남아 3국 모두 지난 10여 년간 8~10여배의 성장을 이룩하였고 중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13년에는 센카쿠 열도 분쟁의 여파로 전년 대비 역성장을 하였지만,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성장을 기록하였다.

〈표 4-3〉 주요국가 방일 관광객 추이(2011~2019)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국	1,043,246	1,425,100	1,314,437	2,409,158	4,993,689	6,373,564	7,355,818	8,380,034	9,594,394
베트남	41,048	55,156	84,469	124,266	185,395	233,763	308,898	389,004	495,051
인도 네시아	61,911	101,460	136,797	158,739	205,083	271,014	352,330	396,852	412,779
필리핀	63,099	85,037	108,351	184,204	268,361	347,861	424,121	503,976	613,114
인도	59,354	68,914	75,095	87,967	103,084	122,939	134,371	154,029	175,8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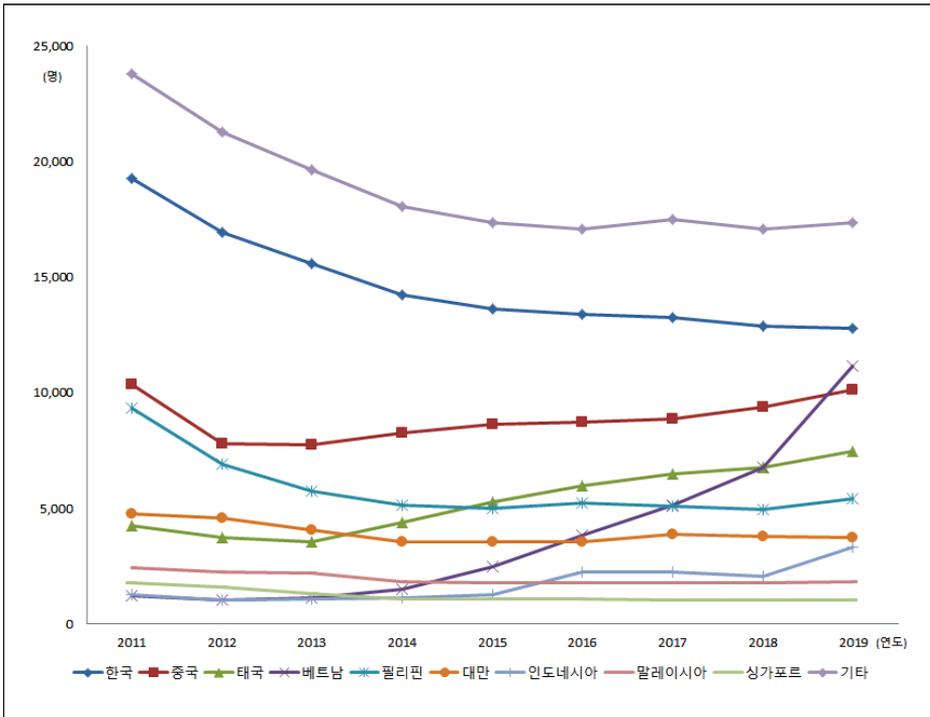
출처: Japan Tourism Bureau (<https://www.tourism.jp/>)

다만, 2013년 이후 일본을 찾는 방일관광객의 이러한 급성장은 단순히 비자정책에만 근거한 것은 아니며 엔화 약세, 일본의 적극적인 프로모션과 캠페인 등 일본 환율과 함께 수용 태세 개선에도 원인이 있다(조아라, 2015).

#### 나. 부작용: 불법체류자 증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찾는 동남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일본의 동남아 출신 불법체류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증가 추세에 있다. 다만 일본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도 관광객 뿐 아니라 연수생,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도 다수가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림 4-1] 일본 불법체류자 추이(2011~2019)



출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2019 출입국재류관리 통계 자료

#### 다. 한국 비자정책과 비교

일본의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대상으로 한 비자정책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앞선 점은 없다. 시기적 차이는 동남아시아의 경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섰지만, 중국의 경우는 오히려 한국이 더 일찍 시작하였고 지속성 측면에서도 앞선다.

또한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태국,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비자 면제조치<sup>63)</sup>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80년대 초반에 두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면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sup>64)</sup> 일본보다 거의 20년을 앞서 양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면제를 행한 것인데 198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중진국에 속하던 시절이어서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격차가 크지 않아서 가능했던 것이다.

63) 2013년 7월

64) 말레이시아는 1983년, 태국은 1981년에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발효되었다.

또한 일본의 인도네시아 비자면제도 완전한 비자면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소재 일본대사관에 전자여권을 사전 등록한 경우만 가능한 경우로서 다른 국가 대상의 비자면제와는 다르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비자제도에 있어서 뒤진 면은 완화조치 측면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자담당 인력의 부족이다. 이것이 비자발급 기간이 일본에 있어 뒤처지는 이유이다.

## 제2절 대만<sup>65)</sup>

### 1. 비자개선 추진배경: (관광)신남향정책

중국은 대만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주요한 고객이었다. 그러나 2016년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적 성향을 가진 차이잉윈이 총통으로 취임하면서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자 중국은 일본에게 했던 것처럼 대만과의 교역과 함께 대만으로 가는 중국 단체 관광객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대만은 이에 2016.9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고 시장다변화를 위해 차이잉윈 총통의 '신남향정책'을 공식발표하였다. '新남향정책'은 대만 차이잉윈 現 총통의 2016년 대선공약으로 중국에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남아시아, 대양주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유사하다.

대만 정부의 이러한 '신남향정책'에 맞춰서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대만 교통부 관광국은 <관광신남향정책계획>을 수립하여 신남향국가의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게 된다. 대만 '신남향정책'의 주요대상국(source market)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등 ASEAN 10개국과 인도 및 부탄 총 12개국인데 대만 관광국은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활동과 함께 입국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비자제도 간소화 추진 계획을 2016년에 발표하였다. 대만 관광국이 발표한 비자제도 간소화 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대만을 방문할 때 비자가 필요없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외에 태국, 브루나이를 면제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10년 이내에 전향적으로 비자완화 조치를 취할 것을 발표하였다(유지윤·윤주, 2019).

65) 대만의 비자개선 내용은 서론의 사례대상 선정이유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춘다.

## 2. 비자개선 내용<sup>66)</sup>

2016년에 대만 관광국이 발표한 <관광신남향정책계획>에 따라 관광국은 대만 외 교부와 협력하여 신남향국가들의 관광비자 완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4> 대만의 동남아 주요국가 비자개선조치

국가	조치내용
베트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래 2개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온라인으로 개별 비자 면제 신청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영국 또는 EU 생겐조약 등 선진국 영주권, 유효기간 10년 이내 거류 중 또는 비자 소지자</li> <li>과거 10년 이내 대만 비자 소지하고, 비정상적인 기록이 없어야 함.</li> </ol>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내무부 이민국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3 개월, 체류 기간은 14 일인 복수 입국 허가증을 발급 받게 됨             </li> <li>2~5년 장기유효 개별 복수비자 중산층 엘리트를 대상으로 장기유효복수비자를 발급함</li> <li>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송출 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li> </ol>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동일
필리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관광객 비자면제 14일(2020.07.31.까지 시범실시)</li> <li>단체관광객 전자비자(송출 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li> </ol>
태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관광객 비자면제 14일(2020.07.31.까지 시범실시)</li> <li>단체관광객 전자비자(송출 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li> </ol>
인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관광객에 대한 비지원화 조치 없음</li> <li>단체관광객 전자비자(송출 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li> </ol>

자료: 대만 외교부(2019~10) 기준

위의 <표 4-4>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만은 필리핀과 태국을 대상으로 2020년 비자면제를 실시하였지만 2020년 7월말까지 시범실시를 한 것이다.<sup>67)</sup>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온라인으로 2주간 비자면제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선진국 영주권이나 방문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신청은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 관광객 전자비자 신청과 유사하다.

66) 한국관광공사 대만 타이베이 지사 자문

67) 대만은 비자 면제를 코로나 유행으로 2020년 초에 중지하였음

### 3. 평가

#### 가. 성과: 동남아시아 관광객 증가

중국과의 갈등으로 대만을 찾는 중국 단체관광객이 감소하자 대만 관광국이 2016년부터 추진한 비자완화 정책으로 대만을 찾는 주요 동남아시아 관광객은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대만 방문 중국인 관광객은 271만 명으로 전년 대비 0.5% 정체였지만, 비(非)중국인 관광객은 914만 명으로 9% 증가하였고 신남항국가 총 18개국의 방문인원은 약 277만 명으로 대만방문 전체 관광객의 약 23%를 차지하며 약 6% 성장을 기록하였다.

〈표 4-5〉 주요국가 대만 관광객 추이(2011~2019)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국	1,784,185	2,586,428	1,874,702	3,987,152	4,184,102	3,511,734	2,732,549	2,695,615	2,714,065
베트남	95,921	87,886	118,391	135,173	143,930	194,323	380,833	490,699	404,570
필리핀	102,417	105,525	101,594	136,998	139,758	171,816	290,303	420,302	510,966
인도네시아	161,685	169,136	176,919	186,558	181,734	192,053	193,813	215,891	234,968
인도	28,048	27,659	28,321	34,332	36,833	38,331	40,846	45,243	48,573

출처: 대만 교통부 관광국 (<https://stat.taiwan.net.tw/>)

그러나 신남항국가의 성장이 전년대비 6%이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의 성장은 전통적인 주요 시장인 일본(10% 증가), 한국(20% 증가)에 비해 미미하였기 때문에 신남항정책의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비판도 존재한다.<sup>68)</sup>

#### 나. 부작용: 불법체류자 증가<sup>69)</sup>

대만도 역시 비자완화에 따른 불법체류자 증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만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비자 유효기관 경과 후 불법체류자 1,946명이며, 이 중 베트남 국적이 925명으로 가장 많아 절반에 해당한다. 2018년에는 베트남 단체

68) 대만 경제일보 2020.01.06. (<https://money.udn.com/money/story/5612/4270341>)

69) 한국관광공사 대만 타이베이 지사 자문

관광객 150 여명이 단체로 이탈하여 공장에서 불법으로 일한 적도 있어 비자완화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동남아 불법 체류자 등이 대만 매춘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중 태국 출신이 가장 많고 약 70%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고 있어 태국의 시범 비자 면제가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이에 대만 관광국은 최초 1개월이던 태국의 무비자 자유여행(체류기간)을 2주로 축소하는 등 관리조치를 취하였으며 그래도 비자완화가 손실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말하였으나 관광업계의 이익은 될 수 있지만 사회적 비용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되고 있다.

#### 다. 한국 비자정책과 비교

대만의 동남아 대상 비자정책은 한국의 비자완화 정책추진 배경이 매우 유사하다. 둘 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류와 경제적 협력 증대를 추진하고 중국에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였다.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대만 비자완화 정책의 특징은 개별비자 면제의 시범 실시와 온라인 비자면제 실시가 특징이다. 태국과 필리핀을 대상으로 개별비자 면제를 시범실시한 점은 파격적이지만 불법체류자 증가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비자면제 실시는 해당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단체관광 전자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나라의 동남아 3국 단체관광 전자비자 신청제도와 대동소이하다.

대만의 비자완화 정책은 2020년 7월 말까지 시범실시 후 그 존속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이 많은데, 코로나19로 2020년 초에 조기 중단된 것들이 많아 향후 코로나 종식 후 그 변화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3절 태국<sup>70)</sup>

### 1. 비자개선 추진배경

태국은 관광산업이 전체 GDP의 18~20%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 국가경제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특히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은 1위 시장으로서 연간 900~1,0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중요도가 태국 전체 인바운드 관광시장에서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태국의 경제가 2015년부터 침체되면서 활력을 잃자 태국 관광스포츠부(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Thailand)는 태국 상위시장에서 태국을 방문하는데 비자가 필요한 중국과 인도의 비자를 면제하여 양 국가의 재방문율을 높이자는 비자 면제안을 내각에 제시하였다.

〈표 4-6〉 태국 주요 방문국가 추이(2015~2018)

(단위: 명)

방문객 수					
순위	국가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	중국	7,936,799	8,757,646	9,806,260	10,535,241
2	말레이시아	3,418,854	3,494,890	3,494,488	4,020,526
3	대한민국	1,372,209	1,463,842	1,709,067	1,796,426
4	일본	1,381,703	1,493,510	1,544,442	1,656,101
5	라오스	1,220,528	1,338,020	1,682,087	1,664,630
6	인도	1,069,422	1,194,508	1,415,197	1,598,346

출처: 태국 관광청 통계사이트(<https://intelligencecenter.tat.or.th/>)

70) 대만의 비자개선 내용은 서론의 사례대상 선정이유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국에 초점을 맞춘다.

## 2. 비자개선 추진 경과

태국 관광스포츠부는 2019년 8월에, 2019년 11월 1일부터 중국과 인도를 상대로 1년간 비자 면제를 실시하여 30일간 태국 무비자 방문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중국과 인도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태국을 방문하는 인도의 비중은 6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비자 면제를 추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태국 관광스포츠부의 입장은 비자를 면제할 경우 비자 수수료<sup>71)</sup>는 손실이 생길 수 있지만, 중국인들의 재방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는 태국 관광 산업에 득이 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스포츠부의 주장에 대해서 실제 비자를 담당하는 태국 외교부가 비자를 면제할 경우 태국의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내무부도 갑자기 중국 관광객이 폭증할 경우 대중교통 등 태국의 기반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명하여 결국 비자 면제안은 내각 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다음 해인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태국 관광스포츠부는 “중국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한다.”는 전제 하에 중국인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sup>72)</sup>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여전히 태국 관광부의 독자적 생각으로 외교부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 코로나 장기화에 중국 비자 면제안은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71) 중국은 현재 수수료 2000바트, 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 제출하면 태국 도착비자(Landing Visa) 발급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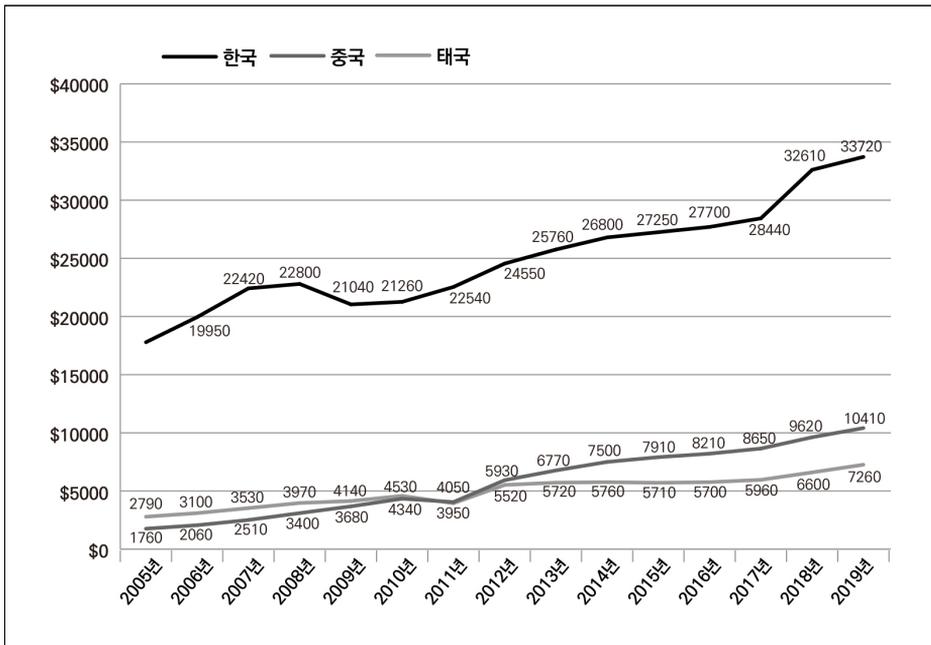
72) 태국 관광스포츠부 피파트 랏차깃쁘라칸 장관(Tourism and Sports Minister: Phiphat Ratchakitprakarn)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2월 태국 방문 중국관광객이 전년대비 90% 감소하였고, 태국관광산업에 미칠 타격이 심각하여, 중국이 3월말까지 코로나 19를 통제하고, 중국인 해외여행 금지를 해제할 경우, 4월 태국 쑹끄란 축제를 목표로 중국관광객의 비자면제 요청을 내각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Bangkok Post, 2019.2.14. “Officials mull visa-free entry for China market”)

### 3. 태국의 중국비자면제 추진계획 평가

앞선 일본이나 대만과 달리 태국의 중국비자개선은 실제 추진되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성과에 대한 것이 아닌 계획에 대한 간략한 평가로 같음한다.

태국 관광스포츠부가 중국 비자 면제를 추진하려는 것은 대담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단계적인 비자완화가 아니라 비자면제는 그 파급효과가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태국 관광스포츠부가 이렇게 파격적인 비자 면제안을 제시한 기본 배경에는 태국과 중국의 경제격차가 축소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림 4-2] 태국, 중국, 한국의 1인당 소득 추이 비교(2005-2019)



자료: World Bank Data. (Current US dollar) - <https://data.worldbank.org/> 연구자 정리

[그림 4-2]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현재 중국의 경제소득 수준은 태국을 추월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태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비자면제를 취하여도 불법 체류자가 증가할 위험이 한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경우는 여전히 소득 격차가 3배 이상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태국처럼 전면적인 비자 면제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에서는 일본, 대만, 태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들의 비자개선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1. 요약

〈표 4-7〉 한국, 일본, 대만, 태국의 비자개선 주요현황

구분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li> <li>-중국 시장 의존도 악화</li> <li>•중국)</li> <li>-사드 충격 완화 위해 중국 개별관광객 시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li> <li>-중국 시장 의존도 악화</li> <li>•중국)</li> <li>-센카쿠 분쟁 이후 중국 개별관광객 시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li> <li>-양안관계 악화로 신남향정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국 경기침체로 중국시장 점프를 통한 관광산업 부흥 노림</li> </ul>
주요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li> <li>-개별 복수비자 완화</li> <li>-단체관광 전자비자 도입</li> <li>-비자신청센터설치 (베트남, 인도네시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li> <li>-개별 복수비자 완화</li> <li>-단체관광비자 간소화</li> <li>-비자신청센터 (태국, 인도네시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트남, 인도네시아) 온라인 조건부 비자 면제</li> <li>•태국, 필리핀) 비자면제 시범실시</li> <li>•단체관광 온라인 비자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없음 (아세안 국가 비자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li> <li>-개별 복수비자 완화</li> <li>-비자신청센터 지역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li> <li>-개별복수비자 완화</li> <li>-비자신청 수수료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자면제 추진했으나 외교부 반대와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li> </ul>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동남아 3국 관광객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동남아 관광객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 관광객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없음</li> </ul>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 불법체류자 증가(태국, 베트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 불법체류자 증가(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 불법체류자 증가(베트남, 태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없음</li> </ul>

## 2. 시사점

### 가. 중국 외교갈등과 동남아 비자정책 나비효과

사례 국가인 일본과 대만 모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 문제가 계기가 되어 동남아 관광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이 주변국들과 별리는 외교 갈등이 한국, 일본, 대만 해당 국가들의 동남아 비자정책의 완화를 가지고 오는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일본-대만-한국의 順으로 시작되었지만, 해당 국가들의 인바운드 관광시장에서 여전히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는 한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완화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한국, 일본, 대만 모두 비자완화에 따른 불법체류자 증가라는 부작용 또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비자완화 정책에 대한 국민정서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나. 비자완화 조치와 국가 간 경제격차

일본과 대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국가는 최근에서야 태국에 대하여 비자 면제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대만은 그것도 완전한 비자면제가 아닌 시범실시 조치였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거의 20년을 앞서 태국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협정을 체결하였다. 물론 당시 1983년은 5공화국 시절로 남북 대치 관계에 있어 동남아시아의 맹주 역할을 하는 태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 외교적 고려도 있겠지만, 한국-태국의 경제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 당연히 바탕이 되었다.

최근 태국 스포츠관광부가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면적 비자 면제를 시도한 것도 중국의 경제성장과 태국의 경제 침체로 중국-태국 양국 간의 경제격차가 역전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다. 비자개선: 강한 정책 추진력과 부처 간 협력 필요

실제 비자 개선 내용에 있어서 일본이나 대만이 한국보다 앞선 내용은 거의 없다. 일본의 인도네시아 비자면제 조치 정도가 한국보다 전향적인 조치일 뿐이며 나머지 사항들은 이미 한국도 실시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동남아 대상 비자완화의 외부적 요인으로는 중국과의 외교 갈등으로 인한 중국 의존도 완화라는 환경적 변화가 작용하였다는 점도 우리나라도 사드 갈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이러한 비자완화를 통하여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려는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총리실(일본)과 총통부(대만)로부터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이나 대만처럼 최고 정책결정부서로부터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는 한 비자개선은 추진력을 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비자를 담당하는 부처는 비자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에 관광부처처럼 적극성을 띠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문체부가 국가관광 전략회의라는 기제를 적극 활용하여 부처 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방한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연구

제5장

## 이해관계자 비자의견 조사



## 제1절 법무부 의견조사

---

본 장의 제 1절에서는 비자와 관련된 법무부의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비자는 정부에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이므로 비자제도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관광비자와 관련이 있는 정부 부처는 법무부, 외교부, 문체부인데 실제적으로 법무부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 1. 법무부의 권한과 역할

비자정책에 있어 법무부의 영향력은 매우 큰 데 비자발급의 권한이 법무부(장관)에 있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방문객에게 발급할 비자의 종류와 기간 등에 대해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 절차에 대해서도 역시 규정할 수 있어 그 영향력의 범위도 매우 넓다. 예를 들어 관광 복수 비자 발급의 대상 계층 및 발급되는 비자의 유효기간 등 정책을 정하는 것이 법무부의 권한이며 역할이다.

법무부는 비자정책 이외에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 및 등록도 담당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이 법무부가 비자완화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즉 법무부는 비자개선을 통하여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 개선도 하면서 동시에 국내에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비자개선에 적극적이기는 쉽지 않다.

## 2. 조사 결과

법무부에서 비자정책 및 비자발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다.<sup>73)</sup> 좀 더 구체적으로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산하의 체류관리과에서 비자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비자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비자 종류에 따라서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으며 본 조사에서는 비자정책, 단기비자, 전자비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전화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sup>74)</sup>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관광관련 비자정책

-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관련 비자정책은 개방적인 것으로 평가
  -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법무부도 전향적으로 최근에 변화
  - 개별비자의 경우 과거에는 그 조건이 까다로운 면이 있었지만 많이 개선되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음
  - 현재의 기준(hurdle)을 더 낮춰서 여행객을 더 받아들이는 것은 별 다른 의미가 없을 것임
  - 비자정책의 추가적 완화보다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 나. 비자발급 지원시스템

- 동남아 비자 담당인력 부족
  - 동남아 3국의 비자 담당인력(영사) 문제는 법무부도 공감하고 있으며 충원을 요청한 상태임

7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제13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③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9. 사증정책 및 사증발급에 관한 사항

74) 대면인터뷰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비대면 전화면담으로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의 신상은 익명으로 처리함

- 다만 영사는 재외공관 소속으로 절차상으로는 외교부가 요청하는 것이며 행안부와 기재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법무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지속적 노력이 필요
- 작년 하반기에 동남아 비자신청이 폭증한 것은 한국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기 위하여 3개월(2019.10-12)간 비자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이유도 있음
- 비자 담당 영사들이 관광 외의 비자 심사 뿐 아니라 법무 업무도 하기 때문에 관광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것도 감안<sup>75)</sup>

#### ■ 전자비자 시스템

- 현재 전자비자센터는 단체관광비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비자를 심사하기보다는 구비서류의 준비 여부, 서류 위변조 등의 가부 형태만 판단하고 있음
- 개별비자도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환경이 뛰어나지 않고 온라인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향
- 중장기적으로는 재외공관의 비자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자비자로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함
- 비자 대상 국가는 전자비자를 활용하고, 무비자 대상 국가는 ETA(전자여행 허가증)를 활용하는 방안

### 다. 기타

#### ■ 비자 관련 통계 공표와 비자협정

- 국가별 비자 발급현황은 양국 간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어 외부 공개 어려움
- 특정 국가의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더라도 일방적 무비자가 아닌 협정에 의한 비자면제인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협정을 파기해야하므로 쉽지 않으며 또한 정치, 외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함

75)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 2명의 비자영사가 있으나 그 중 한명은 필리핀 내 보호소에 수감한 우리국민 보호업무도 겸하고 있음(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 인터뷰)

#### ■ 코로나19 영향

- 코로나19로 향후 비자정책 전반에 있어 변화가 예상됨
- 무비자 정책에 있어 상대국가의 방역관리 능력, 비자 신청 시 건강상태 체크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법무부 아니라 관련 부처 전체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

### 3. 외교부와 문체부의 역할

외교부와 문체부는 비자에 관한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부처 담당자에 대한 의견조사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으며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과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 가. 외교부-비자제도에서 권한과 역할

재외동포영사 기획관실에서 담당한다.<sup>76)</sup> 구체적으로는 재외동포영사실 영사서비스과에서 주로 비자와 관련된 업무(비자면제, 간소화 협정, 재외공관 비자심사 보조 행정직원, 비자거점공관, 비자 신청센터 등)를 담당한다. 법무부가 비자와 관련된 정책방향과 기준을 설정한다면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게 되는 부서는 외교부다.

실제로 비자발급과 심사가 실행되는 곳은 재외공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부속서류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은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 그리고 비자담당 영사는 재외공관장의 지시를 받고 부족한 비자 담당영사의 충원 신청도 재외공관장이 외교부를 통하여 신청한다. 비자신청센터의 관리도 해당 지역 공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비자 실무적인 측면에서 외교부의 역할도 다양하다.

76)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제24조의2(재외동포영사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외국인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 나. 문체부의 비자제도에서 권한과 역할

문체부는 관광정책국의 업무 분장에서 비자 “협력”에 관한 사항<sup>77)</sup>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무부나 외교부와는 다르게 비자에 관한 법적 권한은 없다. 문체부(국제관광과)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자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법무부, 외교부와 협력하여 비자개선을 추구하는 역할이다.

비자 업무가 아니라 비자 “협력”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 비자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의 관리 등 여행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특히 과거 중국 관광객의 방한 단체여행이 실시될 때 한국과 중국 사이 전담여행사 제도를 마련할 때는 문체부가 법무부, 외교부와 협력하여 중국 여유국과 비망록을 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sup>78)</sup>

77) 제18조(관광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2.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항공, 교통, **비자협력**에 관한 사항

7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과 중국 여유국 간 1998년 “중국국민의 자국(한국)관광협력에 대한 비망록”을 체결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를 도입하고 방한관광 자유화 시범지역으로 베이징, 상해, 천진, 중경, 산둥, 강소성, 광둥성, 안휘성, 섬서성 등 9개 지역을 지정하였음. 이후 2002년 2차 비망록 체결을 통하여 방한관광 자유화 지역이 기존 9개 성, 시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었음

## 제2절 관광공사 및 여행업계 의견조사

본 장의 제2절에서는 방한관광객 유치를 직접 시행하는 한국관광공사와 여행업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관광공사는 조사대상국가인 중국, 동남아 3개국, 인도의 현지 지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여행업은 문체부, 서울시 등을 통한 업계 의견 수렴 내용을 참조하고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재확인하였다. 앞서 정부부처의 의견 조사는 권한과 역할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번 절의 공사와 여행업계의 조사는 현장에서 체험하는 비자관련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초점을 두었다.

다음은 중국과 동남아 3국, 인도의 비자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각각 정리한 것이다.

### 1. 중국

중국이 우리나라 방한관광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광활한 중국 상황 때문에 관광공사는 베이징(칭다오), 상하이, 광저우, 선양, 청두, 시안, 우한에 지사를 두고 있다.<sup>79)</sup> 지역별 특성이 다르고 경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자와 관련된 사항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다음은 관광공사 중국 지사와 여행사들을 통해 파악한 중국 현지에서의 비자 관련 현황과 건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sup>80)</sup>

79) 관광공사가 중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지역은 외교부의 중국 내 재외공관을 두고 있는 지역과 일치한다.

80) 관광공사 중국팀을 통하여 공사 중국 각 지사로부터 접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로 정리하였으며 기타 여행업계의 내용은 문체부와 서울시(서울관광재단)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추가함

〈표 5-1〉 중국 방한관광비자 관련 의견(관광공사 중국 지사 및 여행업계)

지역	현황 및 문제점	건의사항(현지 여행사 의견 포함)
베이징 (칭다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4년제 대학교 재학생 대상 개별 비자서류 간소화제도가 시행중이나, 개별비자 수수료가 경쟁국인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며, 여행경비의 5~10%를 차지하는 수수료 비용 부담</li> <li>또한, 베이징/상하이를 제외한, 타 공관 및 여행사에서는 학과 주임 서명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어 실질적인 효과 제한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여행 수준이 높고 소비 잠재력이 높은 중국4년제 대학생 대상 개별관광 비자에 한하여 '단계적 무사증 개방' 추진</li> </ul>
상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화동지역, 특히 상하이 소비자와 여행사들에게 방한비자는 일본보다 비교적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로 인식돼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중국인들이 가장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는 동남아 국가로 인식</li> </ul> </li> <li>비자 신청자료 관련 추가 간소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신청서 페이지 과다 (5페이지)</li> <li>- 신분증 원본 제출로 생활에 불편 초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동남아 국가 벤치마킹하여 간소화 실시</li> <li>코로나 사태로 무효화 된 비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 및 기한 연장 적용 방안 검토 필요</li> </ul>
광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출서류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관광(C-3-9)사증 신청시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교육부학력증서 추가증명제출 필요</li> <li>- 신분증 복사본을 대체하여 신분증 사진촬영본 제출 금지(유럽국가 비자 등 타국가의 경우 사진촬영본 제출 허용)</li> </ul> </li> <li>(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한개별관광비자 수수료는 400위안[영사관 발급수수료 280위안 + 비자센터(여행사) 대행수수료 12위안]으로 타국가에 비해 높은 편(일본 200위안, 태국 230위안)</li> <li>- 중국 정부의 자국민 해외여행목적 출국제한 조치로 방한 비자를 기발급받았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중국인 관광객 다수 발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출서류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학/취업비자(D) 등 학력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증이 아닌 경우, 학력증명 제출 간소화 조치</li> <li>- 신분증복사본 제출 관련 제한조치 완화</li> </ul> </li> <li>(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기간 중 방한개별관광비자 수수료 한시적 인하조치 등 추진 고려</li> <li>- 코로나 방역 기간 중 방한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중국 관광객 대상에게는 무료 비자 연장 혜택 도입</li> </ul> </li> </ul>
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단계적 비자 간소화 및 무비자 시행 필요</li> <li>부동산 등 보유 자산이 많음에도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 미비로 비자 거부되는 사례가 있음</li> <li>정부 유관 부처 간 관광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정보 공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비자발급 통계 등 필요 기초 정보들 안정적으로 확보 받지 못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중국관광객 대상 제한적 무비자제도 혹은 비자간소화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세 이하 비자비용 면제 혹은 무비자</li> </ul> </li> <li>일정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비자 발급 시 재직 증명서 외 기타 서류 제출을 통한 대안 마련</li> <li>비자발급 통계 등 법무부 등 유관부처 상호 정보 교류 강화</li> </ul>

지역	현황 및 문제점	건의사항(현지 여행사 의견 포함)
청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년 5월(하순) 청두비자센터가 새롭게 개설되어 비자 접수와 교부 및 콜센터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출입의 자유 이외에는 발급기간 연장 (기존 근무일 기준 5일→6일 이상), 대행료 추가부담(수수료 CNY120) 등으로 업계는 기존보다 불편하다는 입장임</li> <li>'19년 9월 30일부터, 총칭시 9개 구(총 26개 구, 8개 현, 4개 자치현 중) 거주자에 대해 체류자격 5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나, 청두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자 발급기간이 이전같이 5일 또는 그 이하로 단축되기를 희망</li> <li>청두시 여행사 등은, 2018년 중국의 신 1선 도시 중 1위(〈제일재경, 신1선도시연구소〉 선정)인 청두시(成都市)에도 체류자격 5년의 복수비자 발급 희망</li> </ul>
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한 비자센터 오픈 후 이전보다 처리시간이 1~2일 더 소요됨</li> <li>비자발급 위한 서류의 종류가 너무 많고, 인정되는 서류가 한정되어 있음 (ex: 은행거래내역 증빙은 원본만 인정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리시간 단축 요망</li> <li>경제 증명서류 경우 인정되는 서류종류 추가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불인정되는 자동차, 주식, 채권 등</li> <li>- 은행 거래내역을 전자거래 내역 제출</li> </ul> </li> </ul>
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안지역이 복수비자 서류간소화 대상지로 포함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안지역도 복수비자 서류간소화 대상지로 포함 요망</li> </ul>
기타: 여행업계 추가 의견 <sup>8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지역 개별비자의 경우 비자신청센터만 접수 가능해 불편</li> <li>일본 대비 비자 발급기간이 더 길며 비용도 비쌌</li> <li>신분증 사본으로 비자신청 가능 필요</li> </ul>	-

자료: 한국관광공사 중국 7개 지사 조사내용 & 문체부 & 서울관광재단 내부자료, 연구자 정리

중국 지역의 비자와 관련된 의견을 종합해보면 단체관광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는데 이는 중국의 경우 단체관광은 전담여행사 제도를 통해 이미 정착이 되었으며 또한 사드 이후 단체관광 수요가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주된 건의사항은 관련 서류의 간소화와 사본 서류의 인정, 복수 비자간소화 지역의 확대, 그리고 비자신청센터 신설 지역에서의 기간 단축 문제, 코로나 이후 수수료 인하 및 프로모션 등을 제안하고 있다.

81)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시(서울관광재단) 여행업계 간담회 결과 내부자료 참고

## 2. 동남아 3개국 및 인도

앞서 중국처럼 동남아 3개국과 인도에 있는 관광공사 지사와 여행업계의 비자관련 의견을 정리하였다.

〈표 5-2〉 동남아 3국 및 인도 방한관광비자 관련 의견(관광공사 지사 및 여행업계)

지역	현황 및 문제점	건의사항(현지 여행사 의견 포함)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12.3.부터 베트남 대상 비자완화 조치 시행으로 비자신청 증가</li> <li>- 특히 베트남 3개 대도시 복수비자 발급 간소화로 비자신청이 폭증하였으나 비자 담당인력은 증가하지 않음</li> <li>- (단체 관광비자 일일 발급 수량 제한) 폭증하는 비자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여행사를 통해 발급하는 단체 관광비자의 발급 수량 제한조치 및 소요기간 연장</li> <li>- 복수 비자 완화 정책으로 개별 복수 비자 발급이 용이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현지 여행사 입장에서는 단체 관광비자 발급이 어려워져 방한 패키지 상품 판매를 꺼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발생으로 비자 신청 급감하여 현재는 비자 지연 문제 사라짐, 그러나 코로나19 해결 이후 정상화시 재발 가능성 높음</li> <li>• 코로나 19 이전 비자 발급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자 담당 영사 인력 조속한 확충 필요</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대비 공관 수 등 부족)경쟁국 일본 대비 비자발급 인프라 열악</li> <li>- (日)주요도시 5개 공관 (韓)자카르타 1개 공관</li> <li>- (日)비자영사 8명 (韓)비자영사 2명</li> <li>•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만 등에 비해 여전히 방한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li> <li>* (일본) 전자여권 소지자 대상 Visa Waiver ('14.12월 도입), 3년간 복수방문 (대만) 한국, 일본 등 주요국 기방문자 대상 e-Visa</li> <li>- (요구서류) 세금납부내역서 제출(한국)이 특히 불만사항임</li> <li>- (발급시일) 7일(한국), 4~6일(일본), 4일(대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관수 확대 등) 공관(비자센터) 수 확대 등 지방 원거리 거주자 대상 서비스 강화</li> <li>- 공관수 확대 및 영사인력 증원</li> <li>* 영사인력 증원을 통해 처리 시일 단축, 인터뷰 기회 확대 등 비자서비스 개선 가능</li> <li>* 여행업계에서는 공관 수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li> <li>• 신남방정책 차원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 필요</li> <li>- 주요 경쟁국과 유사한 형태의 Visa Waiver, e-Visa 제도 도입, 단체관광객 제주환승 무비자 시행 등의 시범적 실시 건의</li> </ul>

82)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서울관광재단) 여행업계 간담회 결과 내부자료 참고

지역	현황 및 문제점	건의사항(현지 여행사 의견 포함)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이전 일평균 약 1,400건의 비자가 접수됨. 19년 하반기 일 600건으로 처리건수 쿼터제 실시</li> <li>• 비자발급 처리기간 실제소요일: 2020. 2월 기준 1.5개월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이후 비자발급 접수건 수 급증 우려로 비자인력 충원 필요</li> <li>• 비자센터 설치를 통한 비자관련 편의 제고</li> <li>• 단체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기업/수학여행 단체 5인 이상 (개선) 가족FIT, 방한상품 구매단체 등</li> </ul> </li> </ul>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3월부터 단체비자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5인 이상 MICE 단체 또는 고등학교 이하 수학여행단 또는 시찰단</li> <li>- 신청: 대사관 지정 전담여행사(18개)만 신청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비자 시행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 단체비자 발급건수가 '19.3월시행 이후 '20. 5월말기준 총 186명으로 제도 시행 효과가 매우 약함</li> <li>- 발행대상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고 여행사 확대 지정 검토</li> </ul> </li> </ul>
기타: 여행업계 추가 의견 <sup>8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일본대비 비자취득 어려움</li> <li>• (필리핀) 비자취득 기간 장기간 소요, 단체관광비자가 기업 인센티브만 가능</li> </ul>	-

자료: 한국관광공사 동남아 3국 및 인도지사 조사내용 & 문체부 & 서울관광재단 내부자료, 연구자 정리

동남아 3국의 비자관련 공통 문제점은 비자인력 부족이다. 이는 앞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상황으로 현재는 코로나19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향후 정상화 되면 재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일본 대비 비자발급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단체관광비자 대상 확대는 필리핀과 인도 공통적인 사항이다.

## 제3절 방한 관광객 의견조사

---

본 장의 제3절에서는 조사 대상국가의 방한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방한관광객은 비자의 최종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들을 대상으로 비자에 관련한 의견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었다. 현재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는 출입국 절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문항만이 있고, 비자에 관한 별도의 설문 문항이 없다. 그러나 출입국 절차에 관한 만족도 조사는 공항에서의 출입국 절차에 관한 질문으로서 입국 전의 준비 과정에 해당하는 비자발급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출입국 절차 만족도로 방한 비자에 관한 관광객의 의견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방한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조사 개요

#### 가. 조사 목적

- 방한비자 발급경험이 있는 중국, 동남아 3국, 인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 행태와 비자 발급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방한비자에 대한 국가별 관광객들의 인식도와 의견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나. 조사 내용 및 방법

- 조사 대상
  - 한국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성인 남녀

- 조사 부수
  - 총 500표본 (국가별 100표본)<sup>83)</sup>
- 조사 기간
  - 2020. 07. 30 ~ 2020. 08. 05
-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 2. 조사 내용

본 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5-3〉 설문 조사 내용

방한객 비자발급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여행 시기</li> <li>- 한국 여행 시 발급 받은 비자 유형</li> <li>- 비자 발급 경로</li> <li>- 비자 발급 소요기간</li> </ul>
방한객 비자 발급 관련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대만비자 발급과 비자 발급 비교</li> <li>일본/대만 여행 여부 및 시기</li> <li>일본/대만 대비 비자 발급 소요기간</li> <li>일본/대만 대비 비자 발급 비용 적정여부 의견</li> <li>일본/대만 대비 전반적인 비자 발급 과정에 대한 의견</li> <li>- 비자 취득과정 시 불편사항</li> <li>- 가장 준비하기 어려운 비자 신청 서류</li> <li>- 한국여행 준비 과정 중 비자가 미치는 불편 정도</li> <li>- 무비자 정책 시행 시 한국 재방문 의향</li> </ul>
인구통계학적 배경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li> <li>- 성별</li> <li>- 연령대</li> <li>- 학력</li> <li>- 직업</li> <li>- 월 평균 가구소득</li> </ul>

83) 최초 조사 계획시에는 국내에서 대면조사로 국가별 300부씩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글로벌조사 업체(KANTA)를 통해 각 국가별 온라인패널 조사로 전환하면서 국가별 조사부수가 축소되었음

### 3. 조사 응답자 현황

본 조사의 응답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5-4〉 응답자 현황

(단위: 명/%)

구분		표본 수(명)	구성비 (%)	구분		표본 수(명)	구성비 (%)	구분		표본 수(명)	구성비 (%)
중국		(100)	100.0	베트남		(104)	100.0	인도네시아		(100)	100.0
성별	남성	(47)	47.0	성별	남성	(38)	36.5	성별	남성	(45)	45.0
	여성	(53)	53.0		여성	(66)	63.5		여성	(55)	55.0
연령	20대	(31)	31.0	연령	20대	(35)	33.7	연령	20대	(27)	27.0
	30대	(40)	40.0		30대	(42)	40.4		30대	(45)	45.0
	40대 이상	(29)	29.0		40대 이상	(27)	26.0		40대 이상	(28)	28.0
직업	사무/관리/전문직 등	(89)	89.0	직업	사무/관리/전문직 등	(84)	80.8	직업	사무/관리/전문직 등	(68)	68.0
	판매/생산/가능직 등	(8)	8.0		판매/생산/가능직 등	(15)	14.4		판매/생산/가능직 등	(27)	27.0
	학생	(3)	3.0		학생	(2)	1.9		학생	(1)	1.0
	주부	(0)	-		주부	(1)	1.0		주부	(2)	2.0
	기타/무직	(0)	-		기타/무직	(2)	1.9		기타/무직	(2)	2.0
학력	중졸 이하	(0)	-	학력	중졸 이하	(0)	-	학력	중졸 이하	(1)	1.0
	고졸	(2)	2.0		고졸	(8)	7.7		고졸	(26)	26.0
	대학교 재학	(4)	4.0		대학교 재학	(7)	6.7		대학교 재학	(1)	1.0
	대졸 이상	(87)	87.0		대졸 이상	(81)	77.9		대졸 이상	(68)	68.0
	석사졸업 이상	(7)	7.0		석사졸업 이상	(8)	7.7		석사졸업 이상	(4)	4.0
월 평균 가구 소득	상(3,000USD 이상)	(47)	47.0	월 평균 가구 소득	상(1,500USD 이상)	(31)	29.8	월 평균 가구 소득	상(1,500USD 이상)	(22)	22.0
	중(2,000~2,999USD)	(28)	28.0		중(700~1,499USD)	(48)	46.2		중(700~1,499USD)	(35)	35.0
	하(1,999USD 이하)	(25)	25.0		하(699USD 이하)	(25)	24.0		하(699USD 이하)	(43)	43.0

구분		표본수(명)	구성비(%)	구분		표본수(명)	구성비(%)
필리핀		(103)	100.0	인도		(100)	100.0
성별	남성	(38)	36.9	성별	남성	(60)	60.0
	여성	(65)	63.1		여성	(40)	40.0
연령	20대	(41)	39.8	연령	20대	(34)	34.0
	30대	(35)	34.0		30대	(43)	43.0
	40대 이상	(27)	26.2		40대 이상	(23)	23.0
직업	사무/관리/ 전문직 등	(64)	62.1	직업	사무/관리/ 전문직 등	(82)	82.0
	판매/생산/ 가능직 등	(28)	27.2		판매/생산/ 가능직 등	(9)	9.0
	학생	(4)	3.9		학생	(6)	6.0
	주부	(2)	1.9		주부	(2)	2.0
	기타/무직	(5)	4.9		기타/무직	(1)	1.0
학력	중졸 이하	(1)	1.0	학력	중졸 이하	(0)	-
	고졸	(3)	2.9		고졸	(1)	1.0
	대학교 재학	(11)	10.7		대학교 재학	(3)	3.0
	대졸 이상	(76)	73.8		대졸 이상	(45)	45.0
	석사졸업 이상	(12)	11.7		석사졸업 이상	(51)	51.0
월 평균 가구 소득	상(1,500USD 이상)	(26)	25.2	월 평균 가구 소득	상(1,500USD 이상)	(29)	29.0
	중(700~1,499 USD)	(37)	35.9		중(700~1,499 USD)	(48)	48.0
	하(699USD 이하)	(40)	38.8		하(699USD 이하)	(23)	23.0

## 4.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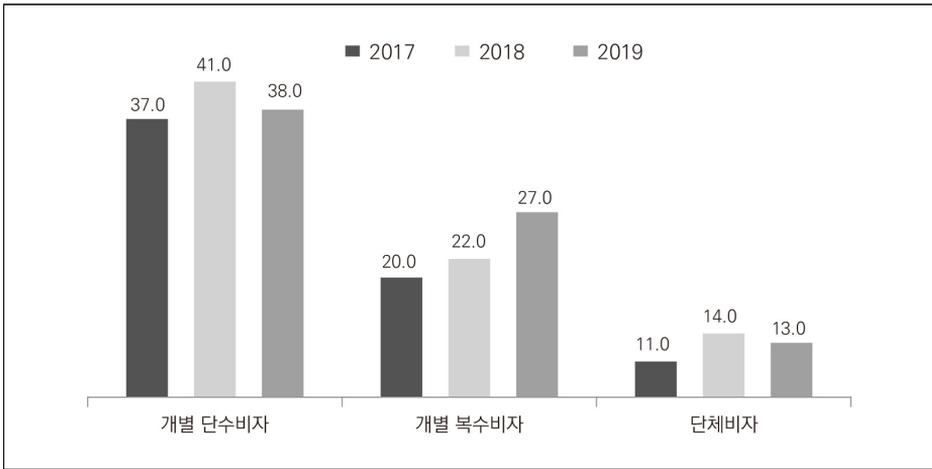
### 가. 방한객 비자 발급 형태

#### 1) 국가별 발급받은 비자형태 및 특징(복수응답)

중국의 2017~2019년 비자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별 단수비자 발급 비율이 높은 반면, 단체비자 발급 비율은 약 13% 내외로 다른 비자 유형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인데 이는 2017년 이후 사드 영향으로 우리나라 방문 단체관광객이 감소한 이유로 추정된다.

[그림 5-1] 발급받은 비자 종류(복수응답)\_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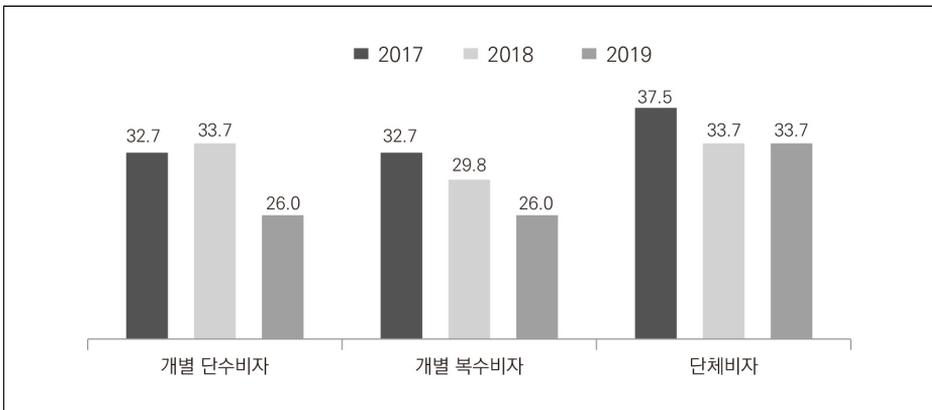
(단위: %)



베트남의 경우 개별 단수비자, 개별 복수비자, 단체비자의 발급 비율이 모두 30% 내외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2] 발급받은 비자 종류(복수응답)\_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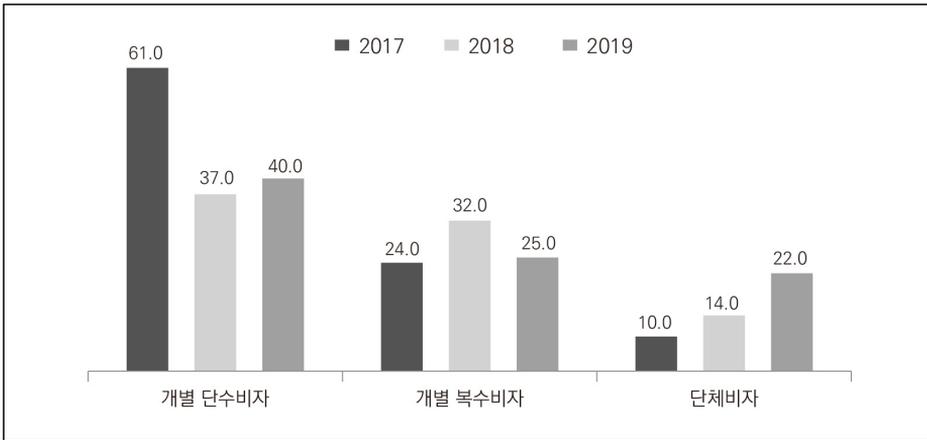
(단위: %)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반적으로 개별 단수비자 발급 비율이 높고 복수비자 비율이 낮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복수비자 취득이 단수비자 취득보다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단체비자 발급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5-3] 발급받은 비자 종류(복수응답)\_인도네시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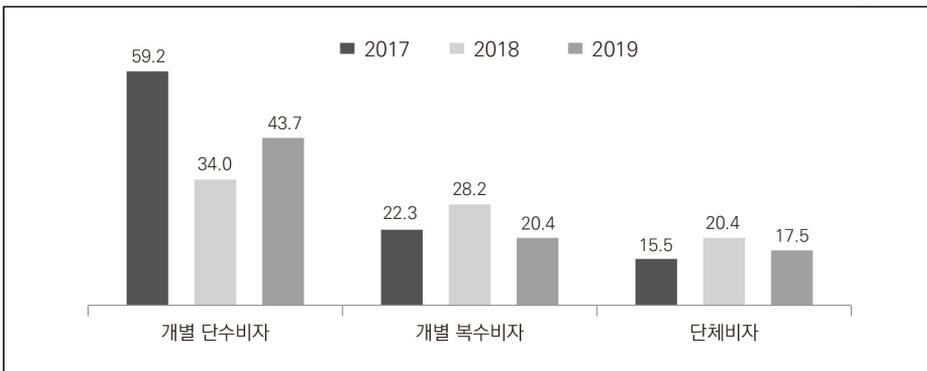


2017년부터 2019년 필리핀의 비자 발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개별 단수비자 발급 비율이 높아서 필리핀도 복수비자 발급이 단수비자에 비해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은 단체비자의 발급 비율이 낮는데, 이는 가족 중심의 개별여행을 선호하는 필리핀 방한 여행 특성과 가족에게는 단체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현행 단체비자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5-4] 발급받은 비자 종류(복수응답)\_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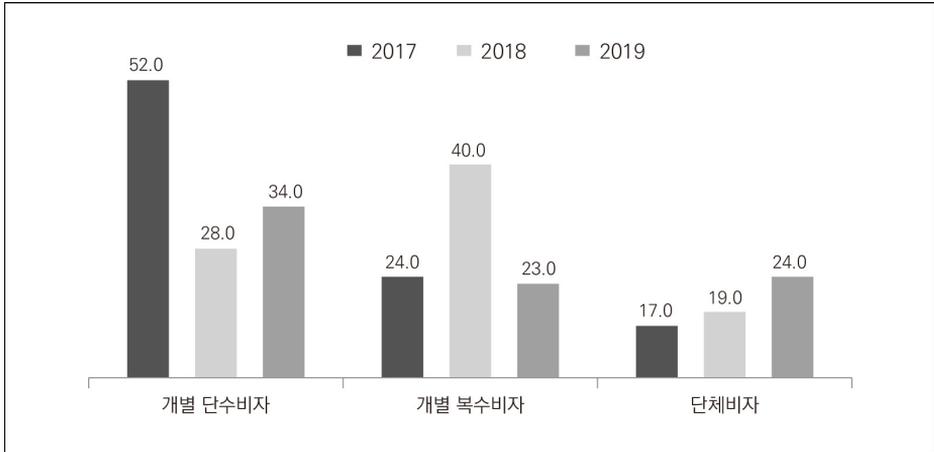
(단위: %)



인도의 경우도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개별비자 취득이 단체비자보다 높는데 이는 전술한 것처럼 방한 인도인의 대부분이 개별 비즈니스 여행객이며 단체비자 신청이 낮은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5] 발급받은 비자 종류(복수응답)\_인도

(단위: %)



## 2) 가장 최근에 이용한 비자 발급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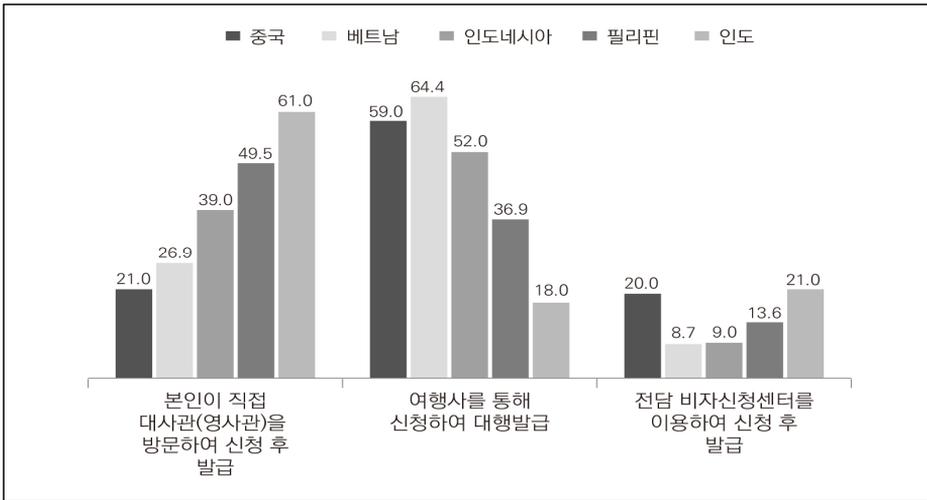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비율은 인도가 61.0%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필리핀(49.5%), 인도네시아(39.0%) 등의 순으로, 그리고 베트남(64.4%)과 중국(59.0%), 인도네시아(52.0%)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전담 비자신청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지만 인도와 중국의 이용 비율이 각각 21.0%와 20.0%로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sup>84)</sup>

전담 비자신청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우편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별 여행사를 통해 접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84) 인도는 우리나라 여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비자신청센터가 아니라 VFS Global에서 운영하는 비자신청센터가 있음

[그림 5-6] 가장 최근에 이용한 비자 발급 경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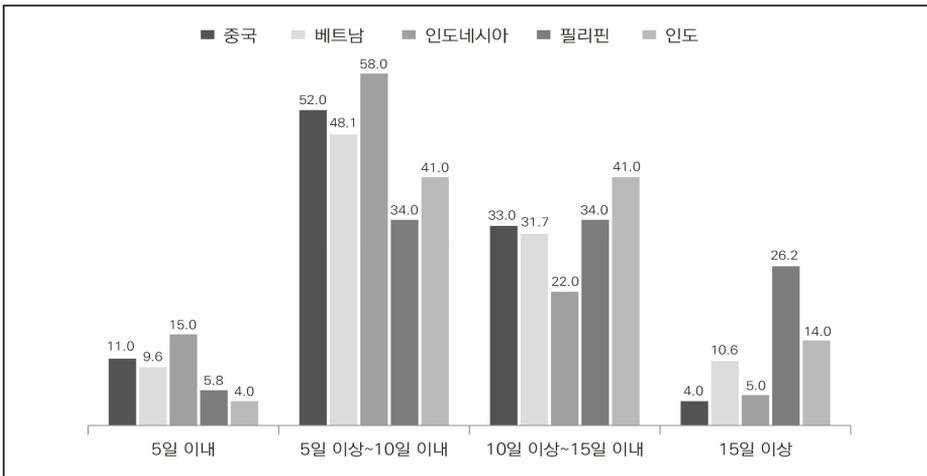


### 3) 가장 최근 비자를 발급 받는 데 걸린 기간

비자발급 소요 기간에 대한 조사결과는 5개 국가에서 비자를 발급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주로 '5일 이상~10일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의 경우 '15일 이상' 걸렸던 비율이 26.2%로 가장 많아 앞서 국가별 비자발급 현황에서 동남아 3개국 중 필리핀 발급기간이 가장 오래 소요되는 것과 조사결과가 일치한다.

[그림 5-7] 가장 최근 비자를 발급 받는 데 걸린 기간

(단위: %)



## 나. 경쟁국가(일본, 대만) 대비 방한비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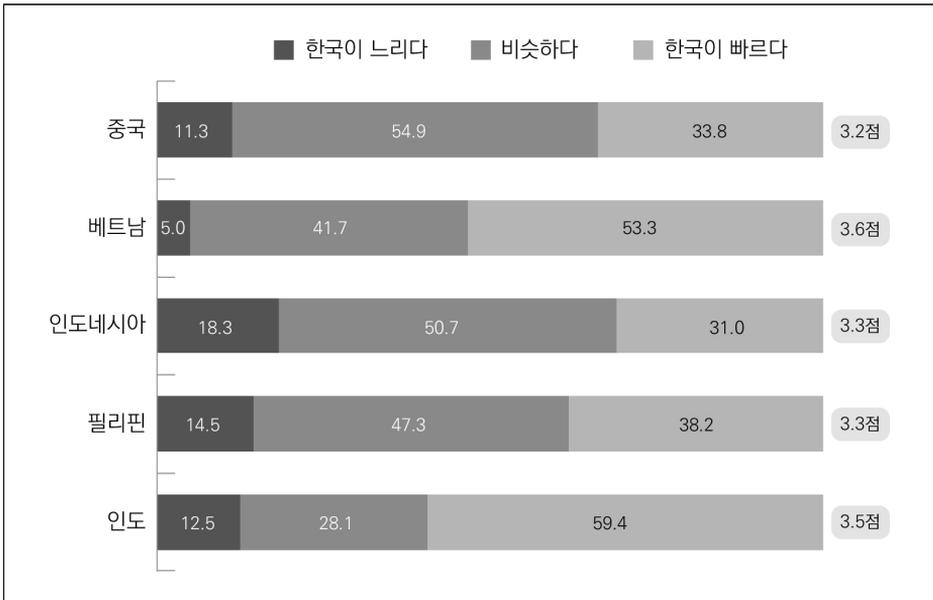
### 1) 경쟁국가 대비 비자 발급 소요기간 평가

경쟁국가 대비 방한의자 발급 소요기간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일본을 다녀온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베트남(53.3%)과 인도(59.4%) 응답자들의 과반 이상은 일본보다 비자 발급이 더 빠르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일본보다 한국이 느리다’ 비율은 18.3%로 일본보다 한국의 비자 발급이 더 느리다고 느끼는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일본의 인도네시아 대상 비자완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5-8] 일본 대비 비자 발급 소요기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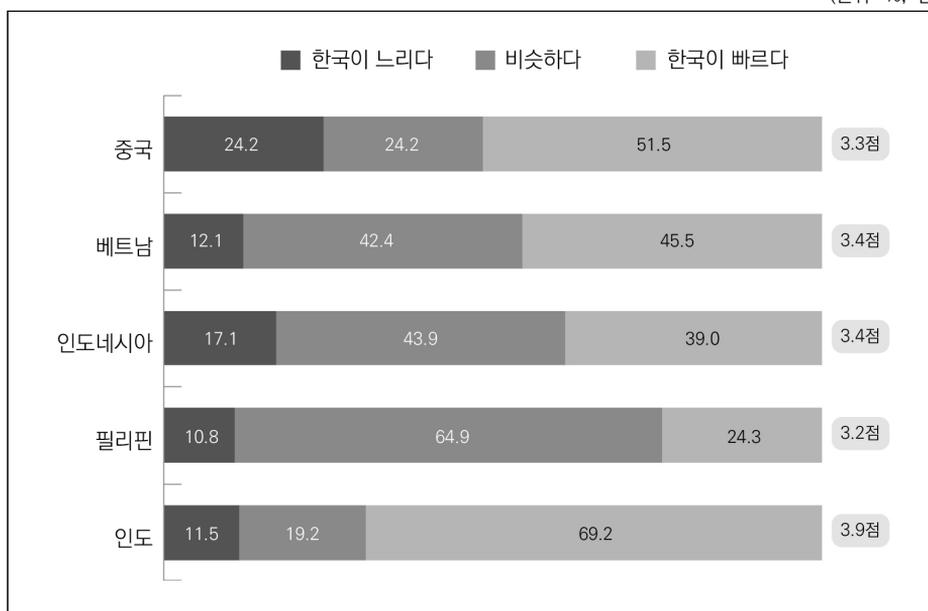
(단위: %, 점)



대만과 한국의 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비교 평가한 결과, 인도 응답자들의 ‘한국이 빠르다’ 비율이 69.2%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으며 중국의 경우 ‘한국이 빠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51.5%로 인도 다음으로 높은 편이지만, ‘한국이 느리다’는 비율 또한 24.2%로 5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만을 다녀온 필리핀 응답자들의 64.9%는 발급 소요기간이 비슷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림 5-9] 대만 대비 비자 발급 소요기간 평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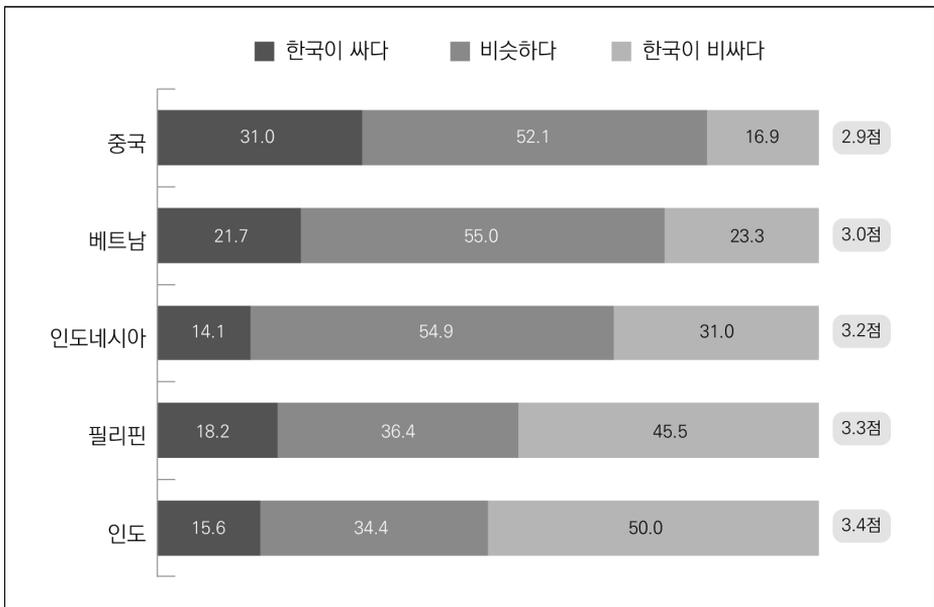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경쟁국가인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할 때 비자발급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일본과 비교할 때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급 기간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 2) 경쟁국가 대비 비자 발급 비용 평가

일본과 한국의 비자 발급 비용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싸다’는 비율이 중국(31.0%)이 가장 높고, 이어 ‘베트남(21.7%)’, ‘필리핀(18.2%)’ 등의 순이었으며 일본보다 ‘한국이 비싸다’는 비율은 인도(50.0%)와 필리핀(45.5%)이 높은 편이었다.

[그림 5-10] 일본 대비 비자 발급 비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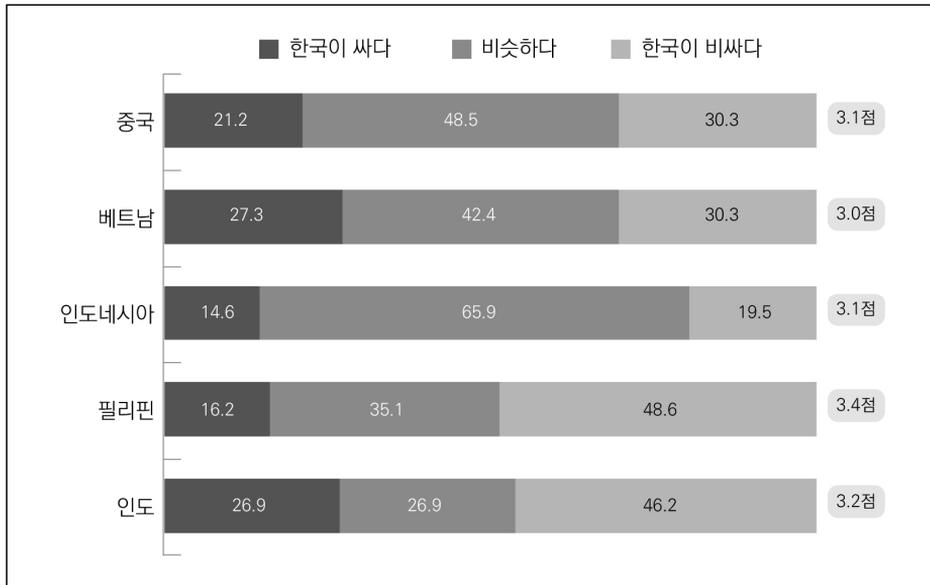
(단위: %, 점)



대만과의 비자 발급 비용 비교에서 또한 '한국이 비싸다'는 비율이 인도와 필리핀에서 각각 46.2%와 48.6%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인도에서 '한국이 싸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26.9%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베트남도 27.3%를 차지하였다.

[그림 5-11] 대만 대비 비자 발급 비용 평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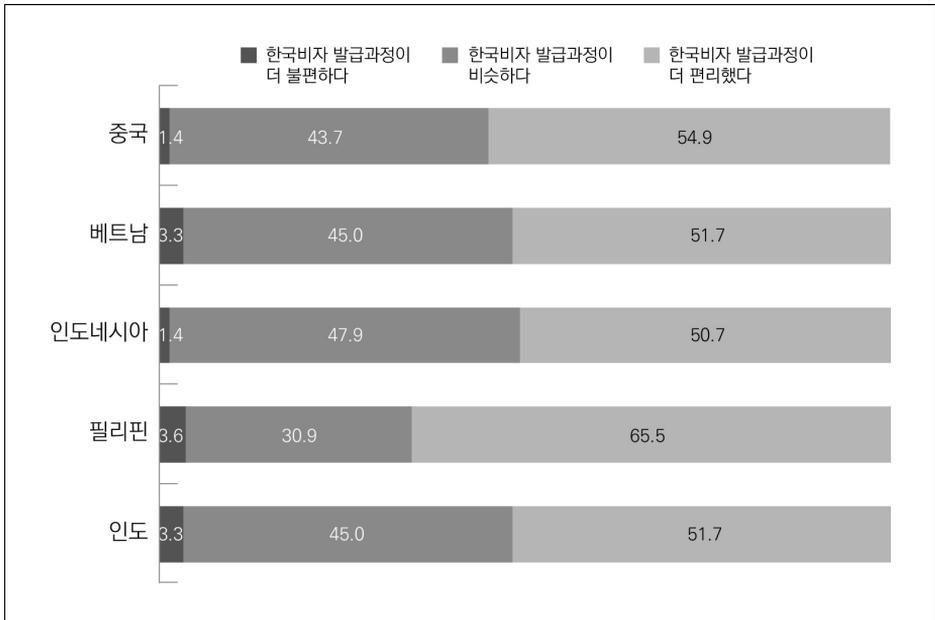
경쟁국가 대비 비자발급 비용에 대해서는 큰 의견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필리핀과 인도에서 비자발급 비용이 비싸다는 의견이 높다.

### 3) 경쟁국가 대비 비자 발급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

일본을 다녀온 5개국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은 비자 발급과정 전반에서 ‘한국이 더 편리했다’고 답했으며, 필리핀의 긍정 응답 비율이 65.5%로 가장 높았다.

[그림 5-12] 일본 대비 비자 발급과정 전반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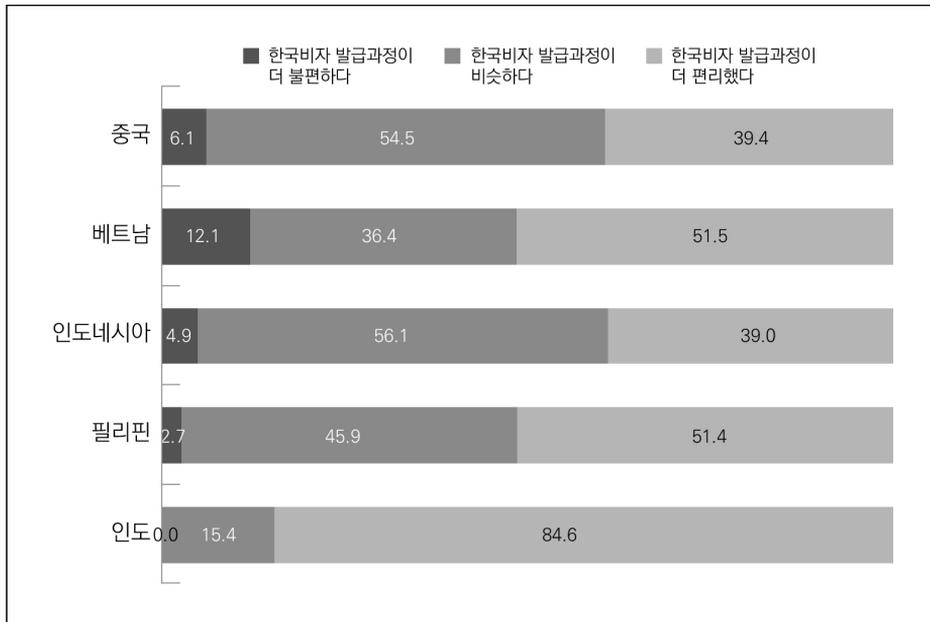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비자발급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대만과 한국의 비자 발급과정을 비교평가 결과를 살펴봤을 때, '비자 발급 과정이 더 불편했다'는 비율이 일본과 한국을 비교한 결과에서보다 더 높았다.

이는 대만이 최근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남향정책을 바탕으로 비자간소화에 노력한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인도의 경우 응답자의 84.6%가 '비자 발급과정이 더 편리했다'고 답한 반면,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응답비율은 각각 39.0%와 39.4%에 그쳤다.

[그림 5-13] 대만 대비 비자 발급과정 전반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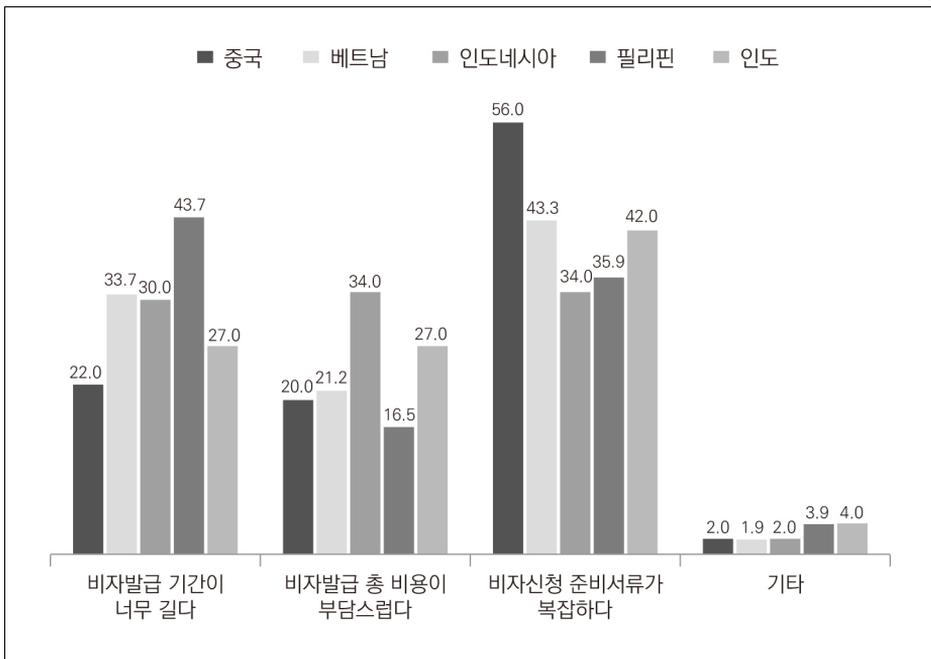
#### 4) 비자 발급 과정 중 가장 불편했던 점

5개국 응답자들 중 대다수는 비자 발급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으로 '비자신청 준비서류가 복잡하다'를 꼽았으며, 중국(56.0%)의 비율이 타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앞서 관광공사 및 여행업계 조사의견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국가별로 볼 때는 '비자발급 기간이 너무 길다'고 응답한 비율이 필리핀의 경우 43.7%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비자발급 총 비용이 부담스럽다'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의 응답 비율(34.0%)이 비교적 높다. 이 역시 관광공사 및 여행업계 조사의견과 일치하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일본 무비자 입국 시 비자 수수료가 없는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14] 방한 비자 발급 과정 중 불편했던 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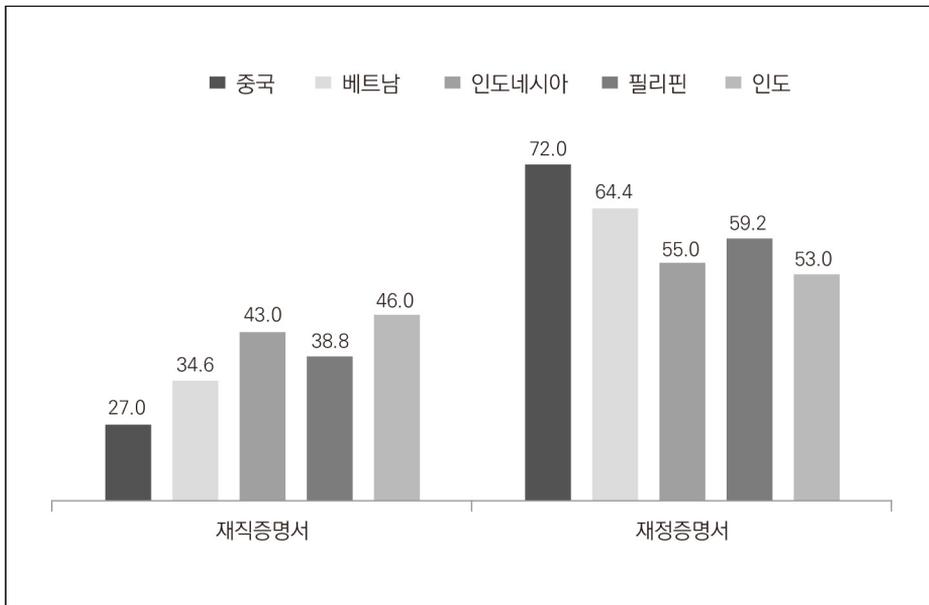


### 5) 비자 신청 시 준비하기 어려웠던 서류

5개국 방한 관광객은 비자 신청 시 대체로 재정상황을 알려주는 증명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국가별로 재정증명서가 어려웠다는 비율은 중국에서 72.0%로 가장 높고 이어 ‘베트남(64.4%)’, ‘필리핀(59.2%)’ 등의 순이었으며 재직증명서의 경우 인도에서 46.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인도네시아(43.0%)’, ‘필리핀(38.8%)’ 등의 순이었다.

[그림 5-15] 비자 신청 시 준비하기 어려웠던 서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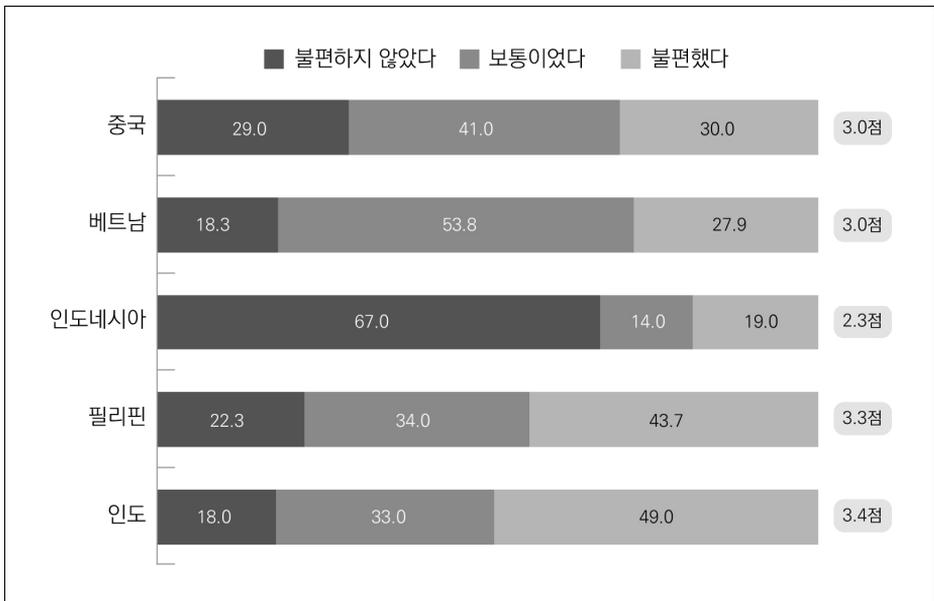
이러한 경향 역시 현지 관광공사와 여행업계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특히 재정분야 사본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비자준비 서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 여행 준비 중 비자발급이 불편사항으로 작용하는 정도

여행 준비 중 비자 발급이 불편사항으로 작용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비자 발급에 대한 부담이 30% 미만으로 크지 않았다. 반면에 인도와 필리핀의 경우 ‘불편했다’는 비율이 각각 49.0%와 43.7%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제약으로 느끼는 정도가 큰 편인데 경제소득, 비자 거부율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그림 5-16] 여행 준비 중 비자 발급 불편 정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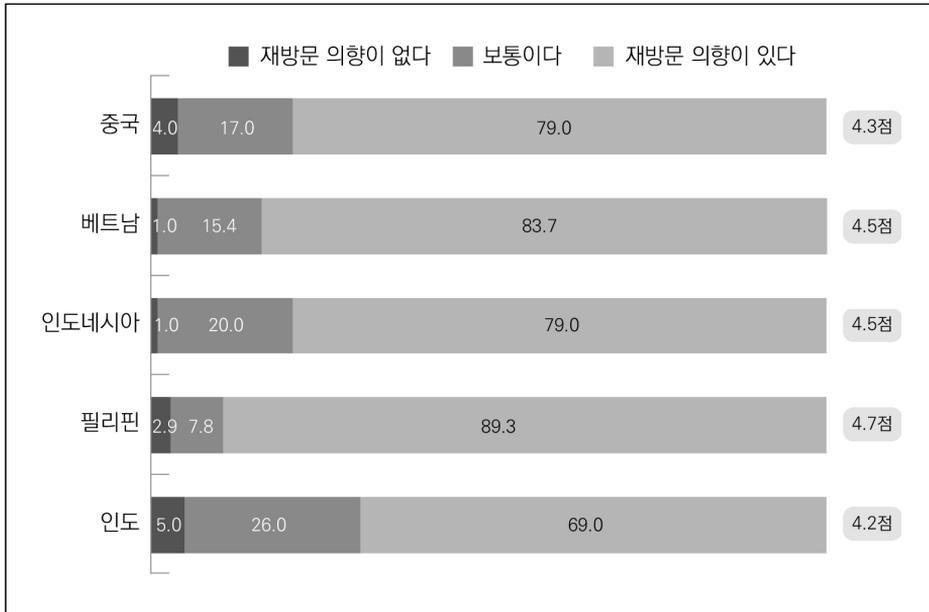


### 7) 무비자 정책 시행 시 한국 재방문 의향

무비자 정책 도입 시 한국 재방문 의향에 대해서 5개국 응답자의 대다수가 ‘재방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개별여행 비중이 높은 필리핀의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순수 관광목적보다는 비즈니스 여행객의 비중이 높은 인도는 상대적으로 재방문 의향이 낮음

[그림 5-17] 무비자 정책 시행 시 한국 재방문 의향

(단위: %, 점)



## 5. 조사의 한계

본 설문조사는 애초 방한관광객 대상 국가별 대면 조사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현지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방법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특성이 패널 자체의 특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본 조사를 현지에서 진행한 업체(KANTAR)<sup>85)</sup>는 각 국에 지사를 둔 글로벌 시장조사전문 업체로서 각 국가의 소비자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패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 조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있는 중상류층에 특화되어 있다. 실제로 본 조사 응답자의 Profile을 보면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1인당 소득도 높다. 따라서 응답자 프로필의 이러한 구성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자발급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여행 준비과정에서 비자가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점에 대하여 큰 불편이 없다는 점이 응답자들의 경우 중상류층으로 비자준비와 심사과정에서 별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85) KANTAR WORLD PANEL: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패널 전문 마케팅 리서치 기업.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제5장에서는 비자제도 개선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자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내용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1. 요약

#### 가. 법무부

비자제도 개선에서 법무부의 권한과 역할은 매우 크다. 비자정책의 권한을 가지고 관광비자 뿐 아니라 우리나라 비자정책 기초를 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비자 개선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편의개선과 함께 불법 체류자 관리의 임무도 가지고 있어 입장이 상호 충돌하는 면도 있는데 이러한 양면성이 관광비자 개선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 조사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확인되었는데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비자정책 개방도는 높게 평가하였고, 추가적 완화에는 신중성을 표하였다. 비자인력 충원 문제에는 동의하였으며 전자비자 시스템, ETA 활용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지향 필요, 비자 관련 통계 공표 어려움과 함께 코로나 이후 비자 정책의 전반적 변화를 예상하였다.

#### 나. 관광공사 및 여행업계

외래 관광객 유치를 직접 담당하는 관광공사 및 여행업계의 경우 정부 부처보다는 비자개선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기 마련이다. 다만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약간 차이가 나타나는 점이 있었다.

우선 중국 지역의 경우에는 사드로 인하여 2017년 이후 단체관광객이 없는 점에

영향을 받아 대부분 개별관광 비자와 관련된 건의사항이 많았다. 관련 준비서류의 간소화와 함께 원본 이외 사본의 인정 등이 공통적이었으며 복수 비자 간소화 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2선 도시들은 해당 정책에 포함할 것을 건의하고 있었다. 또한 비자신청센터가 신규로 설치된 지역에서는 비자발급 기간의 단축을 요청하였으며 코로나 이후에 시장 회복을 위한 수수료 인하 등의 적극적 프로모션도 건의하였다.

동남아의 경우에는 비자담당 인력부족으로 비자발급이 늦어지는 문제를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고 일본에 대비하여 비자발급 어려움(인도네시아), 단체관광비자 발급 기준완화(필리핀, 인도)를 해결해야할 문제로 제시하였다.

#### **다. 방한관광객**

비자의 최종 수요자인 방한관광객의 비자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각 사안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비자 발급 형태**

전반적으로 2장 방한관광 시장 행태분석의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다. 사드 영향으로 단체관광객이 급감한 중국의 경우 단체비자 발급율이 낮게 나타났고 동남아 국가들도 방한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 **2) 비자발급 경로**

아직까지 비자신청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데 특히 최근에 센터가 설치된 동남아의 경우는 더 낮게 조사되었다.

##### **3) 비자발급 소요기간**

평균적으로 5~10일 이내 소요되었으며 앞에서 확인된 것처럼 필리핀의 조사결과에서도 가장 늦게 발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4) 경쟁국가(일본, 대만) 대비 평가

경쟁국가와 비교한 비자 관련 평가는 절대적인 큰 차이가 없었는데 주목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다른 조사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었는데 이는 일본의 인도네시아 비자 조건부 면제조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 5) 비자 발급 과정에서 불편사항

조사 국가 모두 공통적으로 꼽은 사항은 비자신청 서류가 복잡하다는 것이었으며 중국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필리핀은 발급 기간, 인도네시아의 경우 비자 비용에 대한 불만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았다.

#### 6) 비자 준비 서류

비자 준비 서류는 공통적으로 재정능력의 입증이 가장 힘든 사항으로 들었다. 앞서 서류 준비에 대한 불편의견이 가장 높은 중국이 동일하게 여기서 높았으며 재정능력 인증 서류의 범위 및 원본만 인정하는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7) 여행 준비에서 비자발급이 불편사항으로 작용하는 정도

인도와 필리핀이 조사 대상 국가 중 한국을 방문하는 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을 제약으로 느끼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유는 경제소득, 비자 거부율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 8) 무비자 정책 시 재방문 의향

조사 국가 모두 무비자 정책 시행 시 재방문 의향이 높았으며 개별여행 비중이 큰 필리핀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 2. 시사점

### 가. 공통 의견인 사항부터 시급히 추진

조사결과를 정리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동남아 3국의 비자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은 법무부, 관광공사 및 업계, 방한관광객 모두 공통 의견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해외공관 비자담당 인력보충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기재부와 행안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단기간에 완료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 나.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

다만 비자발급에 관련된 개별 사항에 대해서 법무부는 비자담당 주무부처이지만 불법 체류자 관리도 책임지고 있어 신중한 입장을 표출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비자 개방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관광비자를 완화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러나 앞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최근 불법체류자 증가의 주된 원인은 관광비자 발급의 완화보다는 기존 비자 면제국가로부터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불법체류가 더 큰 원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법무부에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다. 방한관광객 비자의견에 대한 정기적 조사 필요

우리나라 주요 방한관광시장인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들에게는 비자발급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비자개선을 통한 관광객 방문의 추이와 비자발급과 관련된 사항 중에 어떠한 항목이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를 통하여 문제 사항을 개선하고, 개선에 대한 실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방한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연구

제6장

## 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개선방안



# 제1절 비자개선 기본방향

## 1.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결과 종합

비자개선 기본방향 설정을 위하여 먼저 <표 6-1>에 각장의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표 6-1> 기본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결과 및 시사점 정리

구분	연구결과		시사점	
중국, 동남아 3국, 인도 아웃바운드 및 방한시장 특징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소득 증가가 아웃바운드 시장과 방한시장 견인</li> <li>국가별 무비자 여행자유도 또한 해당 국가의 경제소득과 밀접한 연관</li> <li>-5개국 모두 경제소득 중하위 그룹으로 여행 자유도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간 비자개선(비자면제 또는 비자완화) 조치도 양국 간 경제소득 차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음</li> </ul>	
	국가별 사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한령 해제 전까지 단체관광 위축으로 2~30대 여성 개별여행 위주시장 지속전망(시진핑 방한 변수-코로나로 지연)</li> <li>내륙 2.3선 도시의 해외여행 초기시장 성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관광비자 개선 노력</li> <li>2.3선 도시에 대한 비자개선</li> <li>비자면제는 중장기 검토</li> </ul>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여행 초기시장으로 인근 동남아에서 동북아로 여행지역 확대</li> <li>방한시장은 단체관광 중심이나 개별도 성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체관광비자(전자비자) 활용 개선</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 메르스 위축 후 방한 시장은 완만한 성장이며 개별여행이 단체여행을 넘어섬</li> <li>일본의 전자여권 조건부 면제조치로 방일 인도네시아 관광객 최근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시장 증가에 대한 대비</li> <li>일본의 전자여권 조건부 비자 면제 실시 벤치마킹</li> </ul>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웃바운드에서 취업목적 비중 높음</li> <li>한국 대비 일본방문 증가</li> <li>가족 위주, 영어사용 가능 특성으로 초기시장임에도 개별여행 비중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중심 개별여행 특성 반영한 비자개선 (ex: 가족 단체비자 등)</li> </ul>

구분	연구결과		시사점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개국 중 경제소득 가장 적고 관광목적 여행보다 해외취업, 비즈니스 출장 위주</li> <li>•방한인도시장도 비즈니스 개별여행객 중심</li> <li>•시장규모는 작지만 방한여행객 1인당 지출규모는 상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비자도 중요하지만 인도 패키지 투어를 발굴하기 위한 비자개선 노력 필요</li> </ul>	
우리나라 비자개선 현황과 제약요인	비자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나라의 비자개방성은 높은 편</li> <li>-주요 시장인 중국, 동남아가 비자가 요구되어 상대적 제약 체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간 비자개선(비자면제 또는 비자완화) 조치도 양국 간 경제소득 차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음</li> </ul>	
	비자 발급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전자신청과 재외공관 오프라인 신청 혼재</li> <li>-온라인 관광비자는 단체관광비자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비자 제도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li> </ul>	
	비자 완화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자완화는 경제, 질병 등의 거시적 외부요인에 비해 관광객 유치에 부차적이지만 정책관여(policy intervention) 기능을 가지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객 증가를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가치에 주목 필요</li> </ul>	
	관광 비자 개선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0년 이후 지속적 완화 추진</li> <li>-제주도 무비자 입국</li> <li>-청소년 수학여행 무비자</li> <li>-복수비자 발급확대 및 발급기간 단축</li> <li>-단체관광객 대상 전자비자발급</li> <li>-비자신청센터 설치(광저우 등5개 도시)</li> <li>-4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 (알리페이 활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지역 비자완화는 과거에 비하여 많이 개선됨(비자신청 센터 확충, 온라인 비자 도입, 복수비자 확대 등)</li> <li>•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 지속 추진(코로나 이후)</li> </ul>
		동남아 및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남방정책, 시장다변화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강화</li> <li>-개인복수비자 발급대상 및 복수비자 유효기간 연장(3-5-10)</li> <li>-동남아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li> <li>-인도 단체관광 비자발급</li> <li>-4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 (복수비자 확대, 비자 영사 증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에 비자완화가 추진되면 서 국가별 편차 존재</li> <li>-베트남의 경우 과거보다 개별복수 비자 기준이 많이 완화됨(특히 대도시 거주자)</li> <li>-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일본 에 비하여 불편</li> <li>-인도 단체관광비자 취약</li> </ul>
	비자 개선 제약 요인	불법 체류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문객 증가에 따라 불체자도 증가</li> <li>-그러나 최근 불체자 증가의 주요 국가는 비자 면제국인 태국으로 비자완화가 주요 원인이 아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비자 완화가 불법체류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음</li> </ul>
비자 인프라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외공관 비자담당 인력 부족(동남아)</li> <li>-발급 소요기간 지연</li> <li>•비자신청센터 부족(동남아)</li> <li>-인도네시아, 필리핀</li> <li>•단체관광 전자비자 활용 미흡(동남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외공관 비자영사 소속 확충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기보고 사항)</li> <li>•비자신청센터 확충</li> <li>•동남아 단체관광 전자비자 활용도 제고 필요</li> </ul>	

구분	연구결과				시사점
주요 경쟁 국가 비자 개선 사례 조사	국가 별	일본	대만	태국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센카쿠 분쟁 이후 중국 개별관광객 시장 강화</li> <li>•동남아) 중국 시장 의존도 약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 양안 관계 악화로 신남향정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국 경기침체로 중국시장 점프를 통한 관광산업 부흥 노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례국가 모두 중국의 영향력이 비자완화 정책에 영향</li> <li>-다만, 태국의 경우 외교 갈등이 아닌 자구책</li> </ul>
	주요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 복수비자 완화</li> <li>-단체관광비자 간소화</li> <li>-비자신청센터 (태국, 인도네시아)</li> </ul> </li> <li>•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복수비자 완화</li> <li>-비자신청 수수료 완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남향국가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비자 완화 추진</li> <li>-베트남, 인도네시아) 온라인 조건부 비자면제</li> <li>-태국, 필리핀) 비자면제 시범 실시</li> <li>-동남아 주요 국가 단체관광 온라인 비자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국 관광스포츠 초부 주도로 중국관광객의 한시적 비자 면제 추진했으나 외교부 반대와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자완화 조치와 국가 간 경제격차 관계 재확인</li> <li>-우리나라는 일본, 대만보다 20여년 먼저 태국 비자면제 (당사 한국-태국 경제격차 크지 않음)</li> <li>•비자개선은 비자 주무부처의 협조 및 강한 정책 드라이브 필요</li> </ul>
	성과	중국, 동남아 관광객 증가	동남아 관광객 증가		일본과 대만 모두 우리나라와 비슷한 불법체류자 문제
	부작용	동남아 불법 체류자 증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동남아 불법 체류자 증가 (베트남, 태국)	해당 없음	
이해 관계자 비자 의견 조사	정부 부처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나라 비자정책 전반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가진 비자주무부처</li> <li>-불체자 관리 임무로 비자개선에 신중한 입장</li> <li>-비자인력 총원 필요, 전자비자 &amp; ETA를 활용한 온라인 비자시스템 지향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무부처 법무부와의 협력 필수적</li> <li>•비자발급은 재외공관장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외교부 협력도 중요</li> </ul>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자정책을 재외공관 현장에서 실현하는 이유로 비자개선에 미치는 영향력 작지 않음</li> <li>-제출서류 간소화(공관장 재량), 비자인력 총원 등</li> </ul>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부처들과 비자“협력”을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li> </ul>		

구분	연구결과		시사점
관광 공사 및 여행 업계	중국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단체관광 비자 발급은 사드 영향으로 단체관광객이 감소하고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체제 국내 안착으로 특별한 현안이나 건의사항 없음</li> <li>•개별관광 비자개선에 대한 의견이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관련 준비서류 간소화 필요</li> <li>-원본 이외 사본 인정</li> <li>-재정 능력 입증 서류 범위 다양화 요청</li> </ul> </li> <li>•신규비자신청 센터 비자발급 기간 단축 필요</li> <li>•코로나 이후 비자수수료 인하 등의 프로모션 건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테크(알리페이 신용등급) 활용을 통한 재정능력 검증 시스템 도입 필요(제4차국가 관광전략회의 과제)</li> <li>•코로나 이후 시장 회복을 위해 적극적 수수료 정책 필요</li> </ul>
	동남아 및 인도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자 담당인력 문제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증하는 비자신청 수용능력 초과, 코로나 안정 후 동일 문제 재발 우려</li> </ul> </li> <li>•일본 대비 비자발급 까다로움 (인도네시아)</li> <li>•단체관광비자 범위 확대(필리핀 &amp; 인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자인력 소속충원 필요</li> <li>•국가별 현안에 맞는 개선방안 추진</li> </ul>
방한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자발급 형태 및 경로: 현 방한시장 관광 현황 반영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개별시장 비율 높고 동남아는 개별시장 발달 중</li> </ul> </li> <li>•비자발급 소요기간: 필리핀이 제일 지연</li> <li>•경쟁국가(일본, 대만) 대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의적인 차이 없으며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자여권 조건부 비자면제로 일본에 대한 상대적 호감 높음</li> </ul> </li> <li>•비자발급 불편사항: 신청서류 복잡함(공통), 발급기간(필리핀) 비자비용(인도네시아)</li> <li>•비자준비서류-재정서류 준비가 가장 어려움 (특히 중국)</li> <li>•비자발급이 여행에 제약정도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와 필리핀이 상대적 부담감이 큼</li> </ul> </li> <li>•무비자 실행 시 재방문 의향 -조사 국가 모두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한시장 및 공사, 업계조사 결과와 일치 부분 문제에 집중 필요</li> <li>1. 비자발급 기간 단축을 위한 동남아 영사충원</li> <li>2. 중국지역 재정능력 입증 방안 다양화 및 간소화 추진</li> </ul>

## 2. 기본방향 설정

앞에서 정리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비자개선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 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비자 인프라 구축

비자개선 기본방향의 첫 번째 원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비자개선 인프라의 구축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방한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부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관광도구화 전략에 따른 방한중국시장 변화(단체관광객 침체, 개별관광시장 주류), 중국 의존도 탈피를 위한 주변 국가들의 동남아관광객 유치 경쟁 등 시장 환경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비자발급 시스템은 점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되면서 종이비자에서 전자비자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도 심사체계는 여전히 오프라인의 재외공관 위주이기는 하지만 공관에서 발급하는 스티커 방식은 이제 폐지되었고 심사는 오프라인에서 하더라도 발급은 온라인을 통한 개인발급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온라인 기반의 비자발급 시스템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장변화와 발급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비자개선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비자개선은 이루어져야 한다.

### 나.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는 비자개선 추진

비자개선을 추진 할 때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는 전략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국, 동남아3개국, 인도에서 비자와 관련된 현안이 조금씩 다르며 개선에 대한 시급성도 우선 순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국가별 상황은 해당 국가의 아웃바운드 시장발전 단계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지 대사관의 비자발급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도 관련이 된다. 특히 비자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등을 구별하려면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다. 비자개선 협력 시스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마지막 세 번째의 기본방향은 비자개선을 위한 협력 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이다. 비자개선은 무비자 실시와 같은 비자의 전면적 폐지가 아니라 비자완화처럼 단계적 조치가 행해지는 경우가 중국과 동남아, 인도에서는 현실인데 이러한 단계적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들과의 협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그러한 협력시스템을 통해서 추진된 비자개선조치가 실제로 효과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야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 제2절 비자제도 개선방안

### 1. 중국

중국은 이제 대도시들은 단체 패키지 관광위주로 운영되는 해외여행 초기 단계를 벗어나서 개별관광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방한시장에서 중국의 이러한 특색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드의 영향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한한령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현재처럼 개별관광객 우위의 시장이 이어질 것이며 중국 밀레니얼 여성 중심의 시장이 계속될 것이므로 이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개별복수비자 개선에 집중한다. 또한 내륙 2, 3선 도시의 아웃바운드 시장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 비자 발급인프라(영사관 개설 또는 비자신청센터) 확충에 관심을 가지며 향후 한한령 해제 후에는 단체관광비자 개선에도 필요하다. 그러나 비자면제에 관한 것은 고소득 지역에 한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이다.

따라서 비자개선과 관련된 문제들도 시장 초기에서 나타나는 대응방안(비자신청센터 설치, 온라인 비자도입 등)이 아닌 개별관광 비자와 관련된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가. 비자신청 자료 간소화

관광공사 지사와 여행업계에서 가장 많이 건의된 사항이 비자신청 자료의 간소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단수비자의 경우는 비교적 제출서류가 간단하지만 복수비자의 경우는 여전히 제출서류가 까다롭고 일본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인식이 있다.

특히 지역에 따라서 신분증이나 재정, 교육 증명서의 원본만을 인정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외공관장의 재량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을 통일화시키는 어렵다.<sup>86)</sup> 따라서 대안으로 우선 사본 인정의 시범실시 등을 통

해 그 경과를 지켜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해당 지역도 사본의 사용을 정착화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 나. 중국 핀 테크(Fin-tech) 기술을 활용한 재정능력 확인

중국 현지 조사에서 나타난 사례처럼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업이 없어 재직증명서를 마련하지 못 하여 비자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 은행거래내역을 원본만 인정하고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동자산은 불인정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중국의 앞선 핀 테크 기술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중국은 현재 한국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그림 6-1] 알리페이 즈마 신용등급별 분류



출처: 알리페이 즈마(zhima) 신용평가사(<https://d.alipay.com/zhima/noauth.htm>)

86) 비자신청 자료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일화시켜버리면 자료 제출의 기준이 쉬운 기준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기준으로 상향 평준화 되기 싫다(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인터뷰)

이러한 간편 결제들은 자체적인 개인신용평가 회사들을 구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CB(Credit Bureau)회사들은 중국정부에서도 공식적인 신용평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들의 경우 등급점수 증명서를 제출하면 이를 재정능력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미 2019년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추진하겠다고 한 과제이므로 코로나 종식 후에 조속하게 추진한다.

#### **다. 중국 2, 3선 도시들에 대한 개별복수비자 적용 확대**

중국의 상하이, 북경과 같은 1선 도시들은 이미 아웃바운드 관광 초기단계를 지났고 이 지역의 거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개별복수비자를 발급 받기가 용이하다. 이에 비하여 2, 3선 도시들은 이제 아웃바운드 관광이 시작되고 있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근거리 지역의 해외여행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관광공사 지사들의 의견에서도 확인된 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지역은 1선 도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개별 복수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편인데, 비자발급 기준을 2, 3선 도시더라도 전문직, 고자산가들에 대해서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 **라. 중국 관광객 비자 면제는 중장기 과제로 접근**

한국과 중국은 2014. 7. 4.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비자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 할 것을 합의하였고, 현재 외교여권과 관용여권에 대해서는 비자면제가 체결 중이지만 일반 여권은 아직 비자면제가 체결되지 않았다. 이후 비자 면제는 체결되지 않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광비자의 복수비자 유효기간이 점차 확대되어 현재 전문직업인이나 한국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는 10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비자면제의 파급효과는 비자간소화보다 관광객 유치에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비자 면제의 경우 간소화와 다르게 현재 한국과 중국의 경제소득차이를 고려할 때 불법 체류객의 증가가 급증할 수 있고, 일단 면제협정을 체결하면 그것을 다시 폐지하

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 관광객 비자면제에 관한 사항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실행하더라도 전면적 실시보다는 중국 1선도시의 특정계층(ex: 전문직, 신용등급 우수자)을 대상으로 ETA(전자여행허가증)와 병행하여 시범실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동남아 3국 및 인도

### 가. 공통사항

#### 1) 비자담당 인력의 조속한 확충

동남아 3국의 비자인력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급 지역 문제는 법무부, 관광공사와 업계,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된 사항이며 3국에 모두 공통된 문제이다. 필리핀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장기간의 비자 발급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는 행안부와 기재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 2) 온라인 단체관광비자 활성화

2019년에 동남아시아 3개국과 인도도 온라인을 통한 단체관광비자이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에 비하여 활용이 미비하다. 물론 제도를 실시한 지만 1년이 되기도 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유가 가장 크지만, 한국과 중국의 협이에 따라 전담여행사를 두는 체계가 자리 잡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 온라인 단체관광비자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일단 중국처럼 동남아도 여행사 관리가 자리가 잡혀야 한다.

물론 중국처럼 전담여행사 제도까지 둘 필요는 없겠지만 관광객 이탈 등이 발생하는 여행사는 송출 여행사와 국내 여행사 양쪽에 제재를 가하는 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페널티 방식은 초기에는 여행사에 부담만을 가하는 것이므로 1년 정도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단체관광비자 신청시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통하여 일단 온라인 이용도를 높이고 그 다음 관리를 하는 단계적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온라인의 활용도 증가는 오프라인 재외공관에서 영사의 비자 행정부담을 감소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 3) 비자신청센터 활용도 제고

비자신청센터는 온라인 비자시스템과 더불어 재외공관의 비자에 관한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비자발급의 쉰 단계에서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이 비자신청 단계로서 신청 서류미비나 신청서 작성 오류 등으로 접수 자체가 거절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데 전문비자신청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신용석·김현주, 2012) 동남아시아는 중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비자신청센터의 설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확충이 필요하다. 인도는 법무부와 외교부의 공고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현지 대사관에서 자체적으로 외국 업체인 VFS Global을 이용하고 있는데 동남아 3국 처럼 공고입찰을 통해 국내 업체를 이용한 전문비자신청센터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복수비자 대상 확대

동남아 3국은 아직 중국에 비하여 복수비자 대상이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5년 비자를 전문직이나 공무원 이외 고소득자(연 60,000위안)이나 고액자산가(200만 위안)에게도 발급하고 있는데 동남아 3국은 지금까지 복수비자 요건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지난 2019년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동남아 3국도 고소득자(개인자산 20만불 이상)와 현지 주요 기업 과장급 이상에게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기로 발표하였다. 코로나로 중단되었지만, 향후 코로나 종식 후 동남아 3국의 복수비자 대상 확대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나. 국가별 개별사항

### 1) 베트남

베트남은 최근 들어 대도시(하노이, 호치민, 다낭) 거주자들에 대하여 개별복수비자의 발급기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자발급 완화조치에 따라 비자신청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일 처리건의 한계를 넘어가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이에 다낭 총영사관 개소와 함께 베트남 현지공관(하노이 대사관, 호치민 총영사관)에 대한 비자인력을 충원하기로 계획했지만 코로나 발생으로 보류가 되고 있는데, 향후 코로나 종료 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원 문제를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 2) 인도네시아

일본은 전자여권을 소지한 인도네시아 국민이 사전에 일본대사관에 여권을 등록(수수료 면제)할 경우 15일간 무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도 선진국 영주권이나 비자 소지하거나 과거 대만 비자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온라인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인도네시아 대상의 비자면제는 일반적 완전한 비자면제가 아니라 조건부 비자면제이기는 하지만 한국 보다는 완화된 것이기는 하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들 중에 비자 거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범 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3) 필리핀

현재 기업/수학여행 단체만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단체전자비자 발급 대상을 가족 FIT 나 방한상품 구매 단체로 확대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 문제는 앞서 언급하였던 동남아 온라인 관광비자활성화와 연계되는 사항이다. 여행사의 관리가 정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분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단체에는 단체비자 발급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다만 가족여행 중심의 필리핀 여행특성을 고려할 때 가족 FIT 에게는 온라인 관광비자 발급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만, 과거에 가족이 방한하여 일부

는 이탈하는 사례도 있어<sup>87)</sup> 전면적인 실시보다 시범실시 후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남아 (전남)여행사 관리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 4) 인도

인도의 경우도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단체관광 전자비자의 발급 대상 확대에 대한 건의가 있는데 역시 동일한 사항이다. 현재 5인 이상의 단체비자를 MICE 단체, 수학여행단, 시찰단에겐만 적용하는 것을 다른 단체로 확대시켜달라는 건의사항이 인도에도 있다.

그러나 대상 확대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범위가 확대된 인도 단체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이탈하지 않는 관리의 문제가 역시 필리핀처럼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도 방한관광시장은 비즈니스 여행객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자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향후 순수관광 여행객이 증가한다면, 이는 단체관광비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다.

### 3. 기타 개선사안

#### 가. 문체부-법무부 비자 협력 시스템 구축

비자개선은 법무부의 협조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도개선만이 아니라 사업 수립을 위한 비자발급 등의 기초적인 통계조차도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비자제도 개선이나 관련 통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문체부와 법무부간에 상시적인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우선 양 부처간에 협력각서(MOU) 체결을 통해 협력 원칙에 합의하고 비자개선은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상시적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사항은 첫째는 비자 관련 통계의 정기적 공유이다. 비자발급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가 없이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

---

87) 관광공사 전 필리핀 지사장 인터뷰

기는 어렵다. 둘째는 각 국가별 현안에 관한 것으로 현재는 동남아 3개국들의 단체 전자비자 현안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단체전자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와 여행사의 관리 문제에 대한 법무부-문체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 나.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비자만족도 조사 문항 추가

비자제도 개선의 효과측정을 위해서는 관광객 증가 추이를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외부간섭효과로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 따라서 관광객들의 비자발급 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효과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문항에 비자발급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는 비자에 관한 문항이 따로 없고 ‘출입국절차(수속, 비자)’로 묶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으로는 비자발급에 대한 만족도의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없다. 또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가 행해지는 장소가 출국 심사 후 탑승 대기장소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출입국절차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비자발급절차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우리나라의 빠른 출국 심사에 근거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자에 관한 질문 문항을 별도로 뽑아서 조사하고 매년 국가별 비자발급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코로나 종식 이후 시장회복을 위한 비자 특별 프로그램 실시

향후 코로나 종식 이후 인바운드 시장 회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비자 수수료 면제를 통해 방한 시장에 이벤트 효과를 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과거 2015년 메르스 발생으로 관광객 방문객이 감소하여 국내 관광산업이 위축되었을 때 법무부에서는 관광산업 지원을 위하여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5개국의 단체관광비자 신청 수수료 한시적 면제와 단수비자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허용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과거 메르스에 비하여 그 기간도 길고 영향도 더 크므로 코로나 종식 후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비자 특별 프로그램 실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책방안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6-2〉 방한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적용	해당국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비자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환경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방한중국시장 성장, 2,3선 도시성장</li> <li>- 脫 중국 동남아 유치경쟁 치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3선 도시들에 대한 개별복수비자 완화</li> </ul> </li> <li>• 동남아3국(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담당인력 강화로 발급기간 단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환경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기반 비자발급시스템 강화 추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아3국 및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단체관광 비자활용도 제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발생으로 인한 시장회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종식 후 비자수수료 면제 Promotion 추진</li> </ul>
국가별 상황고려 비자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별 주요 현안 및 우선순위에 따른 비자제도 개선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신청자료 간소화 (사본인정과 핀테크 기술활용)</li> <li>- 비자면제는 중장기과제로 추진</li> </ul> </li> <li>• 동남아3국 및 인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담당인력, 비자신청센터, 복수비자 대상 확대</li> </ul> </li> <li>•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여권등록자에 한한 비자면제 시범실시 고려</li> </ul> </li> <li>•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관광 비자발급대상 확대 시범실시</li> </ul> </li> <li>•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관광 비자발급대상 확대 시범실시</li> </ul> </li> </ul>
비자개선 협력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 주무부처와의 협력 시스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문체부 비자개선을 위한 상시협의회 마련</li> <li>- 비지관련 기초통계 공유 및 현안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개선 모니터링 시스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외래관광객실태조사&gt; 비자만족도 조사문항 추가</li> </ul>



방한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연구

제7장

결론 및 제언



비자는 국가 간 이동에서 기본적으로 여권과 함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서류로서, (관광)비자제도 개선이란 이러한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의 편의를 높여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시키고 시장을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이유는 비자가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사항으로 관광시장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가 필요 없는 국가는 여권만 있으면 떠날 수 있지만, 만일 비자를 요구하게 되면 여행자는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 받아야 해서 시간과 금전 면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최근 중국과의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 단체관광 시장 위축에 따른 동남아 시장 다변화를 계기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 등 경쟁국에서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어 비자개선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중국, 동남아 3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를 대상으로 각 국가의 아웃바운드 및 방한 시장 특성, 우리나라의 비자개선현황과 제약요인, 그리고 경쟁국인 일본, 대만, 태국의 비자개선 사례, 마지막으로 비자관련 이해관계자(정부부처, 관광공사 및 업계, 관광객)들의 비자에 관한 의견조사 등을 실시하여 방한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비자개선 노력은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서 뒤처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비자 개방도 역시 OECD 국가 중에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의 주요 시장인 중국, 동남아 3국 등이 방문 시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 제약 체감도는 높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수준인 국가들은 모두 비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경쟁국 대비 매우 미흡한 부분은 최근 비자신청이 급증한 동남아 지역의 비자 담당인력 부족으로 이러한 사항은 시급히 조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자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은 한국관광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비자발급 대기기간이 장기화되면 한국방문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재정증명과 같은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중국의 발달된 핀테크 기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비자개선의 영향력은 관광시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송출 국가의 경제소득 증가나 코로나 같은 질병의 영향력에 비하면 부차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자개선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소득 증가와 같은 외부변수는 방문국가에서 개입할 방법이 없지만 비자개선은 정책관여를 통해 정책도구로서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관여는 우리나라에서 비자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문체부는 법무부와 기초 통계 공유, 해당 사안 협의를 위한 상시 협력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비자개선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외래관광객실태조사>에 비자만족도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비자정책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 점이 본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

## 참고문헌

- 김현주·최경은(2016), 「중국관광환경 및 시장분석」,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형중(2019), “세계열 데이터로 바라본 중국인 방한관광”, 문화관광인사이트 134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신용석·김덕기·오유라(2017), 「해외국가 인바운드 정책 및 시장사례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신용석·김현주(2012),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국 비자제도 개선사례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유민이·이정우(2019), 「무사증 입국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 IOM이민정책연구원.
- 유지운·윤주(2019), 「동남아관광시장분석: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강욱(2017), 「국제관광수요 영향요인 분석」,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창원·최서리(2018), 「불법체류 관리방안으로서의 합법화와 귀환지원: 해외사례 분석과 한국에의 제언」, 서울: IOM이민정책연구원.
- 조아라(2015), “방한 시장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본 일본의 인바운드 관광시장 분석” 가치와 전망 제57호(2015-0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하봉주 외 6인(2014), 「불법체류자 비용 및 편익분석 연구」, 서울: 법무부.
- 법무부(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9),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 최경은·박진호(2016), 「중국인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현황과 시사점」, 한국은행 제주본부.
- 최경은(2019), 「외국계 OTA와 관광숙박업체 거래구조 분석」,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관광공사(2019), 「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분석」, 서울: 한국관광공사.

- UNWTO(2013), 「Visa Facilitation: Stimulating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 Tourism」.
- UNWTO(2020)-a,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Data 2014-2018」, 2020 Edition.
- UNWTO(2020)-b, 「Yearbook of Tourism Statistics Data 2014-2018」, 2020 Edition.
- WTTC(2019), 「Visa Facilitation - Enabling Travel & Job Creation Through Secure & Seamless Cross-border Travel」.

---

# ABSTRACT

## **VISA Program Improvement for the Expansion of Korea's Inbound Marke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lan for VISA program improvement to expand Korea's inbound marke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present Korean inbound market focused on China, Vietnam, Indonesia, Philippine, and India firstly. Secondly, it also reviewed that how the Tourist VISA system has evolved, Thirdly, the analysis of stakeholder such as the Ministry of Law, Korea Tourism Organization, Travel company, and the tourists was done.

Based on the analysis, this research suggests the plan to improve the process of tourist VISA to Korea such as the Increase the number of consulates in charge of VISA, the expansion of VISA application center in South-east Asia, simplified supplementary documents, and the construct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Law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eyword**

Visa Program Improvement, Inbound Market, E-VISA, China, Vietnam, Indonesia, Philippine, India



방한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연구



**부록**



## 【부록1】 설문지(Web-based survey)

### 방한관광객 비자관련 의견조사 설문지

ID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정부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한국관광 방문비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설문에 대한 답변은 비밀이 보장되고 오직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로직: 2002 이상이면 면접 중단]

**선문1.** 귀하의 생년월은 언제인가요?

1. ( ) 년 [로직: 1900 to 2010]

[로직: 응답에서 한국이 없을 경우 면접 중단]

**선문2.** 2017년~2020년 사이에 관광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국가를 모두 말씀해 주세요.

[랜덤]

1. 한국
2. 일본
3. 대만
4. 위 국가 중 발급 받은 적은 없음 [랜덤고정] [중복선택불가] → 면접중단

**문1.** 귀하께서 한국을 관광으로 방문한 시기 별로 발급받은 비자의 종류를 표시해 주십시오.  
여러 유형의 비자를 발급 받았을 경우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

	개별 단수비자	개별 복수비자	단체비자	발급한 적 없음
	1	2	3	4
1. 2017				
2. 2018				
3. 2019				
4. 2020				

**문2.** 귀하께서는 가장 최근에 비자를 어떤 경로로 발급받으셨습니까?

1. 본인이 직접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 후 발급
2.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여 대행발급
3. 전담 비자신청센터를 이용하여 신청 후 발급
4. 기타 ( )

**문3.**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며칠입니까?  
(휴일 제외 근무일 기준입니다.)

1. 5일 이내
2. 5일 이상~10일 이내
3. 10일 이상~15일 이내
4. 15일 이상

[로직: 선문2=2, 3 응답자만]

[로직: 문4~문4-3은 선문2 응답 국가별로 각각 제시]

**문4.** 2017~2020년 사이에 [제시: 선문2 응답]을 여행하신 연도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 2017년
2. 2018년
3. 2019년
4. 2020년

[로직: 선문2=2, 3 응답자만]

**문4-1.** 귀하께서는 과거에 여행한 [제시: 선문2 응답]과 비교하여 한국의 비자 발급 소요기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척도]

1. 매우 느리다
2. 약간 느리다
3. 비슷하다
4. 약간 빠르다
5. 매우 빠르다

[로직: 선문2=2, 3 응답자만]

**문4-2.** 귀하께서는 과거에 여행한 [제시: 선문2 응답]과 비교하여 한국의 비자발급비용(대사관 발급 수수료+비자센터 또는 여행사 대행 수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척도]

1. 매우 싸다
2. 약간 싸다
3. 비슷하다
4. 약간 비싸다
5. 매우 비싸다

[로직: 선문2=2, 3 응답자만]

**문4-3.** 귀하께서는 과거에 여행한 [제시: 선문2 응답]과 비교하여 비자발급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다른 국가들보다 비자 발급과정이 더 편리했다
2. 다른 국가들과 비자 발급과정이 비슷했다
3. 다른 국가들보다 비자 발급과정이 더 불편했다

**문5.** 귀하께서 비자발급과정에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신 게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 비자발급 기간이 너무 길다
2. 비자발급 총 비용이 부담스럽다
3. 비자신청 준비서류가 복잡하다
4. 기타 ( )

**문6.** 귀하께서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가장 준비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 재직증명서
2. 재정증명서
3. 기타 ( )

**문7.** 귀하께서 과거 한국을 여행하시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여행 준비 과정에서 큰 불편사항이었습니까? **[단일척도]**

1. 매우 큰 불편사항이었다
2. 약간 불편사항이었다
3. 보통이었다
4. 별로 불편사항이 아니었다
5. 전혀 불편사항이 아니었다

**문8.** 만일 한국을 관광할 때 무비자 정책이 실시되어 비자가 필요 없어진다면 귀하께서는 한국을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단일척도]**

1. 재방문할 의향이 매우 있다
2. 재방문할 의향이 약간 있다
3. 보통이다
4. 재방문할 의향이 별로 없다
5. 재방문할 의향이 전혀 없다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

**DQ1.** 귀하의 국적과 비자를 신청한 도시를 적어주십시오.

1. 국적 ( )
2. 비자 신청 도시 ( )

**D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DQ3.**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DQ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학교 재학
4. 대졸 이상
5. 석사 졸업 이상

**DQ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공무원/군인
2. 기업인/관리직
3. 사무/기술직
4. 판매/서비스직
5. 전문직(교수, 의사, 법률가 등)
6. 생산/기능/노무직
7. 자영업자
8. 학생
9. 주부

10. 은퇴자
11. 무직
12. 기타 ( )

**[로직: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설문 제시]**

**DQ6.** 귀하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1. 199 US dollar 이하
2. 200~299 US dollar
3. 300~399 US dollar
4. 400~499 US dollar
5. 500~699 US dollar
6. 700~999 US dollar
7. 1,000~1,499 US dollar
8. 1,500~1,999 US dollar
9. 2,000 US dollar 이상

**[로직: 중국 설문 제시]**

**DQ6.** 귀하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1. 400 US dollar 이하
2. 400~699 US dollar
3. 700~999 US dollar
4. 1,000~1,499 US dollar
5. 1,500~1,999 US dollar
6. 2,000~2,499 US dollar
7. 2,500~2,999 US dollar
8. 3,000~3,999 US dollar
9. 4,000 US dollar 이상

## 【부록2】 우리나라 사증(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 리스트

### ◆사증(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 일람표(2020.2.12. 현재 110개국)◆

구분	외교여권	관용여권	일반여권	선원수첩
국가 수	110	108	69	21
비고	* 발효 대기 포함 (에티오피아 2019.08.26. 서명)	* 발효 대기 포함 (에티오피아 2019.08.26. 서명)	* 일시정지 포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라이베리아)	

대륙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아 시 아 주  (9, 27, 9, 2)	라오스	외교, 관용	90일	'09.06.26.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말레이시아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83.09.09.	
	몽골	외교, 관용	90일	'12.12.26.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단기사증 발급수수료 면제
	미얀마	외교, 관용	90일	'11.04.01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방글라데시	외교, 관용, 일반	90일	'83.03.17	※ '08.7.15 일반여권 및 선원수첩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불체금증 사유)
		선원수첩	15일		
	베트남	외교, 관용	90일	'99.01.13.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싱가포르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11.01.	
	아르메니아	외교, 관용	90일	'12.05.22.	
	아랍에미리트	외교, 관용, 특별, 일반	90일	'16.09.21.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오만	외교, 관용, 특별 및 공무	90일	'15.04.11.	
	우즈베키스탄	외교	60일	'09.06.10.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이란	외교, 관용	3개월	'76.12.21.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이스라엘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5.24.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91일 이상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인도	외교, 관용	90일	'05.10.03.	
	인도네시아	외교, 관용, 공무	30일	'20.02.12.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일본	외교, 관용	90일	'98.12.07.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조지아	외교, 관용	90일	'13.04.01.		
중국	외교	30일	'13.08.18.		
	관용	30일	'14.12.25.		



(표 계속)

미 주 (30, 30, 25, 15)	바베이도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84.03.11.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바하마	외교, 관용, 일반	90일	'88.09.04.	
		선원수첩	15일	'94.11.03.	
	베네수엘라	외교, 관용	30일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일반	90일	'07.12.22.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관용여권에 한함)
	벨리즈	외교, 관용	90일	'07.02.08.	
	볼리비아	외교, 관용	90일	'11.04.18.	※ 파견국 영사관의 외교공한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가능
	브라질	외교, 관용	90일	'92.02.10.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일반	90일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세인트루시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7.06.	
		선원수첩	15일		
	세인트키츠 네비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수리남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6.08.03.	○ 재입국허가 면제
	아이티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21.	
		선원수첩	15일		
	아르헨티나	외교, 관용	90일	'04.07.31.	
	앤티가 바부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2.29.	
		선원수첩	15일		
	에콰도르	외교	제한없음	'86.05.29.	
		관용	3개월		
	엘살바도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7.02.14.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선원수첩	15일		
우루과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01.19. '13.01.10.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1.27.		
자메이카	외교, 관용, 일반	90일			
	선원수첩	15일			
칠레	외교, 관용	90일	'00.07.18.	○ 재입국허가 면제 (단, C-2, D-7, D-8, D-9에 한함)	
	일반	90일	'04.10.20.		

(표 계속)

미	코스타리카	외교, 관용, 일반	90일	'81.10.22.	
		선원수첩	15일		
주	콜롬비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81.12.25.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0.15.	
(30,	트리니다드 토바고	외교, 관용, 일반	90일		
		선원수첩	15일		
30,	파나마	외교, 관용, 일반	90일	'01.08.09.	
25,	파라과이	외교, 관용	90일	'83.01.01.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관용여권에 한함)
15)	페루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6.12.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유	그리스	외교, 관용	제한없음	'74.05.15.	
		일반	3개월	'79.02.25.	
럽	네덜란드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주	덴마크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외교, 관용	제한없음	'62.01.01.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36,	독일	일반	90일	'74.01.24.	○ 재입국허가 면제: '97.4.14.
		외교, 관용, 일반	90일	'03.06.27.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36,	러시아	외교, 관용	90일	'04.11.20.	※ 2006.12.31. 관용 추가 협정
		일반	60일	'14.01.01.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36,	루마니아	외교, 관용	90일	'96.06.06.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일반	90일	'16.03.13.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30,	룩셈부르크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외교, 관용, 일반	90일	'02.05.09.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2)	리투아니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79.06.28.	○ 재입국허가 면제
		외교, 관용	90일	'12.07.03.	
몰도바	몰타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0.23.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벨기에	벨라루스	외교, 관용	90일	'08.07.24.	※ 조약 제 1902호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08.13.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외교, 관용	90일	'00.12.16.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스웨덴	스위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79.06.28.	○ 재입국허가 면제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표 계속)

유 럽 주 2) 36, 30, 2) 아 프 리 카 주 2) 13, 13, 4, 2)	스페인	외교, 관용, 일반	90일	'72.04.08.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75.04.18.	
	슬로바키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7.15.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아이슬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70.04.01.	
	아일랜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89.07.12.	
	아제르바이잔	외교, 관용	30일	'08.11.21.	
	에스토니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1.08.18.	
	영국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2.19.	
	오스트리아	외교, 관용	180일	'79.06.25.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일반	90일		
	우크라이나	외교, 공무	90일	'14.09.17.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이탈리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75.05.05.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2003.6.15.)
	체코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1.05.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크로아티아	외교, 관용	90일	'01.06.16.	
	포르투갈	외교, 관용, 일반	60일	'79.09.19.	○ 마카오 제외
		선원수첩	15일		
	폴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2.24.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프랑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67.04.12. ( '8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핀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74.03.01.	○ 재입국허가 면제
	헝가리	외교, 관용, 일반	90일	'91.04.25.	
가봉	외교, 관용	90일	'13.08.14.		
라이베리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9.23.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19.7.18. 일반여권 및 선원수첩 소지자에 사증면제 일시중지(반사회 범죄, 불체 증가 사유)	
	선원수첩	15일			
레소토	외교, 관용, 일반	60일	'71.09.05.		
모로코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09.01.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2000.8.3. 추가 협정)	
	선원수첩	15일			
베냉	외교, 관용	90일	'92.07.01.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알제리	외교, 관용	90일	'06.08.30.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앙골라	외교, 관용	30일	'12.05.25.		

(표 계속)

	이집트	외교, 관용	90일	'98.06.24.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튀니지	외교, 관용, 일반	30일	'69.08.17.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재입국허가수수료 면제 ○ 30일 이상 체류시 연장수수료 면제(단, 6개월 초과 불가)
	카보베르데	외교, 관용	90일	'15.10.14.	
	모잠비크	외교, 관용	90일	'17.02.16.	
	탄자니아	외교, 관용	90일	'18.10.05.	
				-	※ '19.08.26. 협정 서명, 발효 대기
대양주	뉴질랜드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뉴질랜드의 ISLANDS, NIUE, TOKELAU 제외
	바누아트	외교, 관용	90일		

## 【부록3】 주요국가 방한관광비자 신청현황 및 필요서류<sup>88)</sup>

### 1. 중국

#### 가. 단수-단기방문 (C-3-9):

- 발급 소요시간 근무일 기준 4일(베이징)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관광	단체관광 (C-3-2)	- 한중 양국정부 지정 전담여행사가 초청하는 3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	※ 단체관광온라인비자 가능(법무부 전자비자센터)
	일반관광 (C-3-9)	-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 하려는 자	- 재정능력 입증서류 ① (원칙) 사회보험가입증명 및 재직증명 제출 ② (위 서류가 없는 경우) 급여(소득)입금사실 확인 · 가능한 최근 6개월분의 은행거래내역서 원본 및 최근 6개월간의 개인소득세 납부증명 원본

#### 나. 복수-단기방문 (C-3)

- 발급 소요시간 근무일 기준 4일(베이징) \*단, 발급 소요일은 영사관별 상이

##### 1) 공통 (단기일반)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88) 출처: 관광공사 해당국가 지사 및 한국대사관 자료(2020.05 기준)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단기일반 (C-3-1)	① 대학(전문대학 포함) 강사* 등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 * 조교수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10년 복수사증 발급 가능	교원, 교사 자격증 원/사본 및 재직 입증서류	
	②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특정단체(협회 등)의 회원증 또는 기타 신분입증서류	
	③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가이드로 3회 이상 입국한 적이 있는 자	가이드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④ 우리나라 방문경력이 있는 자 -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제외 - 단체, 개별보증 사증만으로 입국한 경력은 2016.1.27.이전 국내 입국경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 -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	출입국사실 입증서류 (사증 사본 등)  ※ 의료관광의 경우 진료비 입증 자료 추가 제출	
	일반관광 (C-3-9)	⑤ OECD 22개 국가의 방문사증(단체사증 제외)을 소지하고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1. 출입국사실 입증서류 - OECD 국가 사증 및 출입국 스탬프 원사본
			2. 출입국기록 조회서(공안국 발급) - 제3국을 경유하여 OECD 국가에 입국한 경우에는 OECD 국가로의 출입국경로가 확인되는 여행경로 확인서류(항공권 등) 추가 제출
	단기상용 (C-3-4)	⑥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 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	1. 거래실적 입증서류 (수출입신고필증 등) 2.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⑦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200만 위안 이상 보유한 것을 입증한 자	재산입증자료
		⑧ 중국 공무원 또는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재직증명서
		⑨ 100만불(10억원)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투자입증서류 및 재직증명서
⑩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항공사선사의 임직원 (정기·전세기·부정기 등 불문)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 및 재직증명서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재외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카드사용내역서(최근6개월) 및 카드사본
	② 월 5,000위안(연 60,000위안)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소득 입증 공적서류(최근 6개월의 개인소득세 납세증명 등)
	③ 17세 미만, 55세 이상인 자	위 공통서류만 제출
	④ 4년제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중국고등교육학생정보망(학신망)의 전자학력인증서류 (www.chsi.com.cn에서 출력)
	⑤ 중국기업연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a href="http://www.cec-ceda.org.cn">http://www.cec-ceda.org.cn</a> 참조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⑥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구매자* * 취득세 납부사실 증명서로 확인	취득세 납부증명서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원본/사본
	⑦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 입증서류(호구부 원본 등)
	⑧ 베이징, 상하이, 충칭, 선전, 광저우, 쑤저우, 샤먼, 톈진*, 난징, 항저우, 닝보, 우한, 창사, 칭다오 호구자(톈진은 제외지역 있음)	신분증 원본

#### 다. 비자 수수료

사 증 유 형		수수료
단수사증	단기사증 (체류기간 90일 이내)	280원
	장기사증 (체류기간 91일 이상)	420원
더블사증	개별사증	490원
복수사증(장, 단기 포함)		630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140원

## 2. 베트남

구분	내용
발급 소요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노이) 지정 여행사 8일, 비지정 여행사 10일</li> <li>• (호치민) 지정 여행사 6일, 비지정 여행사 8일</li> </ul>
신청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센터 서비스 수수료: 390,000VND (한화 약 19,500원)</li> <li>• 영사심사 수수료: 단순 - USD 20, 복수 - USD 80</li> </ul>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증 종류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며 단체관광비자는 아래 제시한 서류에서 좀 더 간단함</li> <li>1. 여권 원본 및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li> <li>2. 사증발급신청서(사진1매 3.5x4.5cm 포함)</li> <li>3. 직업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자: 재직증명서류</li> <li>+ 노동계약서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본) 필수</li> <li>+ 회사 재직증명서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본), 회사 월급명세서 (최근 3개월), 월급통장 거래내역 (최근 3개월) (3개의 서류 중 1개만 제출)</li> <li>- 사업자: 회사 사업자등록증명서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공증), 회사 납세증명서 (영어/한국어 번역+공증) 및 회사 통장 거래내역</li> <li>- 학생: 학생증(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영어/한국어 번역)</li> <li>- 퇴직자: 퇴직연금수령사실확인서(영어 또는 한글번역공증), 퇴직증명서, 사회보험증서 (영어 또는 한글번역공증) (3개의 서류중 1개만 제출)</li> <li>- 무직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지역 공안 경찰서를 통해 무직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영어 또는 한글 번역공증 필)</li> </ul> </li> <li>4. 경제능력 입증서류               <p>&lt;경제능력입증서류 면제자&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베트남 (500대 이상) 기업체 대표 (관리직 직원 포함) 및 한국 투자 기업 소속 관리직 직원.</li> <li>2. 공무원·국영기업체 직원</li> <li>3. 은행잔고보유자 (10억동 이상의 베트남·한국계은행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li> <li>4. 기준 소득 또는 자산 이상 우수 신용카드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미화 8천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 (골드 및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li> </ul> </li> <li>5. 전문직, 유력인사, 문화, 체육, 예술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직의 종류와 공관장 인정범위는 신청인이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관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고지</li> </ul> </li> <li>6. 우리나라에서 유학하여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사람</li> <li>7. 퇴직후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li> <li>8. 기자, PD 등 언론기관 종사자</li> <li>9. OECD 국가 방문 경력·영주권 보유자 등</li> </ol> </li> </ul>

### 3. 인도네시아

구분	내용
접수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신청센터(일반)</li> <li>- 인센티브 단체는 지정여행사가 온라인으로 신청</li> </ul>
비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신청센터 운영('19년 5월~)</li> <li>- 자카르타 시내 롯데쇼핑몰</li> </ul>
발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수: 7일</li> <li>• 복수/단체/전자: 3일</li> </ul>
발급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수: 약 6.5만(원화)</li> <li>• 복수: 약 12.7만(원화)</li> </ul>
신청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133,478건( 1.9% ↑)</li> <li>• '18년: 157,924건(18.3% ↑)</li> </ul>

### 4. 필리핀

구분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자격 총 36종</li> <li>• 관광목적 C-3비자 필요</li> <li>c.f.) 제주도 무비자입국 가능하나 필리핀-제주도 직항노선 無</li> </ul>
비자종류/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단수비자&gt;- 체류기간: 59일</li> <li>• &lt;복수비자&gt;1회 체류기간: 30일 (한국인 가족 등 59/90일 가능)</li> <li>• 유효기간: 5년/10년</li> <li>* 별도신청 없음, 영사판단의거 발급</li> <li>• 발급대상: 한국방문경력, OECD국가 방문경력, 정부 주요인사 등 약 13개 항목 및 해당 자의 직계가족</li> </ul>
신청절차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개 지정여행사 대행 (2018. 7. 1.부터 실시)</li> <li>* 대행 수수료 상한선 700페소</li> </ul>
신청절차 (단체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개 지정여행사 대행 (2019. 6. 26부터 실시)</li> <li>• 5인 이상의 20명 이하의 기업/학생 단체 동반 입출국 경우 대표 1명만 비자발급</li> </ul>
발급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수비자(59일 이하) 무료</li> <li>• 단수비자(60-90일) 2,000페소/ 단수비자(90일 이상) 3,000페소</li> </ul>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증발급 신청서(사진1매)/여권원본(6개월 이내)/신분증명서류(재직증명서 등)</li> <li>• 재정능력입증서류(소득세납부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3개월), 월급명세서 등)</li> </ul>

## 5. 인도

구분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자격 총 37종</li> <li>• 관광목적 C-3 비자 필요</li> </ul>
비자종류/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수 비자: 체류기간 최대 90일 또는 91일 이상</li> <li>• 더블 비자: 6개월이내 2회 체류 (1회 체류시 최대 30일)</li> <li>• 멀티플 입국 비자: 비자유효기간 1년, 2년, 5년 (영사 판단에 의거 발급)</li> <li>• 단체 비자: 단수비자와 동일</li> </ul>
신청절차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델리 관할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방문: VFS 센터 접수대행 ⇒ 주인도 한국대사관</li> <li>* 관용, 외교, 특수목적: 주인도 한국대사관 접수</li> </ul> </li> <li>• 뭄바이 관할지역: 뭄바이 총영사관 접수</li> <li>• 첸나이 관할지역: 첸나이 총영사관 접수</li> </ul>
신청절차 (단체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신청 절차와 동일</li> <li>• 다만 단체비자(인센티브, 수학여행)의 경우는 지정여행사(18개)에서 관할(주인도 한국대사관, 뭄바이총영사관, 첸나이총영사관)로 바로 신청(2019. 3. 4부터 실시)</li> </ul>
발급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수 비자(90일 이하): Rs 2,800</li> <li>• 단수 비자(91일 이상): Rs 4,200</li> <li>• 더블 비자: Rs 4,900</li> <li>• 멀티플 입국 비자: Rs 6,300</li> <li>• 단체 비자: US\$ 15 (Rs 1,100)</li> <li>• 급행 발급: Rs 2,100 (비자별 발급요금에 추가금액)</li> </ul>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증발급 신청서 (사진 1매)</li> <li>* 여권 원본 (6개월 이내)</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사본)</li> <li>* 납세증명(Income Tax Return) 최근 1년치 또는 은행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li> </ul> </li> <li>• 단체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증발급 신청서 (사진 1매)</li> <li>* 단체사증발급 신청서 1매 (개인별 신청서 및 사진은 필요 없음)</li> <li>* 단체 구성원의 여권</li> <li>* 수수료 1인당 15불 (Rs 1,100)</li> <li>* 기타 첨부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센티브 관광: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기업의 사증발급 요청서, 사업자등록증</li> <li>b) 구성원별 재정능력 입증서류(ITR 등), 단, 국영기업, 공기업, 상장기업인 경우 생략</li> </ol> </li> <li>2) 수학여행단: 학교의 사증발급 요청서</li> </ol> </li> </ul> </li> </ul>
처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비자: 근무일 기준 5일</li> <li>• 급행비자: 근무일 기준 2일</li> </ul>

## 집필내역

---

### 연구책임

신용석    관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제1장~제7장 전체

### 연구자문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우리나라 비자제도(제3장 제2절) 자문

강성재    한국관광공사 타이페이지사 차장: 대만 비자제도(제4장 제2절) 자문

## 방한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연구

---

발행인    김 대 관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0년 10월 19일

발행일    2020년 10월 19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SBN    978-89-6035-816-4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9>

www.kcti.re.kr

# VISA Program Improvement for the Expansion of Korea's Inbound Market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9>

Yongseok Shin

